

제418회 국회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2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 상정된 안건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 3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강제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른 조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131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청문회는 이에 따라 실시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청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상용 피소추 대상자 등을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관 법률이나 타 상위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 특히 국정감사 시즌 중에 수많은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이 의원실에 제출한 인쇄물은 약 1269만 쪽이었고 이는 0.1mm A4용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높이 1269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 555m보다도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현재도 분명 4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문서가 생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여야 모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우리 법사위가 모범적으로 종이 없는 국감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 없는 국회는 통상 30년생 원목 한 그루로 A4용지 1만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절약할 수 있고 문서를 발간하고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겠지만 자료를 전자로 받고 해당 의원실이 꼭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도 국감 및 회의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호, 업무 효율 그리고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사위가 종이 없는 친환경 국회와 국감으로 전환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이번 국정감사부터 가장 양이 많은 답변자료를 전자로만 제출받고 회의장에 배포되는 자료는 의사일정, 질의 순서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하되 기관별 업무보고나 기관증인 명단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 등의 자료는 노트북에만 게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협의하셨지요?

○**유상범 위원** 예.

○**김승원 위원** 예, 협의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간단하게 간사 간, 위원장님 입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청래** 예, 한 말씀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사실은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그 대부분의 자료를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로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셨듯이 국회도 그와 같이 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승원 간사와 함께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서 의원실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료를 전자문서로 받더라도 또 필요하면 출력해서 쓰면 되니까요. 여야 간사끼리 이번 국정감사 10월 7일, 며칠 후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로 협의했다고 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21대 때도 사실은 일부 자료를 다 USB로 받아서 종이 없는, 인쇄물 없는 국감을 하려고 했는데 22대 지금이야말로 꼭 실천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22대 법사위 국감은 종이 없는 국감으로 해서 시작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굉장히 치열한 공론의 장인데요, 이 부분만큼은 서로 합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다른 회의들도 필요한 것의 최소한의 자료 외에는 전자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1.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10시06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청문회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거 진행 좀 하고 하시지요. 안내드릴 게 많아 가지고요.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혹시 꼭 발언해야겠다 할 때는 저에게 손을 들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31인과 참고인 3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증인 7인과 참고인 1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24인 중 15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9인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입니다.

하동혁 님입니다.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김형기 전 나노스 이사입니다.

다음으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이화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영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화영**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증인 이화영

증인 권기현

증인 신명섭

증인 김광민

증인 김현철

증인 하동혁

증인 김형기

○**위원장 정청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요,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도 신문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오늘 탄핵 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난 9월 26일 본회의와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관련해서 성폭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대해서 9월 26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그 조항 중에 ‘알면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첨부하는 것으로,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사위 전체회의에

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회부가 됐지요.

그런데 그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알면서’라는 부분을 다시 삭제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면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라는 단어를 추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됐고,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까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이 회의 주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 통과를 시킨 건 맞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법사위 전체의 결정이 뒤집히고 그런 단어가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가 됐으면 최소한 법사위에서 왜 그런 논의를 해서 ‘알면서’가 추가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님의 최소한의 설명이나 입장 표명 정도는 있어야 법사위의 권위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수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법사위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알면서’라는 것을 추가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느냐 하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과연 법사위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안 나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법사위원장께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설명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없어서 너무나 아쉽고 추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회에게 의사진행발언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가급적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가는 법들은 가급적, 수정안의 형태로 이렇게 법이 통과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야 공히 종종 필요에 의해서 수정안이 통과되고는 합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20여 차례 행사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이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 법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잘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유념해서 찬찬히 잘 살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전체에 대해서, 국회 전체에서 입법이 통과된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절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광규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도 우리 법사위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제 국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바쁜 중에 오늘 또 우리 법사위는 검찰 탄핵과 관련된 조사 청문회를 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청문회가, 도대체 이것은 왜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사유를 봤습니다. 이 분,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를 일곱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가 근거가 될 건지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늘 조사 청문회를 또 하고 저분들도, 증인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기가 착잡했을 텐데 이렇게 불러서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제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시에 우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또 법조문도 성실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히 헌법의 오타도 이렇게 지적해 주실 정도로 많은 존경심을 가끔 느끼게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을 보는 시각이, 제가 여러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조사 청문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갖고 어떻게 이게…… 위원장님께서 딱 판단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무슨 조사 청문회까지 하냐’ 이렇게 좀 걸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께 제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려다가 오늘 이 조사 청문회를 보고 너무나도 실망감과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사유 중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 중에 보면 울산지검 검사 시절에 무슨 대변 루머가 있어요 또 횡당한 것은 동료 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3억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어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루머에 관해서 3억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이 법사위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조사 청문회 진행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발 이런 부끄러운 조사 청문회,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혼혹시키는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국회 법 130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써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부합니까?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지금 저한테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반법률적인 발언이지요. 절대로 이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인들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중지시킵니까?

그리고 이 피소추 대상자, 검사 박상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봐도 현행법 여섯 가지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탄핵 조사 청문회는 박상용 검사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참

고인을 대상으로 신문하는 과정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의결로써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오늘 청문회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하십니까?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승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그리고 형법 위반, 형집행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등등의 위반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증언들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존에 이런 위반 사유에 대해서 변명을 했지만 지금 그 변명에 반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국민들께서 아무리 보셔도 이번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조작임이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을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라고 국민들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주가조작 수사를 덮고 본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면서 지금 보석을 받고 사회에서 활보하듯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 본인의 죄를 면하게 해 준 대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지금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이 다 처벌받고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황제 수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기소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또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인권 모독 발언에 대해서는 좀 제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박상용 검사라든가 송민경 검사, 이에 따르는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명하고 출석 안 했을 때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국민께서 가지신 의혹을 꼭 밝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증인들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소추 대상자 박상용은 지금 영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을 송달했는데 지금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가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는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불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하고 그리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는, 저는 국회에 대한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같은 청문회는 불출석하더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고 그래서 강제구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청래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그 법은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런 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에 걸친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강제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로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승원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듯이 가급적이면 증인·참고인들께서는 나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국회의 일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검사 탄핵에 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한 이상 법사위에 회부돼서 청문회를 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 의결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와 관련돼서 국회법 규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하고자 합니다.

131조 2항에 보면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조사법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일각에서는 이 경우에는 국감·조사법 10조의 조사 방법 그다음에 14조의 주의의무만 준용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와 같은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131조 2항에서 제1항의 조사에 대해서는 국감·조사법률 제10조, 제14조를 준용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조사에 관련된 조사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 제척·회피 규정 또한 제8조의 감사·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

다'는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돼서 탄핵 사유로 돼 있는 총 일곱 가지 중에 울산지검에서의 불미스러운 부분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의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한 이 부분을 주장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증인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돼서 그 진술의 당부를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언론들에서도 오늘의 청문회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루어질 재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주지하셔서 적어도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130조 1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직접 탄핵을 하는 경우에는 200명 이상,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법사위에서 조사해 봐라라고 회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이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국정조사 준용 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도 실제로 대북 관계, 외교 관계,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면 다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조항까지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미리 내린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라 그리고 그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절차, 과정에서 오늘의 청문회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화영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변호사 누구를 소개시켜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법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조항의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이것도 검사가 아니면 이렇게 언론에 유출할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사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도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제81조(분리수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의혹도 있습니다. 형법 122조(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따져 봐도 이렇게 여섯 가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위반했구나’, ‘이것은 위반 사항이 좀 경미하구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핵 조사 청문회에 대해서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느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 쉽운데 꼭 이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하고 이 탄핵 조사 청문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용하고 불필요하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박상용 검사 탄핵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박상용 검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자그마치 백열한 번을 검찰청으로 불러낸 검사들은 나오지 않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으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겁니까? 뭐를 숨기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국감 때 꼭 나오게 하고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조치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원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연어도 갖고 왔고 술도 갖고 왔어. 그래서 파티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안부수,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임원들 그리고 거기 박상용 검사도 있으면서 이런 회유와 조작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검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출정기록을 내놔라 그래서 일부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자그마치 이화영 전 지사를 백열한 번을 검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백삼십구 번을 불러냅니다.

○**유상범 위원** 저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서영교 위원** 뭐가 두려워서 말을 막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아니, 뭐가 두려운…… 그것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서영교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박준태 위원** 저지시켜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중단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 이 출정기록을 다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와서 자기가 몇 번을 불렸는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몇 번을 불렸는지 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서영교 위원** 이건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일요일이에요. 이화영 옥중노트에 의하면 일요일 같은 때는 쌍방울을 시켜서 육회비빔밥, 연어요리 등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유상범 위원** 중단해 주세요, 이 정도면.

○**서영교 위원** 이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박준태 위원** 질의시간에 하세요. 자료까지 띄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이날 김성태는 1시 11분, 방용철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에 똑같은 시간에 출정하고 들어올 때 11시 1분에 똑같이 셋이 들어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5월에서 7월까지 열 번이 넘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나가고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이에요.

○**송석준 위원** 질의시간에 하세요.

○**곽규택 위원** 서영교 위원님 질의시간에서 3분 빼세요. 3분 빼고 하세요.

○**유상범 위원** 질의시간에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곽규택 위원** 두렵긴 뭐가 두려워!

○**서영교 위원** 자, 보세요.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은 곳에 놓으면 형집행법 위반이에요.

○**곽규택 위원** 혼자 법사위 운영해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발언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하는데요.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하세요, 좀.

○**서영교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송석준 위원** 질서 좀 어지럽히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하는데요.

○**유상범 위원** 마이크 꺼졌잖아요.

○**서영교 위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주십시오. 출정기록 자료를 전부 다 받아 주고, 박상용 검사 등 이와 관련한 자료를 법무부와 검찰청이 조사했을 겁니다. 다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서영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발언 내용이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는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귀에 거슬리는 것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사례 같은 경우 서영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란을 피우거나 방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수백 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 중에, 저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죽 살펴보다가, 실제로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출정을 시켰더라고요. 출정기록만 있어요, 날짜만. 제가 다 세 봤어요. 그 짧은 기간에 총 36회, 386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2023년 5월, 6월 동안 27회를 집중적으로 불러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술 회유, 연어 파티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증인만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같이 불렀던 사람들, 김성태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정기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기밀이거나 북한 관계라든가 외교 관계 아니면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빨리 제출하세요. 지금 위원들이 의결로써 자료제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울구치소 갔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교정본부장을 제가 한 번 꾸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법원은 공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제출했고 국회에는 공개되고 유출이 될 것 같으니까 제출 안 했습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저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아마 법무부장관으로부터도 교정본부장이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것이 지금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위원들께 김성태 등등 관련인들 출정기록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빼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유상범 간사님께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고 신문할 수 있느냐, 법상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 규정을, 제 생각이 아니라 법 규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회법해설’입니다. ‘국회법해설’인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재판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일반적인 사법 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아마 유상범 간사님은 여기까지를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법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증인 이화영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

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세요. 다녀오시고요.

박은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오늘 박상용 검사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의 검사 탄핵 청문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우리 법사위의 입법청문회,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청문회도 그렇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그렇고 김건희 씨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의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 왜 출석을 안 할까, 국회라는 곳은 어마무시한 곳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검찰이 비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검찰과 윤석열 검찰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큅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처벌도 받지 않고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들, 변호사들입니다. 지금도 검사실과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국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검에 조재연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출입했는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사생활 등등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검찰청 가는 게 왜 사생활입니까? 변호사 일이 왜 사생활이고, 공익으로 자기 업무로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출입기록을 알아야 이 사람들 통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해 전관 변호사 통해서 진술 압박했는지 청문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들의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한테 사주 받아 가지고 수사를, 진술을 압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그것이? 대한변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반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반복되는 의사진행발언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에 보면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으면 지키나 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권 발부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 청문회 등등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을 국정감사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다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기억해 보시면 당시 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은 이런 증인들 그리고 이전에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은 국정감사 때는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은 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때,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추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은 재판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검찰 변호를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당사자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너무 창피한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재판 관여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유상범 위원** 나가, 그럼.

○**김용민 위원** 제가 나가지 말고 그쪽에서 나가십시오, 하기 쉽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징계 절차인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에 관여가 아니라 별도의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조사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무관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을 또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국회의 독자적인 조사기 때문에 재판 관여 목적을 여기다 들이댈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트랙을 지금 교묘하게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요구했습니다. 수사기록 목록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것처럼 수많은 출정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증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출정이 있었는데 그 출정마다 조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조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조서가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서를 다 기록해 놓은 수사기록 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기록 목록과 그다음에 수많은 출정기록을 비교하면 조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목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자료입니다.

떳떳하면 제출하십시오. 뭐가 무서워서 이 수사기록 목록도 제출 못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계속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만 항의할 게 아니라 이 자료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현낙권 담당자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현낙권 담당자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조치 취할 것을 강력

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들었는데 법사위에서 하도 법을 얘기하니까 국회법, 헌법을 국민들도 공부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탄핵 조사 청문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이고요. 이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고요.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은 또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증감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 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증감법 제4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5일 이내에 소명한 바도 없고 그것을 제출한다고 해서 국가안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군사·외교·대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 법사위원회의 때도 이미 증명이 된 바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대북·외교 이런 부분이,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미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검찰총장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결찍지근하고 거시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출을 안 하는 것인데 그것은 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회에서 불출석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처벌하겠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알고 범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모조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민 위원께서 지금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이쯤 하고요. 지금 벌써 1시간 정도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발언해야 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자료 요구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요구……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짧게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에게, 제가 참고인에게 그동안 보도했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사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원본 형태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한번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장 정청래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보좌진들이 자료를 추출하면 될 것 같고.....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원본을 직접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 않은 내용은 취재 비밀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언론상 취재원 보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관심을 한번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봉지욱 기자 잠깐 나와 주세요.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박균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 보도되지 않은 내용, 취재 경위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를 들면 녹취록 같은 원본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저희들이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참고인 봉지욱 일단은 제보자 중에 본인이 동의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와 그분이 나눈 통화랄지 인터뷰 전문은 저희 제보자와 취재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에 김성태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그때 보내겠다라는 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알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법무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김성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김성태의 어떤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박균택 위원 출정기록을.....

○위원장 정청래 출정기록을 요구했더니, 그러면 어디서 주민번호를 알아야 준다고 했습니까?

○박균택 위원 지금 법무부에.....

○유상범 위원 조금 전에 출입국 기록이라고 그랬는데. 출입국 기록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또 출정기록이야.

○박균택 위원 아, 출입국 기록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출입국 기록을 출입국관리소에.....

○박균택 위원 법무부에.....

○위원장 정청래 요구했더니 주민번호를……

○박균택 위원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 법무부에서 알 것 아니에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그것을 다시 알려 주겠다라고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그냥 평통 같은데요.

○박균택 위원 평통이라도 지금 법무부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 정청래 아니, 법무부에서 김성태 주민번호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그것은 특정을 해 주셔야 되지요.

○유상범 위원 특정을 제대로 안 하고 김성태라고 지명하니까 여러 사람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정본부……

○위원장 정청래 이럴 수 있겠네요. 김성태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김성태를 얘기하는 거냐? 주민번호를 특정해 달라. 그런데 주민번호가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결국은 교정본부에는 있을 것인니까……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출입국 기록을 제출을 해 주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교정본부에 있겠네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고요, 신문에……

○이성윤 위원 제 신상과 관련된 것, 자료제출 요구하고 신상과 관련해서……

○위원장 정청래 예, 하시지요.

○이성윤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제 민사소송에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동료 위원의 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게 좋아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그렇지 않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안 나온 것 정말 유감입니다. 국회 무시,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처럼 계속 경고를 해 주시고 다음 국감에 꼭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울산지검 음주 추태 행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이 그런 음주 추태 행위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과 국회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 김건희가 주가조작 없다, 디올백 없다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은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피의자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그대로 또 확인도 안 하고 믿습니까?

저희가 법무부와 대검에 울산지검 추태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감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감찰 사안이라서 줄 수 없다 또 특활비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기밀이 요구돼서 줄 수 없다고 그립니다. 이것은 출석 요구에 불용한 만큼 더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위원께서도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검찰은 나와서 소명하고 해명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저희가 자료제출은 지금 의결로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 기관들께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쌓여서 다 국정감사에서 추궁의 대상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지요.

○**송석준 위원** 우리 법사위가 소위 망신살 뻔칠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조사 청문회지만 제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망신살 뻔칠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탄핵 열차 즉각 스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청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아마 의회 다수 폭력에 의해서 검사 탄핵에 관한 의결이 본회의에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검사가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실 근거도 안 되고 왜곡되고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가 탄핵 추진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법사위에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고작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박 검사를 보복 탄핵 또 어쩌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또 방탄 탄핵 아닙니까? 제발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법사위에서, 결론은 정해 놨던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직무 정지되고 정상적인 수사가 방해가 되고, 그래서 탄핵 열차 지금 즉각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가지가 거론됐지요.

첫째, 이른바 술자리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당사자도 와 계시지만. 어차피 이게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특정인만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관계자들의 진술 다 들어 보면 새빨간 거짓말, 심지어 관련 교도관, 변호사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공범 간 분리수용을 위반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것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수사를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당연히 대질신문이라는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검사실에서 공범과 관련된 분들을 같이 불러서 조사했는데 그것을 마치 공범 간 분리수용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혀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회유, 압박을 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정리된 표도 있지만 여기 당사자 와 계세요. 이화영 증인이 와 계시는데 그동안 이분이 법정에서 말씀하시던 것이 갑자기 태도가 바

뀌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런 뭔가 새로운 회유,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그리고 조재연 변호사 이분을 소개해 주면서 또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여러 관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통해서 탄핵 소추한다는 것, 이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면 당사자, 지금 이화영 증인이 와 계시지만 오히려 본인이 원해서, 이런 진술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변호사 조사 참여를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또 탄핵소추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뻔히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탄핵소추로 내걸고 지금 이렇게 귀한 법사위 시간을 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이것 정말 있어서 되겠습니까?

또 다섯 번째, 검사로서 직무유기다. 왜 검사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안 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이거 적용을 해서 오늘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검사가 소위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판례라든가 법리를 따져 보면 국가보안법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위반죄가 법리상 우선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했다는 건데 그걸 갖다 직무유기래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도대체? 그냥 말이라고 다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법리가 있고 객관적인 사실인데 자꾸 호도하면서 탄핵 소추하겠다고 사유로 대요.

또 여섯 번째,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서 이게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자료가 나갔는지, 이거 뭔가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서 나간 건지…… 마치 검사가 사전에 피의사실 공표한 것처럼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지요. 말도 안 되지요.

거기다가 또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행위, 아까 말한, 이렇게 제가 보도자료 봤지만 무슨 대변 루머, 도대체 이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검사가 벌이고, 이것을 또 탄핵소추 사유로 내걸니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의 자유, 그 발언의 범위는 누가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면드릴 사항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탄핵 조사 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미 확정돼서 현재진행형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사위 망신살이다, 고작 하는 것이 이런 거냐 이런 것은 자체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국회 법사위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설령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기왕 이렇게 시작됐으니 그러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기왕 참여할

거면 그런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줄 것을 권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태……

○**송석준 위원** 그것은 민주당 정책토론을 통해서 하세요, 동료 위원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망신 주지 마시고.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또 경고합니다.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발언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1차 경고 또 합니다.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

이건태 위원님 신문하세요.

○**송석준 위원** 맨날 경고야, 맨날. 오늘도 또 경고.

○**위원장 정청래** 경고 먹을 짓을 맨날 하고 있어요.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송석준 위원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서 벌어진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체가 없는 게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실체가 확인이 돼서 김성태 공소장, 안부수 공소장,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다시 틀어 가지고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수사 및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 죽이기 정치수사를 했다는 게 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김성태 공소장과 안부수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는 지금 검찰의 현재 주장과 정반대로 북한 사업권 우선적 참여, 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입니다.

안부수 1심 판결문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사업 로비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주가 부양 목적으로 수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보고서, 2022년 10월 3일 자 수사보고서에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격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이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왜 180도 바뀌었느냐? 이것은 정치검찰과 주가조작범이 불법 거래를 한 것이

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검찰은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협조를 받고 이들에게 그 보상으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고작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불법거래 혐의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한 의혹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노트를 보면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폰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 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성태 변호사들과 얘기 잘해 봤는가, 내가 부지사님을 지켜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회유, 압박했다는 겁니다.

또 진술세미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4일 법정진술에서 진술세미나 정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건 모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입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측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폭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건, 자기 청이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9일 뉴데일리는 ‘19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누가 누출했겠습니까? 주임검사가 바로 그 누출한 장본인이라는 의심을 제일 먼저 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피의자 김성태 등 쌍방울 임직원이 피의자의 딸 등이 피의자 안부수를 검찰청에서 접견하도록 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수용자의 접견은 반드시 차단시설이 된 교도소, 구치소에서만 접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들은 분리수용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계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을 수백 번 불렀는데 조사는 고작 몇 번에 불과합니다. 조사되지 않은 그 도중에도 이들은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직무유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한 범죄로 수사 및 기소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수백 번 소환을 했으면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담보고서는 똑같이 피의자의 권리, 변호인 선임 권리리를 밝혀야 됩니다.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의 권리도 밝히지 않았으면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자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조배숙 위원 야당이 정치 공세 하고 있어요?

○이건태 위원 아, 여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야당이 하고 있는 거 맞네.

○이건태 위원 저희가 여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조배숙 위원 오랜만에 맞는 말씀 하셨어요.

○이건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약 10년간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 형사사건만도 한 수백 건 변론해 본 것 같아요. 우리 법사위에 변호사님 출신들 계시지만 사건 변론에 있어 저만큼 경력이 많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형사사건으로 본다면 저는 이화영 증인께서 굉장히 희생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사건을 보면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신데요.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받을 때 진술하신 내용하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증언·증거 조작이다, 검사의 회유다, 술자리 마련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정상적인 변론의 기회를 놓치시고 오히려 본인이 받아야 할 형보다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이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민주당 정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중요한 치별을 받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5월에서 6월까지 이화영 증인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되어 있고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들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런 진술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러면서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대북송금 혐의 체념한 이화영, 제2의 유동규 되나, 민주당 비상’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그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사전·사후에 다 보고가 됐다 이런 이화영 증인의 진술이 민주당에 알려지자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법 방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보도가 있기 직전에 이화영 증인의 측근인 이우일 씨 그리고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당시 수석부대표였지요—이 둘이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와 통화를 합니다. ‘민주당이 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7월 17일 자 ‘민주당 비상’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7월 25일 법정에서는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당시 피고인이던 이화영 증인과 그 배우자가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배우자께서 ‘검찰에 유화적인 변호인을 해임하라.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나가면 가족

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화영 증인이 '배우자의 방금 그 발언은 제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밝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는 민주당 당직자와 함께 또 이화영 증인을 접견합니다. 접견을 하면서 '옥중서신을 써 달라,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화영 증인이 또 거부를 하지요. 민주당의 1차 회유가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23년 8월 8일 법정에서는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기존에 증인이 선임하지 않았던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 나타나서 증거의견서 그리고 재판부 기피신청서 그리고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자 증인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온 기존 법무법인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새로운 법무법인—그러니까 새롭게 민주당에서 들이민—변호사가 제출한 기피신청서나 증거의견서 등은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들이밀어 들어온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퇴장을 해 버립니다. 민주당의 2차 회유가 실패한 거지요.

법정에서 부부 싸움까지 해 가면서 또 피고인과 상의가 되지 않은 이상한 변호인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변호를 하겠다' 하다가 퇴정해 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법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증인은 기존에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를 통해서 접요한 회유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었겠지요. 증인의 배우자는 증인을 접견한 이후에 박찬대·안민석·주철현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현근택·김광민 변호사 등과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증인이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회유를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법정에서 증인이 했던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게 질문의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발언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인한테 묻지 마시고 발언시간 내에 물으시고 조금 지난 것은 제가 양해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지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런 취지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청문회는 그동안의 검찰 행태에 대해서,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범죄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행태에 관한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라면 증거 조작이나 증인 회유도 서슴지 않고 또 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치검찰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증인 회유·협박 등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찰은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라도 나서서 검사의 탄핵 사유를 밝히고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청문회의 이유입니다.

회대의 정치검찰의 기울어진 불공정한 잣대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입니다.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땠습니까? 결론은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잣대 아닙니까?

더구나 김만배의 경우에는 화천대유 주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을 구매합니다.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만배가 ‘특검 수사팀장으로 석열이 형을 추천했다’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됩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고를 김문기에게 받은 적이 있다. 출장·골프를 같이 한 적이 있다’라면서 먼지떨이식으로 탈탈 털어서 ‘김문기와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를 하고 급기야는 징역 2년 구형을 합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정치검찰의 공정성을 상실한 명백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규정과 또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적용했던,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허위 사실 인식이 없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검찰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사유에 그대로 이재명 후보를 들이대면, 같은 잣대라면 이것도 당연히 불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고 이재명 대표에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두 번째,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이재명 대표와 증인 김진성과의 통화 녹취록 30분 분량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려 열두 번이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 기억을 되살려 달라. 안 본 것 얘기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열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이러한 멘트들은 딱 그대로 삭제를 하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칠팔 분 분량으로 짜깁기를 해서 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이것은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이고 오염되고 왜곡된 증거입니다. 이는 판례에 의하면 명백히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세 번째 보시지요.

이화영 증인과 관련된 소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쌍방울의 주가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국정원 문서, 이 문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감았습니다. 여기에는 주가조작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래서 국정원 문서도 주가조작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진술세미나와 입맞추기 의혹이 제기되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세 사람의 증언을 사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상 조작 수사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검찰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화영 증인의 옥중노트라든지 또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 녹취에 의하면 검찰이 이 세 사람의 증언을 짜맞추기 위한 진술세미나를 수차례 열어 줬다 그리고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검찰의 증인 회유, 조작 이런 것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검찰은 입 맞추기, 증거 조작, 진술세미나,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 방북 목적 사건으로 둔갑시킨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됩니다. 이런 모든 증거 조작을 해서라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뭔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증인을 신문하려고 지금 증인을 출석시켰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정청래 증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주된 취지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제가 질문을 마지막에…… 위원장님의 자르셨는데요.

○위원장 정청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입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저는 박상용 검사는 증인 적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박상용 검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되는데 당사자의 지위에 있을 사람이 증인으로서 여기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지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탄핵은 정말 헌법상의 제도로서 아주 위중한 경우에 실행이 돼야 되는 제도이고 그리고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의혹이라기보다는 의혹을 넘어서는 뒷받침될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위법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탄핵 사유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송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범의 분리수용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 같이 있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행형법 위반이다’ 했는데요. 아니, 수사할 때 대질신문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대질신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행형법 위반이다’ 그다음에 또 ‘김성태나 방용철이라는 사람이 북한과 접촉을 했는데 그건 신고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우회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했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보다 우선

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변 얘기가 나왔는데 공용물 손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다는 게,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따라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T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봤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맨 첫 번에 나오는 게 이런 구절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그와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공천권자인 이재명 대표를 위하여 그와 다른,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을 자행하였고’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나와 계시는데 과거 17대 때 같이 의정활동도 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어서 감회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맨 처음에 6월 9일부터 진술을 시작했고 6월 30일 날,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진술을 6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 설주완 변호사와 이한이 변호사 이분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참여한 상황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동안에 가족 및 지인 접견을 상당히, 23년 12월 31일까지 통계는 188회 그리고 변호인 접견이 288회, 특별접견이 7회로 자유롭게 가족과 지인과 변호인과 접견을 해서 본인의 이러한 진술에 대한 법률적인 거나 이러한 것을 분명히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회유한 시점이 문제입니다. 6월 30일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우선 음주를 하면서 회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죽 보세요. 글씨가 너무 작은데…… 자꾸 술을 마셨다고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어떤 종류의 술입니까?’ 물어보니까 ‘소주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다음에 또 변호사가 물어볼 때는 ‘술을 마신 일이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다시 해 보니까 분명히 술을 마셨다고 했고 나중에는 또 이화영 증인이 ‘술을 입에 댄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이 바뀝니다. 바뀌고, 분명히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는데 변호했던 김광민 변호사께서 안 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꾸 진술이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의 번복은, 이 번복을 시킨 것은 검사가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화영 증인, 지금 여야 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313호,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려서 했었지요?

○증인 이화영 예.

○위원장 정청래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질의시간을 쓰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도 질의 순서를, 질의권을 받아서 하세요. 이것은 월권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진행상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직권으로 물어볼 수가…… 질의권은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자, 하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권이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진행이라 하면 진행을 하세요. 질의를 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자, 증인 말씀하세요.

이분들 마이크가 안 켜져 있기 때문에 방송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증인 이화영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러면 안 돼요. 들리고 안 들리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증인 말씀하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은 아무 때나 질의하고 그러면 되나요?

○증인 이화영 조금 전에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인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이……

○송석준 위원 시간 카운트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시간 카운트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송석준 위원 이거 다 질의응답이고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유상범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입니까?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민주당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이런 진행이 어디 있어요?

○증인 이화영 검찰이 지속적으로……

○송석준 위원 시간 카운트해 주세요.

○증인 이화영 유력한 대통령후보였었고 또 제1야당의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표를,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는 스토킹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검찰이 무슨 전리품을 하나 획득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의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갑자기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받으시지요. 질문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끼어들고 안 끼어들고의……

○**위원장 정청래** 경고합니다.

○**유상범 위원** 경고? 하세요.

○**송석준 위원** 경고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1차 경고 합니다.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 합니다.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 진행에는 질문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송석준 위원** 제대로, 제대로 의사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자, 말씀하세요.

○**증인 이화영**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씨, 안부수 또 그 밖에 쌍방울 회사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 명, 이들이 거의 두 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 주는 이른바 진술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아 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혐의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불러 갖고 또 다시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었고. 그 과정에서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이 제공되어지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유상범 위원** 정청래 위원장! 이런 식의 진행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증인 이화영**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은 어차피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청래** 계속하세요.

○**증인 이화영** 계속 질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증언에서 소상하게 정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앉으세요. 이건태 위원님 앉아 주시고 주진우, 송석준, 유상범 간사 앉아 주세요.

○**이건태 위원** 왜 이렇게 말을 못 하게 막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앉는데 이런 식의……

○**위원장 정청래** 앉아 주세요.

○**장동혁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지 지금 변명 시간 주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위원장 정청래** 앉아 주세요.

이화영 증인,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짧게……

그러면 결국은 박상용 검사 1313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증인 이화영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여러 차례?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정에서는 한 차례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증인 이화영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고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갖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했었던 것은 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출정했던 거의 모든 날들은 참고라는 공간에 모여 가지고 누가 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과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같은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고. 조서를 쓰는 날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황이 좀 무르익어 갖고 서로 말이 맞아 들어가면 조서를 쓰고 그러지 않은 날은 그냥 돌려보내고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변호사 면담을 시킨다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면담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증인의 말에 의하면 각종 음식 중에는 연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짜장면, 갈비탕 등 이런 음식 제공도 있었고 실제로 대질을 빌미로, 명분으로 진술세미나 같은 형태가 있었던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도 수십 차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여야 불문하고 각자 주장만 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왜 자기주장들만 하나, 증인을 불러 놓고 왜……

○박준태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들 질의가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박준태 위원 뭘 조용히 해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라고.

○위원장 정청래 너무 열 내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열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위원장 정청래 증인의 입이 두렵습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오늘 하루종일 할 건데 뭐가 급해서 먼저 물어봐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너무 열 내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어차피 예정돼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신문하세요.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신문하세요.

○김용민 위원 지금 죽 보면 여당에서는 이 탄핵 청문회가 재판 관여 목적 아니냐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재판 관여 목적으로 계속 질문은 안 하고 주장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박상용 검사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보면 허위 증언·진술 요구,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유고요. 또 공범을 분리시켰느냐, 또 하나는 접견 절차를 위반했느냐 그리고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회유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다른 것 하나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화영 증인께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라서 허위 자백을 할 리가 없다, 자기들이 아무리 회유하고 압박해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십시오.

○**증인 이화영** 그때 당시 상황은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수백 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제가 듣기로는 제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압수한 문건만 5만 건이라고 하는데. 저와 관련된 주변 정치인을 포함해서 지인을 포함해서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심지어 처와 가족들까지 검찰이 압박해서……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저와 같이 일했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인 신명섭 국장을 구속까지 시켰고,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시킬 것이다라는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별건의 별건을 수십 건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 등으로 저에게 정역 10년 이상을 반드시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지만 검찰 측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실제로 검찰은 경기도청에 압수수색을 위한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장기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증인 이화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것은 잘 모르세요?

○**증인 이화영** 예.

○**김용민 위원** 뒤에 김광민 변호사 계시잖아요. 짧게 하나 묻고 넘어갈게요.

허위 자백을 한다, 진술에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툼이 생길 때 진술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광민**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실제 대법원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알선수재 사건의 공여자 등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0여 일 내지 수십여 일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되어 뱀듯이 조사를 받았다면 이들은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 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광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이런 사안들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지 않으

세요? 어떠세요?

○증인 김광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당연하지요? 의혹을 제기했으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증인 김광민 예.

○김용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화영 증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 혹은 위법 의혹들, 이 중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진짜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청이 문을 내려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이화영 물론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김용민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이화영 그 부분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증언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좀 잘라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정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짧게 답변 주시면, 제가 더 질문드릴게요.

일단 공범 분리 먼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공범 분리는 검사실에 불러서 거기서도 분리를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대질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범들 불러서 그들에게 편의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위 말해서 진술세미나.

○증인 이화영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화영 예.

○김용민 위원 대질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고 전화도 하게 해 주고 이렇게 제공했던 것들 아닙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실제 그것을 위해서 쌍방울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는 김성태 씨와 방용철 부회장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에 거의 상주하였습니다.

○김용민 위원 보니까 이화영 증인도, 저희가 전체 출정기록을 받지는 못했고 일부를 받았는데 실제 6월 30일 날 보니까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런 분들이랑 이화영 증인이 같이 1313호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날 넷이 만났던 것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은 있었잖아요?

○증인 이화영 제가 지금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 있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이날 출정 시간은 비슷한데 돌아간 시간을 보니까 이화영 증인은 23시 17분, 김성태 23시 17분, 방용철 23시 17분, 다 똑같은 시간에 돌아갔습니다. 혹시 돌아가실 때 같은 차로 갔습니까?

○증인 이화영 당연히 같은 차로 갔습니다.

○김용민 위원 어떤 차로 갔습니까?

- 증인 이화영 구치소 측의 호송차로 갔습니다.
- 김용민 위원 호송차?
- 증인 이화영 예.
- 김용민 위원 그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돌아갈 때 공범들 간에 분리해서 앉았습니까, 아니면 같이 앉았습니까?
- 증인 이화영 작은 차기 때문에 분리라면 분리라 할 수도 있고 같아면 같이 갔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민 위원 작은 차라면 어느 정도의 작은 차입니까, 몇 인승 정도?
- 증인 이화영 한 12인승?
- 김용민 위원 12인승 정도?
- 증인 이화영 예, 보통의 작은 차……
- 김용민 위원 그러면 이때 돌아갈 때에는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 모르는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던가요, 구속된 수형자들?
- 증인 이화영 없었습니다.
- 김용민 위원 없었어요?
- 증인 이화영 예.
- 김용민 위원 보니까 이렇게 한 번만이 아니라 새벽에 돌아간 적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도 다 지금처럼 비슷하게 특정한 차를 가지고, 작은 차를 가지고 같이 돌아간 때가 많았나요?
- 증인 이화영 대개 다 그랬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다 행형법 위반들입니다.
- 증인 이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
- 김용민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 증인 이화영 알겠습니다.
- 김용민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중요한 것 물어볼게요.
- 조재연 변호사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겁니까?
- 증인 이화영 과거부터 좀 알던 분이었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런데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박상용 검사가 만나 보라고 한 거예요?
- 증인 이화영 처음에 변호인 선임하던 초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변호사 선임을 못 해 준다고 그러셨고, 나중에 5월·6월 정황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조재연 변호사를 소개해서 만났습니다.
- 김용민 위원 해 준 것이고.
-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을 직접 회유한 적도 있지요?

○증인 이화영 자주 있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짧게만 말씀 주시지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증인 이화영 특히 김성태 씨는 여러 가지로 많은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거짓 진술을 많이 해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인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자기가 다 해 놓겠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어차피 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지사님 혹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부지사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미 다 자기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춰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김성태 씨가 지속적으로…… 박상용 검사께서 아주 여러 차례, 10회 이상 김성태와 저 둘만 교도관 배석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우리가 국민 혈세로 세비 받으면서 왜 이재명 대표 변호사나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합니까? 저는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사건이에요. 북한으로 800만 불이 실제 지급 됐고 달러를 만드느라 기업 임직원들 수십 명이 동원됐습니다. 또 800만 불을 대납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는 당연히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였지요.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업에서 선뜻 지급할 때는 당연히 이재명 지사에게 생색을 내고 그 돈을 낸 것에 대한 혜택을 사후에라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지사로부터 수차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라고 진술까지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화영 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부지사로서,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방북이라는 큰 정치적 성과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제일 큰 공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을 생색내야 되고 이 과정을 보고 안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요.

기본적으로 대북송금과 방북은, 예를 들어 방북 비용만 하더라도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최초에는 500만 불로 협상하다가 300만 불로 낮춰지거든요. 이런 협상 과정이나 액수, 방북 과정,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화영 증인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궁색해지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관여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었던 것이고 또 이화영 증인 배우자가 법정에서 고성 지르면서 난리 치는 장면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후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도 적나라하게 다 지금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방탄 의도이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사법 테러만 테러가 아닌 것이 지금 보면 박상용 검사 가족 10년 치 출입기록을

달라고 하고 판사였던 배우자의 사건 기록까지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망신 주기용 탄핵이고, 물리적인 테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사법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화영 증인에게 물을게요. 일단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자백했던 내용부터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려 42일간 이화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지요? 그게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자백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이화영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증인 이화영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주진우 위원 아니, 조서에 나와 있고 당시…… 허위 자백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 설주완……

○증인 이화영 그렇지 않고 마지막……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증인 이화영 마지막……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당시 설주완·이한이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는 그 조서 내용에 같이 서명날인 까지 했었어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설주완 변호사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인가 사임을 하셨고 그 뒤에, 6월 12일 이후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자백하도록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주진우 위원 설주완·이한이 변호사가 당시 변호사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시간이잖아요.

당시에 설주완·이한이 변호사가 본인이 회유당해서 자백했다라고 주장하던 그때의 변호사가 맞아요?

○증인 이화영 6월 12일까지는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청에 배석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설주완 변호사는요……

○증인 이화영 잠깐만요. 6월……

○주진우 위원 제 질의시간이잖아요.

설주완 변호사는 당시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화영 증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는데 음주 사실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고 이화영 증인에게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을 아예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화영 증인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고요.

이한이 변호사도 당시에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인데 음주 사실도 없었고 당연히 부적절한 회유나 협박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화영 증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설주완·이한이 변호사가 당시 허위 자백했다고 하는 시점의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일방 의결하면서 설주완·이한이 변호사는 빼고, 회유당했을 때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변호사는 빼고 회유당해서 실컷 다 자백한 그 이후의 변호사만 지금 현재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일방 의결한 상황이거든요. 이것 진상을 밝히려고 하면, 회유당했던 시점에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 직업인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받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증인 이화영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하나,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해서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 것을 허위로 자백했다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협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게 됐다,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 이런 주장인데 징역 10년도 넘게 살릴 수 있는데 도대체 김성태 회장이 거짓 진술로 무슨, 뭘 거짓 진술하겠다고 했길래 이것을 허위 자백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당시에 김형태 변호사랑 접견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있지요?

○증인 이화영 그 부분은……

○주진우 위원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화영 제가 잘 모릅니다.

○주진우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당시 김성태 회장이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에다가 김성태 회장이 돈을 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협박 받은 사실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런 협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김성태……

○주진우 위원 그런 내용이 김형태 변호사랑 대화 내용 사이에 녹취가 되어 있어요, 그런 협박을 받았다라고. 증인의 육성 목소리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화영 답변드릴까요?

○주진우 위원 그런 사실 없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답변해 보세요. 육성 녹음 어떻게 된 거예요?

○증인 이화영 답변드릴까요?

○주진우 위원 예.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누가 지금 ‘예’ 하셨습니까?

○**주진우 위원** 아,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증인은요 이렇게 시간이 끝나고 본인이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경우는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신청하라고 아까 모두발언 때 말씀드렸지요.

○**증인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못다 한 발언 하세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성태 씨가 저를 압박하면서 압박의 카드로 굉장히 황당하고 허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마구 해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테니까……

○**주진우 위원** 그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은 발언시간 끝났고요. 유상범 간사님은 발언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이 진행 중이니까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하세요.

○**증인 이화영**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성태 씨의 그런 허구적인 진술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만났을 때, 김형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 박상용 검사가 증인인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또 탄핵소추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탄핵 청문회인 만큼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아마 녹화방송을 통해서라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제 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 절차와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박상용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탄핵이 통과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진술 조작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협 회장, 이화영 부지사를 동시에 검찰로 소환하고 진술을 맞추는 진술 맞추기 세미나가 실행됐다는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진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을 각각 몇 차례나 소환을 했고 동시에 소환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조서는 몇 회나 작성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를 217회 소환을 했고 72회 면담조사를 했고 열아홉 번 조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서를 열아홉 번만 작성했는데 나머지 소환 198회, 면담조사 53회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상대로 회유·압박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닙니까?

다음,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메모, 신명섭 국장의 자필 문건 그리고 쌍방울 내부자가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 그리고 안부수 회장의 딸 카카오 그 대화록 내용 등을 보면 공범들을 같은 장소에 불러 모아 놓고 진술을 맞추거나 음식을 함께 먹게 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부수 씨 딸이 안부수 씨 비서와 카카오톡 나눈 내용을 보면 ‘아빠가 검찰하고 보석으로 합의를 봤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아버지와 함께 모여 있었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쌍방울 내부 폭로자는 ‘검찰에 가니 김성태 회장 등 전부 모여 있었다.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김성태가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상용 증인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둔갑시키기 위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인정하는지, 진술세미나를 열고 음식을 함께 먹게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성태가 안부수를 매수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고 그 뒤에 안부수가 검찰과 김성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 협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검찰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런 노력 상황을 박상용 증인에게 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실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건 창작 의혹과 관련하여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검찰이 세 번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김성태가 북한 관계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시, 장소, 금액, 수령자가 모두 다릅니다. 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마 이것을 캡처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명백히 제시를 하니까 잘 보고 캡처를 하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역사상 이처럼 돈을 준 시기, 장소, 액수, 수령자가 제각각인데 기소된 사건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 공소장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김성태 회장의 억지 진술을 만들어서 그에 기한 소설을 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상용 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검찰은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 보고, 경기도 문건, 통일부 내부 보고서, 북측에서 아태협으로 보내온 참석자 공문을 보면 리호남은 김성태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그 시기에

필리핀에 존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국훈 대표는 2019년 필리핀 국제대회 행사의 기획과 의전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김국훈 대표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여러 차례, 검찰에 일곱 번에 걸쳐서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김국훈 대표가 본 의원실과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했느냐?’, ‘김성태, 안부수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제대로 심판받게 해야 한다.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게 할 수는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여섯 번째 질문을 합니다.

김국훈 대표가 리호남을 못 봤다고 말한 사실을 왜 박상용 증인, 박상용 검사는 진술 조서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시간이…… 이것은 생략하고 다른 걸 묻겠습니다.

김성태, 이재명 지사가 통화를 했던 현황입니다. 통화를 했다기보다는 주장하는 현황입니다.

이게 통화를 몇 번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남이 바꿔 준 통화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서로 안 적도 없다, 전혀 모르는 관계라는 내용이 여기 담깁니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돈을,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내 줬는데 서로 이렇게 직접 통화 한 번도 못 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남남처럼 지내는 관계, 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요구 사항은 다시 오후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규택 위원님, 박상용 불출석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나 이화영 증인에게 질문하는 게 같은 내용이 반복,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화영 증인은 들으면서 좀 답답한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진우 위원** 질의시간 지났는데 왜 그러십니까?

○**유상범 위원** 질문을 안 했으면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위원이 질문 안 했잖아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는 위원이 질문 안 했는데 그걸 왜 또 받아서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의사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 진행이 아니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지.

○**송석준 위원** 의사 진행이 아니라 질의잖아요, 질의.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위원장 정청래** 증인, 예를 들면 전화를 바꿔 줬네 안 바꿔 줬네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거나 답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전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증인 이화영** 일단 짧게 박규택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청래**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증인 이화영** 이제명 대표와 김성태 씨가 서로 통화를하거나 만나거나 한 데 있어서 검찰 측에서는, 특히 박상용 검사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주장 을 하고 있으나 저는 단 한 차례도 제가 이제명 당시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성태 씨와 전화를 바꿔 준 적도 없고 만남을 주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제가 계속 법원에도 그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있는데, 아마도 해외 로밍에 대한 근거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고.

그와 같이 김성태 씨가 얘기하는 이제명 대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황적인 자기주장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특히 제가 그걸 연결해 줬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박지원 위원** 전부 박상용 변호사들이야?

○**곽규택 위원** 대장동 변호사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유상범 위원** 이제명 변호사 하잖아요, 지금.

○**송석준 위원** 박상용이 아니라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곽규택·송석준·주진우 위원님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박준태 위원** 저도 경고 주세요. 이것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도 경고합니다.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유독 이화영 증인이 발언하려고 그러면……

○**곽규택 위원** 아니, 유독 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일어서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의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송석준 위원** 진행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유상범 위원** 민주당 위원한테 질문을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조배숙 위원** 이 증인을 누가 신청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까지 경고합니다.

앞으로……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유튜브를 찍으세요, 그냥 유튜브를. 법사위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계속 끼어들고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유상범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 중지하지.

○**위원장 정청래** 오늘 이 시간 정회하고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로 잠깐 나오세요.

오전에 안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셨네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전에는 왜 못 나오셨지요?

○증인 엄용수 원래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이 보시는 청문회기 때문에, 이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후에라도 나오신 건 잘하신 일인데 그러면 오전에 국정감사 중계를 보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증인 엄용수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게 언제 바뀐 거예요?

○증인 엄용수 주위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여론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런 심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전에 쌍방울에 대해서 별로 얘기된 게 없어요. 진술 회유, 연어 파티 이런 얘기만 주로 나왔지 쌍방울 회사에 대한 건 별로 안 나왔거든요.

국회라는 곳이 이렇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갑자기 생겼다고 또 툭 튀어나오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용수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소환하셨어요?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안 나왔다가 오후에 갑자기 나온다고 하니 이유를 물어보고 선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이 지금 위원장입니까?

○주진우 위원 나온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다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나온 건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오전까지는…… 불출석사유서 제출했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사유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증인 엄용수 첫 번째는 박상용 검사님께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증인 요청을 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맨 처음

에 검사실에 들어갔을 때 500만 불에 대해서 목적 자체를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제가 알고 있는 점과 국회에서 저를 증인으로 요청한 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다르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된 건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위원장 정청래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오전에 주변에서 나가라 이렇게 권유해서 나왔다는 거지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상용 검사 실드 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증인 엄용수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검찰에서 나가라고 한 것 아니에요?

○증인 엄용수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엄용수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용수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용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증인 엄용수

○위원장 정청래 선서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문할 순서인데요, 하동혁 증인이 오찬을 마치고 아직 증인석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 증인해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놓고 위원장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연락해 보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증인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화영 증인!

○증인 이화영 예.

○위원장 정청래 위원회에 제출할 무슨 서류나 자료가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어떤 내용이지요?

○증인 이화영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용하셨던 제가 쓴 비망록하고 또 약간의 진술서를 서면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전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증인 이화영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위원들이 다 회람을 해도 되겠지요?

○증인 이화영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 자료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잠깐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예, 그러시지요.

○유상범 위원 지금 이화영 증인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본인에 대한 비망록이나 이런 전문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저희가 질의하는 데 활용을 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질문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회람하고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니 한 3시까지라도 잠시 정회를 해주셔서 이것을 나눠 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나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이화영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말씀하세요.

○증인 이화영 저것은 이미 다……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저랑 얘기하는데……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그냥 밖으로 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적어도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나서 필요할 시에 그걸 가지고 질문할 수 있게 잠시 정회해 주시지요.

○증인 이화영 아니, 유상범 위원님이 오해하시는군요.

○위원장 정청래 이화영 증인 말씀하세요.

○증인 이화영 특별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됐었던 제 사건 관련된 저의 메모, 비망록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시기에 그래도 전문을 다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출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밖에 확인한 게 없는데 지금 전문이 왔으니 적어

도 위원들이 전문을 다 보고 질의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화영 증인, 이게 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을 간추려서……

○유상범 위원 일부만 됐다고 하잖아요, 발췌돼서.

○위원장 정청래 아니,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고. 그런데 이것이 약간 과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인용을 할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지요, 신문에 참고하시라고?

○증인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살짝 봤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돌려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하면서…… 장동혁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이것 금방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상범 위원 그래도 장동혁 위원님이 그걸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볼 수 있게……

○김승원 위원 보충질의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질의만 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어쨌든 본인이 바로 질의할 수도 있고……

○위원장 정청래 이것은 유상범 간사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면서 바로 오니까요, 이것 한 10분이면 오는데요.

장동혁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 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를 변호하거나 방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탄핵 아니라 어떠한 징계든, 형사처벌이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화영 증인에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여러 답변들을 하셨는데, 주된 것은 회유·협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1313호 앞에서, 창고 같은 방에서 모임이 있었다거나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1심 재판 법정에서는 한 번도 진술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재판부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하셨던 사항인가요?

○증인 이화영 충분히 얘기할 기회는 없었고요. 마지막 피고인신문 때 부분적으로 좀 진술을 했었습니다.

○장동혁 위원 변호인이 그런 취지의 내용,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충분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취지의 진술은 마지막에 최후진술을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취지인가요?

○증인 이화영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신문 할 때 짧게……

○장동혁 위원 피고인신문 할 때 말씀하셨다는 것인가요?

○증인 이화영 예.

○장동혁 위원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되어 있는지가 이 사건 핵심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청문회를 연진짜 목적은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첫째,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게 맞는지, 두 번째, 보냈다면 그것이 불법인지, 세 번째, 불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증인과 쌍방울이 어떤 의사의 연락을 한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 의사 연락이 있었다면 당시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러나 이화영 증인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네 번째 부분,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는지 여부는 저는 크게 불법성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또 범죄구성요건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부분은 이화영 증인의 재판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청문회는 사실상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때문에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맨 처음 이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가 추가조작 사건으로 옮겨 갔고 그것이 다시 대북송금 사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새로운 범죄가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이 북한 테마주를 강조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시작된 추가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추가조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방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쌍방울로서는 주가 상승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하등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득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쌍방울로서는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할 것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목적이 똑같아야 될 이유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화영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취지의 주장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증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화영 증인이 했던 진술들이 그리고 법정에서 이화영 증인이 했던 진술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화영 증인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전직 경기도 공무원의 진술, 국가정보원 문건, 경기도 공문, 경기도 내부 보고서, 회의록, 영수증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이화영 증인의 진술이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전혀 저

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바도 아니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죽 저희들이 지켜봤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크게 예상을 벗어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또 수사기관에서도 일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결국은 본인의 구속요건과는 관계없이, 범죄사실과는 관계없이 이후에 다른 사건에서 영향을 미칠 진술과 관련해서는 회유니 협박이니 아니면 다른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진술들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된 것이고, 결국 오늘 이화영 증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왔던 이화영 증인의 진술을 국민들 앞에서 그저 똑같이 보여 주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화영**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시지요.

○**장동혁 위원**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님이 계속……

○**장동혁 위원**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이화영** 아니, 제 의견……

○**위원장 정청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아까 청문회 시작 모두발언 때 증인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 질의·신문 과정 속에서 답변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잠깐 잠깐 제가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화영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냥 끊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 모두발언 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 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의를 왜, 받지 않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의를 받아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이화영 증인 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청한 증인들 전혀 여기에 안 불렀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증인들 발언만 자꾸 시키면 어떡합니까? 바로 잡아 주세요.

○**증인 이화영** 장동혁 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2개의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시기가 제가 입건·기소돼 가지고 조사받던 시기,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기는 2023년 1월 17일 날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하다가 체포돼 들어오고 난 그때. 그러니까 제가 구속돼 가지고 2024년 1월 17일까지 조사받고 재판받던 기간과 김성태 씨가 체포돼 들어와서 조사받고 한

기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렇게 달라진 결정적 사유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체포돼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 수사로 바뀝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무수히 수백 회에 가깝게 검찰에 불려 나가서 조사받던 내용이 거의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제 사건의 본질하고 한참 벗어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정치검찰의 무슨 전리품처럼 된 것 아닌가, 이 사람들 서로가 이 전리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옆자리에 있는 신명섭 국장을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압박을 받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진행 관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탄핵 조사 청문회는 진실을 알자는 겁니다. 진실을 알자고 하는 것이지 진실을 덮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나온 증인들은 안 나온 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사건건 위원장의 진행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제가 간접 안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 방해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잖아요. 발언 방해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자체도 방해하고 있어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받아 주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의 하시는 말에 어폐가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김승원 간사님, 양당 간사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

○**송석준 위원** 혼자서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은 그것이 진실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덮이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송석준 위원** 공정하게 양쪽 입장이 발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러다가 퇴장당하실 수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퇴장하려면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입니다.

오늘 탄핵 청문회 대상의 주요 인물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수원지검 사건의 주임검사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뭐가 두려운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왜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거지요? 여당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데 나와서 뜻렷하게 이야-

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와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받은 이화영 증인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마음은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뒤바뀌었다, 안 나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대체 몇 번이나 불려 나간 것 같습니까, 검찰에?

○**증인 이화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나온 후부터 그들이, 김성태 씨가 아마 2023년 1월 17일 날 체포돼 왔을 텐데 그로부터 2023년 2월, 3월은 아마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와……

○**서영교 위원** 그쪽이 모여 있었고.

○**증인 이화영** 모여 있었고, 그쪽의 상황이 정리되니까 4월부터 저를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해 가지고 불렀는데 4월, 5월, 6월은 거의, 지금 저기 보니까 111회인데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 가지고 거의 매일 불려 갔던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월·화·수·목·금 나갑니다. 일요일도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111회, 이것은 9월부터가 아니에요. 1월부터 111회나 불려 나갑니다. 111회를 하루에 10시간씩 조사받았다고 치니까 1110시간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을 검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할 권리가 있는 거지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러 대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입을 다 맞추고 나니까 다시 불러서 입을 맞추게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넷을 한꺼번에 불러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저기 지금 적시돼 있는 저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넷을 불러서 여러 번 대질을 했고요. 또 대질을 하지 않고 조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같이 불렀던 적도 있었고요. 특히……

○**서영교 위원**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불러서?

○**증인 이화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로 창고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진술세미나를 하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저와 김성태를 단둘이 만나게 해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방용철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저와 안부수가 만나서 얘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측 변호인을 또 단독으로 만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 이화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검사가 공범들을 불러서 같은 자리에서 진술세미나를 하게 하고 만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3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시간, 아니면 9시간씩이라고 해도 999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동안을

불러서 회유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위협하고 협박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상용 검사를 헌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같은 시간에 나간 것 한번 틀어 봐 주세요. 김성태 1시 11분, 방용철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 복귀 시간 11시 1분 다 똑같아요.

1313호 저기는 어디입니까?

○증인 이화영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서영교 위원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박상용 검사나 법무부는 함께 불러서 연어 파티, 술 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른 혼적이 나왔어요.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떡하니 똑같은 시간에 부르고 똑같은 시간에 들여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불어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러 차례 들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증인 이화영 제가 비망록에도 일부 적어 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삼자뇌물죄로 기소되면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하나는……

○서영교 위원 그것은 검사의 직권을 넘어선 범죄행위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혹시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 이러면서 회유한 적도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증인 이화영 우리 집사람을 검찰청에 불러서 면담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만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계속 거부해서 안 나왔고요. 아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

○서영교 위원 아들이요?

○증인 이화영 또 같이 구속되어 있었던 신명섭 국장을 일대일로 면담시켜 주겠다고 해서 같이 만났고 또 신명섭 국장의 구속 상태를 해제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다른 지인들도 일대일로 밖에서 들어와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김성태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분들이 여러 분 오셔서 다양하게 저를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만나 갖고 설득을 하면서 검찰 편을 들고 김성태 말을 듣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나한테, 피고인 이화영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

○서영교 위원 원하지 않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회유한 정황들이군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문자를 보내서 변호사를 오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에게 주거침입 등등, 변호사 못 하게 하겠다는 등등 협박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쫓아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런 내용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증인 이화영 서 모 변호사가 저를 위해서 검찰청에 왔는데 시간에 쫓겨 가지고 선임 계 같은 절차가 좀 미비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 참관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고성이 오가면서 못하게 했었고.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용철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가지고 온 문건을 밖에서 들어온 쌍방울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검사가 용인해 주니까 교도관이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계속 항의를 하다가 박 검사하고 아주 큰소리로 대판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녹취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말씀하시는 것 기억나세요?

○증인 이화영 저게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변호사한테 호소를 하시는 내용인데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검찰이 삼인성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화영 증인에 대한 판결문에도 보면 안부수, 방용철, 김성태, 3인의 증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진술이 모두 일치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판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이 삼인성호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3명의 진술세미나, 허위 증언의 대가로 3명은 굉장히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부수는 딸이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김성태 씨는 구형이나 보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혜택을 받고 또 김성태

동생에 대한 구형 약속이 있었네요. 한번 진술해 주시지요.

○**증인 이화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모두 실제 이루어졌었던 일이고요.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쌍방울 회사 관계자들이 여럿 구속됐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1심에서 다 낫은 형을 구형해서, 예를 들면 김성태 씨의 동생도 구속됐었는데 원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려고 했으나 박상용 검사가 ‘내가 힘을 써서 6개월로 구형을 낮춰서 바로 나가도록 했다’ 이렇게 제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우리 검찰에서 이 3인을 포함해 가지고 쌍방울 측 관계자들 전부 석방한 것처럼 나도 석방을 시켜 주겠다,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예증을 들면서 저한테 강하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박상용 검사가 얘기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증인 이화영**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과를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여러 차례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박상용 검사가 저한테 요구했던 것이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라는 한마디를 꼭 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박상용 검사 측하고 검찰 측하고 저하고 소위 딜을 할 때의 조건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정황을 알았다 이런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늦에 빠진 것처럼 진술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검찰 측의 요구 강도가 세져 가지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꼭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네가 한마디 해야만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박은정 위원** 처음에는 정황이 있다 정도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점점……

○**증인 이화영** 처음에 검찰 측하고 얘기된 부분은 스마트팜 대납은 절대 아니었고 뒷 부분에 있었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그 정황을 일부 알았다 이렇게만 진술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그런 정도면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고 저의 당시 변호인한테 상의했더니 변호인도 그게 좋겠다, 그게 이 상황을 좀 모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아까 누가 설주완 변호사님 얘기하던데 당에서 보냈다고 하는 설주완 변호사님도 그 정도는 이재명 대표도 오케이, 양해하고 있다, 그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가 적절한 선이라고 했는데 계속 검찰의 진술 강도가 높아지면서 꼭 보고를 했다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몰려서 몰려서 마지막에 그 보고를…… 그 보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정은 팠지요. 그러니까 제가 ‘2023년 7월 29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입회했던, 같이 계셨던 변호인한테 그날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있느냐 좀 봐 달라, 검색해 달라 해서 그날 마침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10시에 무슨 행사가 있는 것을 보고, 토론회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을 적시를 했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이나 혹은 대검이나 거기서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 갖고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파일에다가 소주까지 와 가지고 제가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

다.

○**박은정 위원** 증인은 그 당시에 취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박상용 검사가 처음에는 정황 정도로 그냥 합의하자 했다가 지금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증인께서 쓴 옥중서신에 의하면 ‘상부에서 동의가 안 된다. 확실하게 연결이 돼야 당신이 주범이 안 되고 약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보고를 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이화영** 그랬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그것은 지금 증인께서 처벌받을 위험,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증인 이화영** 그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정황이 그런 정도면, 특히 검찰에서, 특히 박상용 검사가 그 정도 진술로,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정도면 적절하고 내 진술도 그 정도면 적절하고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자면 저를 회유를 한 거지요.

○**박은정 위원**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검사도 아니지요. 검사가 무슨 진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허위 진술을 압박하고.

그래서 증인께서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을 어쨌든 옥중서신의 형태로 증언한 것이 아까 처음에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삼인이 성호했다.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3명이 호랑이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증인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맞습니다.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짧게 하세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정황에서 검찰 측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는 회유 하나는 압박이었는데 그 압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압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수사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있었고, 특히 여기 신명섭 국장 구속시킨 것과 같이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구속…… 실제 구속영장 다 쳐 놨다, 네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시범 케이스로 신명섭 국장을 하나 구속시켰는데 연이어 누구 누구 누구를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고.

그 밖에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돈을 더 줬다, 뇌물을 더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잔뜩 만들어 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313호에 갔다가 위에 1514호에도 보내 가지고 1514호에서는 별건을 수사하게 해 가지고 두 곳을 왔다 갔다하면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주고 또 한편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딜을 하자고 저를 계속 회유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이것 자료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속독으로 다 읽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화영 증인, 여기 ‘비망, 318 이화영, 수원구치소’, 접수 도장 찍혀 있는 것 보니까 이게

구치소 정식 허락을 맡은 자료입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죽 보니까 일기 형식으로 쓰여 있던데 그날그날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한 겁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그날그날 썼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술자리가 벌어진 날도 특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수원구치소에도 검찰이 수시로 압수수색을 왔기 때문에 제가 관련 일기를 처분해 버렸습니다. 없애 버려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좀 다시 해 보니까 술자리가 있었다는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일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한꺼번에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한 겁니까, 일기 형식으로?

○증인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저도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은 없으실 텐데, 그래서 물어볼 텐데 보통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검방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은 집필 내용 이런 것은 교도소, 구치소 자체 내에서 압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증인 이화영 예, 당연히 그렇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것은 합법적인 자료입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그것 다 교도소에서, 앞에 보면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정청래 도장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라고……

○증인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이것은 기억을 더듬어 다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오늘 국회에 증인 출석하면서 구치소에 허락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증인 이화영 아니, 그 이전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제출이 됐었고요. 제가 오늘 참고로 그 내용들을, 일정을, 일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가 위원님들이 계속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하시기에 차라리 위원회에 전문을 제공해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공한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원교도소 쪽에 계신가요?

○증인 이화영 수원구치소 측에서……

○위원장 정청래 수원구치소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자료다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김현철 변호사님, 잠깐 증인석에 서시겠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형사사건 변론하시면서 이 수사보고서 많이 보셨지요?

○증인 김현철 예.

○장경태 위원 이미 이 수사보고서 잘 알고 계시지요? 워낙 유명한 보고서인데.

보통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주임검사 결재까지 받지요?

○증인 김현철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수사보고서가 검찰의 수사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증인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N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주가조작, 나노스의 주가 부양 계획에 대해서 검찰도 이런 수사 방향으로 알고 있었고, 잡았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증인 김현철 예.

○장경태 위원 그런데 이 수사 방향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인 김현철 아마 그 수사보고서는 2022년 10월 2일 자로 생각됩니다. 엄용수 실장의 카카오톡을 분석한 자료이고 당시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자라는 내용이고 주가 부양의 콘텐츠들은 당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대북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김형기 차관을 영입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경태 위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박철준, 소위 쌍방울 주가조작의 키맨이 ‘오늘도 N 활성화 부탁이요’,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입니다—이 ‘그게 뭐냐’ 또 그러니까 김형수 쌍방울 미래전략본부장이 ‘나노스 댓글’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변호사께서 이것 아시지요, 국정원 문건?

○증인 김현철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국정원이 이 주가조작의 연루설이 폐지자, 제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했다라는 국정원 문건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철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쌍방울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해서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 로비 사업 또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 하였다는 것이 안부수 1심 판결문에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검찰도 법원도 국정원도 주가조작과 소위 대북 로비 사건으로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현철 2022년 10월까지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나노스의 주가 부양 사건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왜 김성태 회장은 외국환거래법으로 기소가 되지요? 국가보안법이나 특가법상 국외 재산 도피에 대해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현철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건가요, 보시기에?

○증인 김현철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김성태와 검찰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가 이 모든 사건……

○장경태 위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화영 증인,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증인 이화영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증인 이화영 아, 박상용 검사네요.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박상용 검사입니다.

○증인 이화영 예.

○장경태 위원 너무 잘 나왔나요, 사진이?

○증인 이화영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분이 사건 조작 검사 맞습니까? 저기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옥중서신 본인이 쓰셨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회유·협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관 변호사 누구입니까?

○증인 이화영 제가 전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 모 변호사님이신데요.

○장경태 위원 조재연 변호사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하세요. 제가 질문드린 거잖아요.

○증인 이화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23년 6월 19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서 만나신 것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서 만난 것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박상용 검사실에서 연결해서……

○장경태 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가 김성태 진술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했습니까?

○증인 이화영 조 변호사께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박상용 검사하고 저하고 혹은 수원지검 측하고 저하고 소위 딜을 했었던 일련의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검찰의 고위층에, 최고위층에 확인을 했으니 믿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했고 이것 잘못하면 상당히 늦에 빠지겠다고 걱정을 하니까……

○장경태 위원 조재연 변호사는 부산고검 검사장 출신, 매우 고위직이었지요?

○증인 이화영 수원고검 고검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박상용 검사와 근무 기간도 같이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조재연 변호사가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장 시절에 쌍방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던 김성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수사팀장이었던 김영현 검사는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증인 이화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먼저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영상에 나오는 김성태 회장 얼굴은 보이시지요?

○증인 이화영 예.

○장경태 위원 거기 주변 인물 잘 봐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회장과 함께 술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신지.

○증인 이화영 예, 보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난 6월 20일 뉴타임사가 쌍방울 옥상에서 열린 파티, 일명 옥상 파티 촬영한 영상인데요.

김성태 회장 옆에 있던 사람 누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이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 변호사……

○장경태 위원 조재연 변호사 맞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조재연 변호사가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이날이 6월 20일인데요, 2주 전 6월 7일에 1심 판결이 있고 6월 12일이 이재명 대표 기소한 날입니다. 그 이후에 6월 20일 그날 이렇게 옥상 파티, 기소 기념 파티를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이화영 전혀 몰랐습니다.

○장경태 위원 술자리 회유하고 쌍방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기 수사팀장이 사외이사로 가 있는데 이렇게…… 썩어도 썩은 검찰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딸 안소연 씨, 안부수 씨의 딸 카톡입니다. 안소연 씨인데요. 이때 김형수, 박상웅, 안부수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때 ‘또 폰 가지라’라는 말을 합니다.

수원지검에서는 폰을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제출할 폰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이에, 이전에 쌍방울로 갔던 폰이 언제 딸에게 갔으며 딸이 어떻게 수원지검으로 제출합니까?

그러면 수원지검이 지금 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하려 왔다는 말과 안부수의 딸이 지금 가지려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수원지검의 진술과…… 이것 아직 미공개된 카톡인데요, 이 앞뒤 정황이…… 수원지검의 입장과 딸의 입장이 같습니까?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참고인 봉지욱 아니요. 검찰이 압수했던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딸에게 지난해 2월에 돌려줬고요. 돌려준 휴대전화를 쌍방울의 박상웅 이사가 달라고 해서,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쌍방울에 건네는 게 카카오톡 대화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3월 18일에는 아예 딸이 아버지를 검찰청 가서 면회하는데 그 면회 자리에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김형수 대표, 박상웅 이사 등등…… 그러니까 딸이 쌍방울 임원들의

이름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봤던 게 아니고. 안부수 회장의 비서였던 김 모 씨와 안부수 회장의 딸은 수시로 쌍방울 측과 연락을 했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변호사비까지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와 별도로 오피스텔까지 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해명은 폰을 제출할 시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압수해서 포렌식한 폰을 딸에게 돌려줬는데 왜 돌려줬느냐? 안 돌려줘도 되는데 굳이 돌려준 것은 쌍방울 측에 폰이 넘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 돌려준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수원지검은 폰을 제출하기 위해서 불렀다 했고, 가지러 간다고 했고, 아빠가 온다고 맞춰 오라고 했고…… 딸이 이 증거물품을 제출하러 갔는데 아빠를 만나게 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무슨 대행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김성태 회장이 작년 1월 17일에 체포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압송이 됐는데 작년 1월 카카오톡을 보면 딸은 아버지를 만나러 구치소로 갔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오고 나서는 검찰청으로 면회를 간 겁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제가 17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이화영 의원님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고 미래 정치를 지향하는 젊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그런 긍정의 모습으로 저는 중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인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여러 범죄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이후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방식으로 명예 회복하는 날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화영 중인은 정치권에서는 의리의 남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상수 전 의원이 사법리스크로 출마가 어렵게 되자 그 지역에 대신해서 출마하면서 국회에 입성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오셔 가지고 핵심 당직도 여러 가지 맡으시고 당에서 정말 유망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면서 재선이 확실시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상수 전 의원이 사면·복권되고 정치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본인이 본인 지역구를 다시 양보하셨어요. 국회에서 잘 없는 일인데 그런 모습들로 저는 중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중인을 회유했다고 민주당에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위원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화영 중인같이 태생부터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이렇게 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분을 상대로 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를 한다, 제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일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중인을 읊어

매면서 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이화영 증인을 어떻게 믿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다는 겁니까?

탄핵소추안에 보면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방용철 또 조재연 변호사 등을 통해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같이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검찰 대변인도 아니고 검사처럼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회유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말에 구치소에 면회 온 민주당 의원님들께 증인께서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대속의 의미를 아실 텐데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엎고 내가 대신해서 처벌받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증인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썼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화영 다른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물론 있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못 전해 들었는데 다른 말씀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박준태 위원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방북 비용 대납, 전부 다 본인이 모르게 직원들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말에 따르면 주변에 온통 배신자들만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6월 9일 재판에서 증인께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100만~200만 불을 보냈고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6월 9일 재판정에서 제가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고요. 저와 동행한 변호인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 속에서 피고인의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어 보인다면서……

○박준태 위원 그렇게 진술한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고……

○박준태 위원 좋습니다.

6월 18일 증인께서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옵니다. 부정하지 않으시지요?

○증인 이화영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박준태 위원 이런 증언이 없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이 원래 박상용 검사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그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도로, 정황론으로도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했는데……

○박준태 위원 그런데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법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요?

○증인 이화영 법정에서 진술했다고요? 법정에서는 그런 진술이 없었을 겁니다.

○박준태 위원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소개가 된 것이겠지요.

○증인 이화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진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 있지 않고 법정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변호인의 얘기였다 이런 겁니까?

○증인 이화영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호인이 좀 앞서 나가 가지고 일부 재판부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정황 변화가 있어서 입장은 좀……

○박준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술 번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원지검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또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변호인단 교체하자고 하면서 재판 지연되고 그다음에 기피 신청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등장한 것이 오늘 얘기 나오는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입니다. 이런 일련의 증인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어떤 집요한 사법 방해가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증인 이화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태 위원 예.

○증인 이화영 저는 안에 갇혀 있어 가지고 우리 당 의원님들이 와서 농성을 하는지 이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정말 제가 얘기한 진술로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전까지 검찰이나 아까 장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사건 같은 걸로 되지 내 진술, 내 정황론적 진술로 그렇게 구속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저에게 회유를 했었던 것이고. 저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는가 하고 주변하고 상의를 했었고 저에게 조언을 했었던 변호인들도 그 정도면 해 보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돌아갔어요. 상황이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굉장히 서두르면서 저한테 7월 중에 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서 저더러 인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법정에서 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그리고 주변 정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시간에, 8월에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제가 굉장히 압박과 양심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술한 걸로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됐고.

그 걱정은 사실 뭐냐 하면, 이건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터무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성태라는 자를 알지도 못하고 스마트팜이 뭔지, 당시 방북이 뭔지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아는 바도 없는 이런 허무맹랑한 어떤 가공의 구조 속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어떤 부분으로 그게 고리가 꽈 가지고 구속에 이른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아까 민변 출신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준태 위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인 이화영** 오신 변호인한테 제가 제 입장에서.....

○**박준태 위원**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들었고 이따 보충질문 때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십억에 달하는 자금을 갖다가 북한으로 보내면서 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도 안 했다 이게 상식에 어긋난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이화영**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전두환 군사정권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정권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총과 탱크로 정권을 잡았고, 윤석열 검찰정권은 윤석열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국민을 기만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사정권 때 일제강점기 때부터 담습해 온 고문, 협박, 가혹행위로 진술을 받았다면 민주화 이후에 출범한 윤석열 검찰정권은 회유와 협박, 피의사실 공표 등 법기술을 이용해서 자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증인 이화영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예, 아주 전적으로 제가 실제 저 상황의 완전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는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도 박상용을 비롯한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이화영 증인을 포함해서 어떻게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했는지를 밝혀서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통해서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증인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북송금 사건은 초기에는 쌍방울 나노스의 주가조작 사건이었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그 사건이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가 귀국하면서부터 사건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예.

○**이성윤 위원** 그 두 가지 근거 문서인 국정원 문건과 수원지검 수사보고서가 이미 제시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도 김성태가 검찰에 어떤 진술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재판을 받았으니까?

○증인 이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당시 이재명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는데 그 장소가 마닐라 아태 평화·번영 국제회의가 열린 곳이었고, 그것 준 사람은 리호남이 맞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게 김성태가 진술한 걸로, 70만 불인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증인도 마닐라 국제회의에 갔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거기에 리호남 있었습니까?

○증인 이화영 없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증인뿐만 아니라 안부수의 인터뷰라든가 필리핀의 초대장 그리고 사진, 대한민국 통일부의 문건에 의하면 리호남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초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김성태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김성태가 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김성태가 체포되어 들어오면서 자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 쌍방울을 거의 다 털어 버리듯이 그렇게 조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단한 압박감을 받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 골프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뺏길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맞습니다. 김성태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지금 기소된 것은 6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북한을 접촉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국외 재산 도피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 선고기간 중에 다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되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래서 본인 처벌을 면하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게 된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검찰이 김성태를 통해서 증거를 조작하게 됐는가? 바로 김성태를 통한 검찰의 회유·협박 메커니즘이 작동되게 됩니다. 수사기법 중에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사람들 진술을 확보할 때 이런 식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첫째, 김성태를 통해서 증인을 회유·협박했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대표적으로 김성태 씨를 저하고 단독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주선해서 김성태 씨가 저한테 많은 돈을 줬다 이렇게 내가 검찰에 진술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무조건 받아쓰게 되어 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자기가 많은 돈을 줬다 이렇게 진술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이 받아써 갖고 또 그에 관련된 조사가 들어가면 형 주변은 다 박살 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진술 중에서도 옥중노트에 보면 5월 달에 1313호에서 ‘형님, 평생 징역 살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했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 방용철을 통해서 증인 회유·협박 있었지요?

○**증인 이화영** 그건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방용철이 1313호에서 증인을 회유·협박한 내용 하나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법정에서 돈 1억 원을 나를 줬다, 특히 제가 부지사 기간 동안에 현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엄용수 증인하고 또 김형수인가 누군가 둘 다 동의하는 그런 조서를 써 가지고 저한테 터무니없는 걸 뒤집어씌우면서 ‘현금 1억 원을 줬으니까 형님이, 부지사님이 그렇게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걸 사실처럼 우리가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만일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겁박을 했고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 검사가 직접 증인을 회유·협박한 적도 있지요?

○**증인 이화영** 자주…… 검사는 특히 우리 변호인들의 활동을 상당히 비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이성윤 위원** 그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증인의 변호사 조력을 방해한 적도 있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6월 15일 날 변호사가 검찰에 나오지 않았으니 조사받기를 거부한다고 하자 박상용 검사는 ‘변호사 없어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피신을 받은 적도 있지요?

○**증인 이화영** 더 나아가서 제가 변호인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해서 없다고 그랬더니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에게 변호사를 좀 구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성태 측 도움으로 변호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후에 피의자라든가…… 증인,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여서 연어 파티, 술 파티 한 것은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연어 파티 중에 박상용 검사가 증인에게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진술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랬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찰은 이렇게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얻은 가짜 진술로 기소한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칼을 든 군인이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지금도 위법·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 탄핵하고 특검까지 해야 되고.

전두환 정권이 몰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회가 케덜됐듯이 윤석열 정권의 끝은 검찰의 해체라고 봅니다. 검찰 해체야말로 제2의 민주화라고 보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이화영 예, 저도 동의하고. 제가 출석하기 전에 성함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전 감찰부장으로 있었던 분이 썼던 ‘검찰의 심장부에서’ 그 책을 좀 보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하시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수사기법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묘사가 되어져 있었고요.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저를 잡았다, 저를 체포했다 그러면 저의 주 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있더라도 나머지 걸 털어서 별건으로, 가벼운 거라도 꼭 구속을 시켜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특수부 검사다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이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7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좀 늘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이화영 증인, 건강 좋으세요?

○증인 이화영 2년 이상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안 좋습니다.

○박지원 위원 금년 폭염에 엄청나게 고생했지요?

○증인 이화영 예, 그래서 지금 기가 좀 빠져 갖고 안 그래도……

○박지원 위원 참으세요.

○증인 이화영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3년 살았어요.

○증인 이화영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는 1심에서 20년, 항소심에서 20년 구형받고 12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가지고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화영 지사의 정의로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윤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김성태 회장 저하고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김성태 회장하고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이 귀국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아느냐하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었더니 ‘전연 모르고 술좌석에서 한 번 전화한 기억이 있다, 누가 술 먹다가 바꿔 줘서’.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느냐?’ ‘전연 모른다’, ‘술좌석에서 전화한 번 받았다는네?’ ‘글쎄요, 그건 기억이 없는데요. 저도 정치인니까 술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하잖아요’.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국정원의 블랙요원과 함께 스마트팜 관계로 김성혜 통전부 실장 접촉했지요?

○증인 이화영 제가 말씀이십니까?

○박지원 위원 예.

○증인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화영 예.

○박지원 위원 그래 가지고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접촉을 하니까 블랙요원이 안부수 회장을 협조자로 채용을 합니다. 그랬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500만 달러였는데 느닷없이 800만 달러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이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주가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자인 안부수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내 줬지요? 주가조작이었지 다른 건 전혀 없다.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화영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검찰에 제출한 것을 검찰은 증거 채택을 안 했지요?

○증인 이화영 아니, 증거로 냈습니다. 내 가지고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박지원 위원 법원에서 왜 인정을 안 했지요?

○증인 이화영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원 위원 법원이……

○증인 이화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 관련 문건에는 여러 군데, 계기가 되면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또 저희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안부수의 허위 증언, 허위 보고한 것 한 부만 인용해 가지고 그것이 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의 블랙요원이 관계를 하다가 쌍방울에서 주가조작으로 대북 관계를 활용하니까 국정원으로서는 개인회사의 주가조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할 수 없다 하고 끊었잖아요.

○증인 이화영 그랬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그러한 문건을, 사법부에서 국가기관인 대공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의 문건을 왜 증거로 채택 안 했지요?

○증인 이화영 이 사건은 향후, 국정원에서 저희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도 거의 다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가려져 있고 과편적으로 부분 부분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절차를 통해서 그 시기에 있었던 국정원 문건이 다시 한번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정원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안부수 회장을 통해서 계속 폴로업을 했을 거예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주가조작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대북사업에 국정원이 협조해서 개인회사의 주가조작에 활용될 수 없다 하고 끊은 것 아니에요?

○증인 이화영 그랬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화영 예.

○박지원 위원 이 과정에서 스마트팜 500만 달러가 왜 800만 달러로 둔갑했지요?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으로 둔갑했지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이 그러한 주가조작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네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북측하고 계약금, 자기네들의 계약서, 북한의 희토류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북한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아마 1000만 불을 주기로 한 모양이에요. 1000만 불을 주기로 한 모양인데 그 시기, 그러니까 2020년 초창기에 500만 불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줬고 북에서 계속 재촉을 하니까, 나머지 500만 불 주라 하니까 그걸 깎은 게 300만 불 같아요.

그래 갖고 또 나머지를 주고 그러면서 이 두 일이 진행된 것들, 500만 불하고 300만 불을 준 정황들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는 그 당시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해서 줬다고 하고 그 뒷부분은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줬다 이렇게 말……

○박지원 위원 거기서 갑자기 뛰쳐나온 거지요?

○증인 이화영 갑자기 뛰쳐나온 거지요.

○박지원 위원 제가요 20여 년 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도 검찰에 불려 가서 폭탄주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서 회유를 하던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예 파티를 하고 짜장면도 먹고 다 했는데 그러한 것을 그 창고 한 장소에서만 했습니까, 검찰에서도 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창고라는 공간이 검찰청사입니다.

○박지원 위원 검찰이지요?

○증인 이화영 검찰청사입니다. 거기서만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특별히 더 할 말 있어요?

○증인 이화영 아니, 위원님이 국정원에서 최고책임자도 경험하셨으니까, 저는 이 사건 초창기에……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 할 때 저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하면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북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뒤에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활동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국정원하고 협력하면서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블랙요원하고 제가 북한하고 상의하고 진행된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습니다. 다 공유했고 다 얘기했고 진행경과들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여기 옆에 있는 신명섭

국장도 증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국정원하고 다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 왔고, 저는 이 사건 초기에 국정원에서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면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된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법정에서나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문건을 보자, 국정원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관련된 문건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만 왔고 거의 많이 가려져 있고 또 그 밖에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한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현금 500만 불을 약속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 정말 해당한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이런 지점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국정원 문건에.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증인 이화영 그래서 제 말씀은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위원으로 계시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이화영 증인의 지금 진술 내용을 요약하자면 1심 재판부에서는 국정원의 증거자료가 재판부에 의해서 배척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저희들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정청래 국정원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지요, 지금?

○증인 이화영 대부분 다 우리 주장은 안 받아들여졌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유상범 위원 증거로는 채택이 됐는데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상범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보도에 보니까 국정원의 이화영 증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배척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본인들 주장은 입증할 국정원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유상범 위원 이것은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문건 전부는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원 문건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묘사를 저의 입장에서, 훨씬 저의 주장에 부합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님 조금 있으면 질의할 시간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유상범 위원 아니,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질의하실 것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거기에 피고 이화영 증인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들은 채택이 많이 배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이화영 전부 다 배제됐지요.

○위원장 정청래 전부 다 배제됐습니까?

○증인 이화영 예.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유상범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질문권을 갖고 질문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매번……

○위원장 정청래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거예요.

신문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정리 안 해 주셔도 알아서 다 국민들이 알고 동료 위원들은 알아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 자격 없는 송석준 위원이 또 끼어들어서 지금 유상범 위원의 신문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저는 양해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신문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엄용수 증인 나와 주시지요.

엄용수 증인!

○증인 엄용수 예.

○유상범 위원 비서실장으로 김성태 회장을 오랜 기간 모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엄용수 증인, 박상용 검사로부터 어떤 구체적·직접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는가요?

○증인 엄용수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없고요.

그런데 엄용수 증인, 검찰에서 대북송금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비용임을 진술하셨습니다.

○증인 엄용수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것이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는 사실을 엄 증인이 진술을 하신 이유, 내용, 경위는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증인 엄용수 그 당시에 검찰에서 상당 부분, 500만 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외국에 계실 때 저희들 임직원들한테는 이화영 부지사님을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북송금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거의 다 폐기 처분을 얘기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 폐기 처분을 해 가지고, 다 폐기 처분했습니까?

○증인 엄용수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많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억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에서 정확하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대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용수 증인은 김성태

회장뿐만 아니라 실제 직원들이 돈을, 외환을 가지고 나가서 지급한 경위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서 스마트팜을 대납하는 과정, 이 내용은 직접 다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증인 엄용수** 예, 처음에 제가 1월 달에 대북송금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뒤에 직접적으로 회장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용철 부회장하고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직접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안부수 회장도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을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증언을 하셨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제가 아는 대로 다 증언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 지금 민주당 쪽과 이화영 증인 쪽에서는 ‘모두 김성태 회장이 회유·협박을 통해서 허위로 나를 증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김성태 회장을 거의 악마화시키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한 엄용수 비서실장의 입장 말씀을 하시지요.

○**증인 엄용수** 이번 사건이, 500만 불을 대북송금을 할 이유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부수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소개를 시켜 주셔 가지고 만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2018년도 하반기 때 11월 이후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화해 무드라든가 그리고 민족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간의 교류 개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던 분위기였고 회장님께서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회장님하고는 한 20년 정도 되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화영 부지사님이 야인으로 계실 때 저희 회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회장님께서는 의리와 신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체포되어서 들어오실 때까지도 꿋꿋하게 이화영 부지사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직원들의 환치기 과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성태 회장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증인 엄용수**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화영 증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나노스 IR에서 이것이 마치, 거기 보면 ‘희토류 사업을 위한 명목으로’,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500만 불을 투자한다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투자 유치 담당자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투자 유치 보고서에 담기가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대북사업 계약금이라고 표기한 거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인 엄용수** 예, 당시 제가 직접 그것을 김형수 본부장하고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북사업 관련한 사업제안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이화영 부지사님을 통해서 방용철 부회장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런 점들을 참조를 해서 작성하게 된 것이고, 당시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지사님과 이화영 부지사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철저하게 가렸던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숨긴 것은 결국 이화영 부지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희토류 계약금으로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네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나노스 IR 작성 후에 쌍방울이랑 북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보면 사실 구체적인 사업조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증인 엄용수** 예.

○**유상범 위원** 그것이 희토류 채굴을 위한 계약금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계약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하셨지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북과 합의한 계약서 거기에 희토류 채굴 대가라는 그런 부분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지요?

○**증인 엄용수** 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엄용수 비서실장께서 사실은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마치 혀위 진술을 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지켜보시면서도 용기 있게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신문해 주시지요.

○**김승원 위원** 김광민·김현철 변호사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진술에만 의존하면 항상 나중에 그 진술은 변복되므로 진실을 밝힐 수가 없고 또 객관적인 문서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배웠던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그런 진술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삼인성호라는 그러한 별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표를,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인권침해,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인권침해 수사가 자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쌍방울 측이 북한 측과 계약을 체결했던 처분문서 위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 1월 17일 쌍방울 측과 아태위가 대북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맨 하단에 보시면 'SBW Group'이라고 되어 있어서 쌍방울그룹에서 작성한 것인데 조선아태위랑 나노스가 기본합의서를 2019년 1월경에 체결을 했고 그 계약금으로 이행보증금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사업 개시일에는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문서에 대해서 혹시 두 변호사님 보신 기억이 있나요? 이 문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현철 이 문서는 당시 쌍방울이 해외에서 1억 달러를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IR 보고서입니다.

○김승원 위원 IR 보고서고요.

나노스 주가 그래프 좀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2018년 12월 24일 날 4990원, 500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아서 9153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측에서 대북사업을 빙자해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보여 드리겠지만 수원지검에서도, 검찰에서도 또 국정원에서도 이것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빙자한 주가조작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여기 보시면 김영수 씨라고 대북사업을 했던 현대아산 전략기획실장을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나노스는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해서, 거기 맨 아래 보면 대북전문가 영입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형성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화면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으로 2019년 5월 12일 날, 2조에 보시면 북한과의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남측 회장 김성태 그다음에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대표해서 방강수 회장이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북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김현철 방금 엄용수 실장은 당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희토류 그리고 많은 지하자원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 철도 사업,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자원을 모두 매각하는 그런 내용의 합의서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렇습니다.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쌍방울 내부 문건인데요, 2019년 7월 1일. 여기에 드디어, 쌍방울 내부에서 2019년 7월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회장님은 김성태 씨를 말하는데요—방북 추진을 해야 된다, 내의 지원—속옷—쌍방울이니까 내의를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 또 회장님 방북 문제 또 아태협과 함께 제삼자 합의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부 문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봐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한 대납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 본인이

먼저 북한에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증인 김현철 2019년 5월 12일 계약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중에 공개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쌍방울로부터 돈을 한 번 더 뜯어내려는 사기 수법이었고 결국 공개가 되어야지 주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김성태는 반드시 북한을 방북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서가 바로 저것들입니다. 김성태가 평양을 방북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김승원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게 아까 장경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으로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다라고 자기들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 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 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대북사업을 진행해서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아까 4900원에서 9000원까지 뛰었지요—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했고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이 뭔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수원지검도 인정했을뿐더러 국정원에서도…… 이게 아마 Ⅱ급비밀 문서인데, 국정원장께서까지 보고되는 아주 신중한 문서인데 여기서도 협조자, 협조자는 안부수 씨입니다. 안부수 씨가 주가조작 실행 가능성,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바…… 안부수하고는 대북사업 못 하겠다, 협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안부수가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까지 취임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사업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그다음 PPT 화면도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도 북한과 쌍방울의 500만 불이라든가 300만 불 이런 것들이 다 쌍방울의 방북 사업을 빌미로 한 주가 부양, 주가조작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도 인정을 했고 국정원도 인정을 했고 안부수 씨 수원지법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한 겁니까? 그래서 삼인성호 아닙니까? 사람들의 진술을, 예컨대 김성태 씨에게 형량 거래를 통해서 진술을 바꾸게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본 것, 500원 전환사채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다 그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현철 평균 주가를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략 5000~6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환가액이 500원이면 4500~5500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김성태 측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당시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대출권자는 그 주식을 매도합니다. 결국 주식을 매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시 100만 주를 계산하면, 5500원 곱하기 100만 주면 무지막지한 돈이지요. 그만큼의 수익을 이미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하시지요.

○증인 김광민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짧게 해 주세요.

○증인 김광민 전환가액이 두 번 있었고요. 처음에는 100원이었습니다. 500원은 100원이 하다하다 너무하다 해 가지고 조정한 가액이 470원 이럴 겁니다. 처음에는 1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노스라는 회사는 대주주 비율이 거의 90%가 넘어가는, 소액주주가 없는 회사입니다. 소액주주가 없는 회사기 때문에 쌍방울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회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의 방법은 소액주주가 많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사용되기는 했겠지만 대주주 비율이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전환사채에 의한 담보권 실행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 나온 것 중에 IR 자료에 대해서 검찰에서의 조사와 진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김태균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분이 나와서 IR……

○위원장 정청래 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여기서 정리해야지 질문 대상도 아닌데 그냥 나와서 질문에 답하고.

○김승원 위원 아니, 대상입니다.

○증인 김광민 저 질문 대상이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김현철 변호사한테……

○김승원 위원 IR 부분만. 제가 두 분 다 불렀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짧게 정리해 주세요.

○증인 김광민 예.

김태균이 작성했고, 김태균이 작성했다라는 게 주요사실로 인정이 돼서 유죄가 입증되었는데 방금 엄용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모순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나노스 주가조작에 의해서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어 가려고 했던 전형적인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작성한 것을 제가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이화영의 옥중 육필, 억울한 심경 토로’.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볼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협박과 회유. 협박,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등을 적용해 징역 10년 이상을 살리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통해서 뉘물, 정치자금법, 알선…… 수수를 기소할 여러 가지 사건을 준비해 놓았다. 이재명, 이해찬도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경기도 공무원을 구속시키겠다. 아내와 아들을 구속시키겠다. 수행 비서, 지인 등을 구속시키겠다. 압수수색, 연행 조사 등’ 이런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쌍방울 김성태를 편들고 이재명 지사를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 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라고 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재명이 주범이 되면 이화영은 종범이 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주겠다. 1년 구속기간 만료 전에 보석으로 석방하도록 하겠다’라고 회유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런 적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내,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에 대한 수사, 별건수사도 멈출 것이다’라고 회유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본인이 작성한 사건의 본질입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사단 정치검찰이 정권, 즉 윤석열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대권 경쟁자이며 야당의 대표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협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국 장관 수사와 이를 주도한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경계심이 허물어진 정치검찰의 만용과 직권남용, 불법행위가 극에 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보인 행태를 보겠습니다.

주변 수사, 가족 수사를 통한 피의자 압박을 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육체적 고문보다 훨씬 악랄한 다양한 고문을 행했다’, 정신적 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경기도청에 대한 회유·압수수색과 여러 건의, 수천 건의 압수수색물’, 이것도 확인한 바 있지요?

○증인 이화영 예.

○위원장 정청래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 수사 및 구속, 피의자 처·아들에 대한 구속 협박, 재판 증인 출석자에 대한 위증, 구속 협박, 압수수색, 연행, 피의자 이화

영 변호사에 대한 겁박 및 기소, 피의자 주변 지인 및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의 말이 못 미더우면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 보라', 검찰이 고위직 출신 변호사 면담, 김성태 변호인 등의 면담을 주선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변호사들은 검찰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김성태 진술을 동의해 주고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이화영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득한 바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검찰 고위직 출신 A 변호사는 과거에 알던 변호사,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접견 요청해서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함. 선임을 거부하며 만나지 못함'.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심해진 2023년 4월에서 6월에 검찰 측 주선으로 수원지검 1313호실 검사의 프라이빗(private)한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사오 차례 면담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를 검찰이 직접 소개하여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이삼 차례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외에 김성태의 변호인으로 생각되는 변호인 2인 정도를 한 차례씩 검찰 주선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피의자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배석이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지자 회유를 위한 조사에 변호인 배석이 안 되면 모양이 좋지 않다면 김성태의 주선으로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배석한 바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공범들을 통한 회유 및 협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김성태와 단독 면담 십여 차례 주선, 김성태는 이화영에 대해서 자기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뇌물·정치자금, 알선수재,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 교사 등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 협박한 바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또한 이재명, 이해찬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 협박 또한 방용철 등 회사 직원들의 허위 진술은 물론 법정 증언도 불리하게 할 것이라 협박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성태의 조작수사 협조 대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김성태는 이재명, 이화영에 대한 거짓 진술의 대가로 자신에 대한 추가수사를 면제받음,.추가수사 내용은 대북송금 800만 불 자금원, 주가조작, 허위 CB 발행, 해외원정 도박, 허위직원 등재, 해외도피 행각, 포천 골프장 불법 조성 등등 이런 것은 수사 면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검찰에 협조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성태 본인과 방용철, 안부수, 박상웅, 박상민, 김태현, 양선길, 김영모 등 구속된 쌍방울 직원의 보석, 집유 등 조기 석방을 약속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검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자랑한 바 있지요.

‘김성태의 동생 김영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려 했으나 김성태의 협조로 징역 6월만 구형하여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박상웅 검사가 자랑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성태의 황제 수감생활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전 변호인 접견, 오후 검찰 출정, 검찰에 쌍방울 직원 박상웅·박상민 등 2~3인이 출근하여 김성태의 수발을 들고 실질적인 회사 경영, 먹고 싶은 음식·음료·술 등을 항상 제공받음. 공범들과 입 맞추기, 1313호 앞 창고 공간에 공범이 모여서 진술을 맞춤, 세미나를 함.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하여 조작 수사를 지원함. 검찰에서 무한정 변호인 접견. 검찰의 주선으로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라는 공간에서 공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과 수차례 회합, 같이 식사하고 다과 먹으며 세미나처럼 말을 맞춤’, 쌍방울 직원 박상웅이 거의 매일 검찰에 나와서 김성태의 수발을 들며 이화영에게 외부 지인과의 연락, 자금 지원 등을 제안하며 회유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술자리 관련해서 참석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박상웅, 박상웅 검사, 검찰수사관 1~2인 등이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공된 음식은 연어회, 회덮밥, 국물요리, 술, 음료가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소와 일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 오후 6시. 특검 등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날짜를 특정하겠음. 교도관의 위치, 영상녹화실 밖 좁은 공간에서 있었고 술자리 중 교도관이 계속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함. 술자리 이후 피의자 이화영에게 진행되던 별건수사 등이 중단됨. 구속시키겠다고 압박하던 주변인 수사, 가족 수사도 중단됨’, 김성태 진술도 바뀌고 방용철, 안부수 등도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런 등등의 증인의 진술로 봐서 박상웅을 우리가 오늘 탄핵 소추하는 건데 여섯 가지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변호사법 제36조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세 번째,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네 번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접견 조항. 다섯 번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섯 번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박상웅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할 말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상당히, 저도 6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을 하고……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

랐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거의 1% 미만으로 낙선한 후보고 또 그 뒤에 제1야당의 대표이고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떡하든지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거기 죽 표현했었던 것들에 대한 회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PC가 털릴 정도였었고 압수된 문건만 5만 건에 이르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요즘 분위기하고 그때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검찰이, 약간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잊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무슨 전리품처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과열 경쟁이 있었고 1313호에서 안 되면 1514호에 불려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수원지검의 거의 모든 검찰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 저희들 사건을 다루었고요. 아마도 수원지검 형사6부인가 거기는 지난 2년간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을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럴 정도로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흐름에 좀 일조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도 좀 놀랐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면서 제가 크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하면서 이건 제대로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주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시간은 5분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신문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주신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5분 안에 질문 시간을 해 주시고, 중언하시는 분들이 중언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양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 질문시간 5분이 지났는데 다 지나고 나서 그 상태로 질문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첫 질문자로요 송석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이화영 증인, 지난 30일 총선에서 다선에 성공한 민주당 현직 의원 2명이 접견을 오자 발언한 말씀이 있지요?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 달라,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어디 보도에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것 맞습니까, 발언하신 것?

○증인 이화영 저도 그렇게 보도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대속이라는 말 하셨지요?

○증인 이화영 예, 제가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대속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지요?

○증인 이화영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상상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죄를 내가 대속했다는 취지가 절대 아니고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증인 이화영 일상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정치하는 많은 분들도, 그때 오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아마 초선으로 갓 당선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은데……

○송석준 위원 자……

○증인 이화영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법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당선된 것도 모두 누군가의 어떤 그런 대속……

○송석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시고……

○증인 이화영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된 것 아니겠느냐……

○송석준 위원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문제가 결국은……

본인이 말을 번복한 적이 있지요?

○증인 이화영 어떤 말을 번복했습니까?

○송석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 9일 날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한 적 있지요?

○증인 이화영 6월 9일 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좋아요.

이화영 방북 비용 진술 관련해서 6월 30일 날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라고 한 적 있어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그건 검찰……

○송석준 위원 아니, 예스 노만 하세요.

그런 진술 한 적이 있지요?

○증인 이화영 아니, 법정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없어요?

○증인 이화영 예.

○송석준 위원 검찰과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어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

○송석준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좋아요. 없다고 보겠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7월 11일 김성태, 법정에서 대북송금 상세 경위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화영과 상의하여…… 이것은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차 부부 싸움이 벌어졌어요. 언제쯤인지 기억나시나요?

○증인 이화영 ……

○송석준 위원 7월 25일이지요? 배우자께서 ‘정신 차려라’라고……

○증인 이화영 그건 언론의 표현이고요. 부부 싸움 한 적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것은, ‘정신 차려라’라고 한 것은 법정에서 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화영 회유 1차 실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8월 2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검찰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 혼자 광야에서 저러고 다니면 어떡하나’라고 말하신 적 있지요?

○증인 이화영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송석준 위원 8월 2일 날 측근에게.

다시 한번…… 8월 8일 증인이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온 법무법인 누구누구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 법무법인 뭐뭐에서 제출한 기피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은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증인 이화영 언제, 정확하게 지금……

○송석준 위원 8월 8일.

○증인 이화영 8월 8일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송석준 위원 법정에서 무단 퇴장을 하셨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다음에 2차 부부 싸움 또 있었지요. 기억나나요?

○증인 이화영 부부 싸움 한 적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8월 23일, 거기 배우자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 조사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 당신 편 아무도 없다’라고 배우자께서 하신 적 없나요, 이런 말?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위원님은 어디서 그런 걸 구하셨습니까?

○송석준 위원 이게 다 객관적으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말이 바뀌잖아요, ‘이재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김성태 등의 회유, 협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 말은 했다고 당연히 말씀하시겠지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제가 정말 답답해요. 우리 정말 귀한 시간에 특정 정해진 얘기를 또 이렇게 정해진 레코드 틀어 놓듯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은 잘못됐다, 후회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실을 외면하고 본인의 바뀐 얘기를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정에서 정확히 가려질 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세요.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이건태 위원 경기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는 500만 달러,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지급한 동기는 명백히 1억 달러 광물 채굴 등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지급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민사에서는 이 처분문서의 증거능력,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김성태 측이 북한 측에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쌍방울 내의 1000만 불 상당 제공, 협동농장 단계적 미화 300만 불에서 500만 불을 제공하는 대가로 내의 공장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또 대북 지하자원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현철 예.

○이건태 위원 그리고 19년 1월 17일 자 합의서에도 북측이 희토류 등 광물 채굴권을 주는 대가로 쌍방울은 1억 달러를 제공하고 아울러 협동농장 현대화 지원 등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서는 양측의 쟁무계약이거든요. 그러면 500만 불은 이 합의서에 의할 때 또 쌍방울의 제안서에 의할 때 1억 달러 사업권을 얻기 위한 돈인 게 맞지 않습니까?

○증인 김현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승원 위원님이 띄웠던 IR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1억 달러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만든 IR 자료인데 거기에 명백히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보증금 1월 200만 불 지급 2월 중 300만 불 지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1월 17일 합의서, 제안서에 부합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계약금이나 이행보증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썼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외국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호사님?

○증인 김현철 예.

○이건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측에서는 차마 대납금이라고 쓸 수 없어서 계약금, 이행보증금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민사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으면 받아들여질 리가 없지요?

○증인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합의서가 19년 5월 12일 날 정식으로 체결되는데 이게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증인 김현철 예.

○이건태 위원 두 분은 들어가십시오.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화영 부지사님, 이것 좀 봐 주세요.

이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 스마트팜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이겁니다. 만약에 스마트팜 대납 비용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2019년도 1월과 4월에 500만 불이 지급됐다면 그러면 경기도로서는 할 도리를 다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9년 3월에 스마트팜 예산 34억 5000을 세우고 2019년 8월에 스마트팜 예산 49억 7000을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또 2020년도에 스마트팜 예산으로 50억을 세워요. 뿐만 아니라 2020년 8월 4일 날 스마트팜 사업 대북제재 해제 승인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김성태가 주장하는 스마트팜 500만 불과 경기도의 스마트팜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맞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건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인 이화영 제가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그런 스마트팜 비용을 그 시점에 북한의 김성혜를 만나 가지고 ‘내가 돈을 500만 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설정이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황당할 뿐입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니까 저들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18년도 10월 달에 약속한 돈을 11월 달에 재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두 차례 방북을 했었는데 두 차례 방북 모두 다 다중과 함께 했고 그 다중과 함께 김성혜를 각 1회씩 만났었지 제가 개별적으로 김성혜를 만났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성혜에게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허구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순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시기에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장경태 위원님과 이건태 위원님이 순서를 바꿔 지금 이건태 위원님이 진행하셨고, 오전에 장동혁 위원님 순서인데 곽규택 위원님이 순서를 바꿔서 했는데 곽규택 위원님은 제가 오전에 발언권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앞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뭐 무서운 거 있어요? 왜 발언을 못 하게 해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나서 질문을 전현희 위원이 해야 되는데, 전현희 위원이 지금 김용민 위원하고 발언을 바꾸겠다고 했습니까?

○김용민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오늘처럼 제가 조용히 있는 날이 없는데 왜 발언권을 정지시켜요?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뭐 무서운 거 있어요? 왜 발언권을 정지시켰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지금처럼 그렇게 하니까 발언권이 중지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뭐요!

○위원장 정청래 아까 못 들었어요?

○곽규택 위원 못 들었어요.

○위원장 정청래 다시 속기록 보세요.

○곽규택 위원 설명해 보세요, 한번.

○위원장 정청래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요.

○곽규택 위원 왜 발언권을 정지시켜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권한입니다.

아까 누차 경고를 했었지요?

○곽규택 위원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145조 1조·2조 살펴보세요.

○유상범 위원 1조·2조에는……

○곽규택 위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서유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유상범 위원 위원장께서 부당하게 의사 진행을 명목으로 질의권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항의하는 말을 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하세요.

유상범 간사님도 경고합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곽규택 위원 무슨 경고를 그렇게 남발을 해요?

○유상범 위원 이런 식으로 경고를……

○위원장 정청래 신문하세요.

○유상범 위원 뭐 축구장 레퍼리예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면 위원장답게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신문하세요.

혼자 성내 봤자 건강에 안 좋습니다.

○곽규택 위원 혼자 원맨쇼를 하시네, 진짜.

○김용민 위원 질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화영 증인, 혹시 ‘전략자백’이라는 책 읽어 보셨습니까?

○증인 이화영 못 읽어 봤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마 대부분 안 읽어 보셨을 겁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는데도 허위 자백을 하는지 주요 사례를 들면서 아주 세세하게 분석돼 있는 책인데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주요 특징을 여덟 가지로 정리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일상생활로부터 격리시키고 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장기간의 정신적 굴욕을 시키고, 사건과 관련 없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인격을 부정시키고, 전혀 변명을 들어 주지 않는 수사관의 모습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전망 상실 그리고 내가 부인을 했을 때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진술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지금 그대로 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1992년에 경찰관이 근무를 나간 사이에 자신의 애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피의자로 몰려서 자백을 해요, 자기가 죽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잡혔어요. 경찰관, 너 왜 자백했냐 했더니 이렇게 안 하면 범행을 부인해도 어쩔 수 없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대신에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을 하니까 경찰관마저도 허위 자백을 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DNA 검사를 통해서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졌던, 과학수사로 뒤늦게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졌던 사람들 중에서, 그 범죄자들을 보니까 한 27%가 허위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DNA로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수사 과정에서 27%나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허위 자백이라는 것은 그 메커니즘상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일수록 허위 자백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다음 페이지.

비슷한 취지에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화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기 전에 검찰이 열아홉 번 소환을 했고 그중에 다섯 번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충 기억에 맞아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기소된 이후에, 3월 21일 날 기소됐지요?

○증인 이화영 예.

○김용민 위원 그 이후에 검찰에서 백이십 번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오십이 번을 출석 해요. 비정상 아닙니까, 기소된 사람을?

여기에 대해 압박감 심하게 많이 안 느끼셨어요?

○증인 이화영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김성태 회장 볼까요? 기소 전에 열여섯 번 출석 요구하고 열세 번 출석했습니다. 기소 된 이후에 구십사 번 출석 요구하고 육십구 번 실제로 출석합니다. 방용철, 안부수 이런 분들도 기소한 이후에 백삼십 번, 오십구 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세미나 하고 그리고 자기 사건에 어떻게라도, 기소된 사건에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유리하게 해 보려고 검사 말 잘 듣고 그렇겠습니까?

실제 증인도 그런 압박감과 회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진술하고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증인 이화영 많이 들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옆에 계신 신명섭 국장님, 오늘 쭉 얘기를 들어 보셨을 건데 이화영 증인께서 하셨던 얘기들, 그런 압박을 혹시 증인도 많이 느꼈어요?

○증인 신명섭 예.

○김용민 위원 증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감을 주던가요?

○증인 신명섭 제가 작년 5월 16일 날 구속이 되고 6월 5일 날 기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구속되기 전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스물아홉 차례 조사를 받습니다. 압수수색을 다섯 번을 당합니다. 집을 두 번 당하고 제 사무실 두 번 그다음에 법정에서 재압수수색 한 번 해 가지고 다섯 번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제가 구속되고 난 후에.....

○김용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증인 신명섭 그러니까 구속 이후에 면회가 금지가 됩니다. 면회가 금지가 돼서 3주 동안 집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면서 집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검사가 여기 계신 김현철·김광민 변호사한테 저희 집사람을 검사실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기소가 된 이를 후입니다.

○김용민 위원 박상용 검사가 그랬다는 건가요?

○증인 신명섭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검사가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제가 검사실로 나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왔습니다. 먹을 걸 좀 싸 가지고 검사실로 와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음식을 싸 가지고 왔습니다.

○김용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증인 신명섭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검사는 없는 상태에서 교도관과 수사관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거는 저를 압박하고 난 다음에 회유하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그 뒤에, 정확하게 날짜가 아까 계속 나왔던 6월 18일입니다. 연어 파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6월 18일인데, 6월 18일 날 13층에서 부른다. 검사의 요청으로—박상용 검사의 요청이었을 것 같습니다—13층에 가서 이화영 피고인을 만나라고 해서 제가 6월 18일 날 1313호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그때 이화영 피고인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박상용 검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질신문이면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제가 따로 영상녹화실에서 한 10여 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두 분이서만?

○증인 신명섭 예. 얘기를 하고, 그 뒤에도 두 번 더 그런 식으로 박상용 검사가 저를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는데 그 대질신문에는 항상 박상용 검사가 없었고, 이화영 부지사와 마지막 면담을 할 때는 ‘얘기가 잘됐으니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박상용 검사를 불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위원장 정청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증인 신명섭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얘기가 잘됐으니 신명섭 국장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요?’라고 했을 때 박상용 검사가 ‘그럼요. 별것도 아닌 걸로 구속됐는데 나가셔야지요’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7월 달일 겁니다. 7월 17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규칙,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발언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 국회법, 국회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끼어들기 하지 말고 발언을 다 듣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라고 계속 안내 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던데 위원장한테 계속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꽝규택 위원처럼 오늘 당일 발언권이 중지되는, 중단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내말씀을 컷등으로 듣지 말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이화영 증인, 오늘 여기 자료라고 해서 제출하셨어요,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의 다 물어보셨는데 이런 자료. 검찰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 이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문을 하니까 이런 내용을 1심 법정에서 잠깐 언급하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또 이 자료는 변호인도 제출했다고 했지요?

○증인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또 ‘김성태의 진술이 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방북 대가 이것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심 판결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판결문을 꼼꼼히 봤는데 법원은 김성태의 진술을 신뢰했어요, 다 인정을 했고. 왜 그렇지요? 나는 그것은…… 법원은 이 재판 과정을 쭉 보면서, 이화영 증인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이 대신 스마트팜을 위한 비용 그리고 또 방북 대가 이것을 대신 대납한다 이런 것을 보고했다, 쭉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고 그 과정에서 법정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심에서 다 인정을 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제 얼마 후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이재명 재판이 있을 텐데 나는 그 방탄을 위한 탄핵 청문회다, 그래서 오늘의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엄용수 증인 나와 주셨는데요, 잠깐 나와 보시지요.

쌍방울은 원래 의류회사 아닙니까?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북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북사업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증인 엄용수 저희들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11월 이전까지는 전혀 대북사업의 대 자도 몰랐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대북사업의 대 자도 몰랐다?

○증인 엄용수 예. 그리고 저희가 대북사업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주가조작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사실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PBR 1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 관리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희가 다 인정하는 현실인데,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와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 불이 주가조작을 위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만 불이 있으면, 만약에 주가조작을 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하지 왜 그 것을 보내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1심 법원에 그것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1심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가 본격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은 2018년 12월경 이후로서 만약에 2018년 4월경 주가 상승을 경험한 김성태가 그러한 이유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2018년 4월 무렵 그때쯤 했을 텐데 2018년 12월까지 전혀 그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그룹이 작성한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500만 달러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쌍방울이 북한에 사업권을 대가로 계약금을 지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법원에서 아예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외화를 실제 현금으로 바꿨어요. 현금으로 바꿔 가지고 직원들이 중국으로 150만 달러인가를 나눠 가지고, 한 20명, 30명 나눠 가지고 전달하지 않았나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월 23~24일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돈은 회삿돈 단 1원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저희 회장님하고 20년 막역 지기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부탁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당시에 없는 사비를 털어서, 여러 지인들

한테 돈을 빌려서 그것을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이화영** 위원장님, 제가 조배숙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건 안 맞아요. 이건 안 맞아요. 본인은 하고 싶은 얘기 하겠지만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옳을 걸 얘기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아니더라도 이건 안 맞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저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짧게 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의 제기 있습니다, 이의 제기.

○**유상범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면 우리가 저기도 반론시켜요?

○**송석준 위원** 증언 희석시키는 발언 하면 안 되지요.

○**증인 이화영** 조배숙 위원님 제 1심 판결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는데 안부수 피고인의 1심 판결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전현희 위원** 이화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증인은 2022년 9월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 처음부터 ‘이 건은 방북 비용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김성태가 구속된 이후에 중간에 한 두 달 정도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김성태와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다소 혼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이 진술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입장?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왜 증인이 중간에 입장을 바꿨는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이걸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검찰에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와 증인이 함께 입 맞추기, 소위 진술 세미나를 했다. 그리고 연어 파티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증인이 이렇게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검찰에서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이화영**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이 죽 물으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제가 판결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카드를 누가 줬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성태, 방용철이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별건의 별건들 막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섭 국장도 구속시키고 제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다 스톱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달라, 이재명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내가 종범이 돼서, 그 당시 제 징역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을 텐데 구속기간 만기 내에 석방을 시켜

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박상용 검사가 그런 제안을,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변호사들이 검찰 고위층에게 확인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럴 때 제 진술의 정도가 쌍방울이 그렇게 한 정황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위 정황론 정도면 된다 이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전현희 위원** 그래서 검찰이 제시하는 그런 조건 그리고 진술 회유·압박 이후에 증인이 직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셨습니까? 어떤 진술을 했나요?

○**증인 이화영** 다시 한번……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증인이 그 이후에 검찰의 회유·압박의 조건을 가지고 실제로 진술한 내용이 뭐였냐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방울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자기네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면서 경기도를 위해서도 애를 썼다는 정황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런 정도가 얘기됐었고요. 그러다가 그걸로 안 된다 해서 제가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정황을 보고드렸다’ 그것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 그 뒤에 그 진술을 번복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제 나름의 함정을 팠지요.

○**전현희 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다른 행사가 있는 날 그때 보고했다고 하신 것이지요?

○**증인 이화영** 그런데 그것은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바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런 것들도 급해 가지고 그냥……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런 진술을 하고 난 이후, 검찰의 요청에 부응하는 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검찰에서 전에 약속했던 조건이 성사된 것이 있나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어떤 건가요?

○**증인 이화영** 제 주변 모든 수사가 다 스톱됐었고요. 주변 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부분들이 다 스톱됐었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별건수사 하는 것도 다 스톱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진술을 번복한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시 다 살아나 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이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증인은 검찰청에서 안부수 딸 안소연 씨를 본 적이 있나요?

○**증인 이화영** 저는 그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본 적은 없는가요?

○**증인 이화영** 예.

○**전현희 위원** 수원지검이랑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지금 증인이 얘기한 회유나 진술 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보셨지요?

○**증인 이화영** 언제 말씀이십니까?

○**전현희 위원** 6월 20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9월 23일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좀 자료를 받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포함한 술자리를 한 날을 특정하기 위해서 저와 김성태, 방용철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출정한 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쌍방울의 박상웅이라든가 박상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날 그 사람들이 검찰청에 출입한 기록, 몇 월 며칠 날 검찰청에 왔는지 그리고 쌍방울에서…… 아마 그때도 그 음식을 쌍방울 돈으로 계속 샀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쌍방울이 썼었던 카드의 내역 이런 부분들만 충실히 조사가 되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쉽게 특정할 수도 있고, 제가 주장하는 정황들은 다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그것을 계속 은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런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수 씨 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저도 며칠 전에 재판에서 현출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정황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구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부수 씨가 자기 딸에게 ‘내가 검찰하고 딜을 했어. 나 보석으로 내보내 준대’, 저도 똑같이 얘기 받았던 겁니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다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 딸에게 집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저도 똑같이 제안받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안부수 씨 딸이 봤었던 것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 정청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증인 이화영 쌍방울 직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 그런 얘기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다 목격했었던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지요.

○전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작년 7월 12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이화영 증인과 김형태 변호사 간에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해서 대화 앞부분은 발췌해서 이미 보도를 했고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지요. 이화영 증인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뒷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이화영 증인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 봐 걱정하고 멀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먼저 걱정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김형태 변호사에게 걱정을 하면서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추가 폭로하겠다는 다른 내용도 걱정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지요. 그러자 이화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17시16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7시18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이것은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화영 증인이 직접 써서 낸 비망록 같은 데 보니까 메모에도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화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본인과 김형태 변호사 간 대화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먼저 제가.....

○주진우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증인 이화영 제 목소리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

○증인 이화영 맞아요.

○주진우 위원 본인 목소리 맞지요?

○증인 이화영 예, 맞아요.

○주진우 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거짓 폭로로 보기 어려워요.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이걸 생으로 지어내서 거짓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많은 장면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광장 조직에 돈이 간 게 없다면 이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이 돼서 변호인이랑 상의하냐 이런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이화영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증인 이화영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주진우 위원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보받았어요.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받았습니다.

○증인 이화영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 주진우 위원** 녹음파일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 증인 이화영**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 있어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길 이것을 법정에 냈대요.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 유상범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 주진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 가만 계십니까?
- 유상범 위원** 이것 가만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 위원님들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 주진우 위원** 오마이뉴스도 들고 있는데 제가 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오마이뉴스에는 누가 줬습니까, 본인이 줬습니까?
- 증인 이화영** 그러면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개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청문회에서……
- 주진우 위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 유상범 위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지!
- 위원장 정청래** 들어 보세요.
- 유상범 위원** 들어 볼 게 뭐 있어요? 지금 자료 어디서 받았나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데.
- 증인 이화영** 그리고 주 위원님, 저 녹취록을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 주진우 위원** 본인이 공개하십시오, 본인 녹취잖아요.
- 증인 이화영** 저렇게 부분만 짜깁기해 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 주진우 위원** 본인이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증인 이화영**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 주진우 위원** 이거 지금 제지 안 하십니까? 이거 제지 안 하세요?
- 유상범 위원** 이거 가만둘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 보자고요!  
얘기하세요.
- 증인 이화영** 저 상황은 제가 김형태 변호사님하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회유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태 씨가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해 가지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한다……
- 주진우 위원** 진짜 두려워하잖아요. 본인이 진짜 두려워하는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 증인 이화영** 허, 참……
- 주진우 위원** 지금 왜 답변을 안 끊으십니까, 제 질의시간 끝났는데?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제가 지금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 주진우 위원** 다른 사람이 질의할 때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하세요.

○증인 이화영 그래서 김성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예를 들면 대북송금 같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쭉 적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저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태의 황당한 거짓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을 때 자기가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로비를 했고 자기가 대법원 판사들한테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찰이 진짜 이런 것들을 믿나……

○주진우 위원 그러면 뭐가 두려우세요? 두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두려우셨어요?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은 발언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계속하세요.

(장내 소란)

발언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어차피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화영 증인의 발언만 들리니까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발언하세요.

○증인 이화영 그래서 변호사님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왜 검찰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딜을 했는가의 정황을 쭉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딴 것 보면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이 다, 그런 정황이 나오고……

○주진우 위원 다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증인 이화영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허구입니다, 허위 진술이고.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주진우 위원 전부 다 공개하세요. 저는 일부밖에 없으니까 다 공개하세요.

○증인 이화영 말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요.

○주진우 위원 아니, 제 질의시간인데 본인 발언하는 거는…… 제 질의시간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은 발언시간이 끝났고요, 위원장이 지금 추가로 발언을 허가한 거예요.

○주진우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질의할 때 하세요. 왜 제 질의 답변에 이걸 계속 듣고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 지금 반말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내가 반말하는 거예요?

○이건태 위원 아니,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송석준 위원 공정하게 하라고, 공정하게!

○위원장 정청래 발언하세요.

○증인 이화영 지금 막 변호인께서 법원에 제출한 이 녹취록을 갖고 오셨네요.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그러면 다 같이 검토해 보시지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저 발언도 가져오세요, 행정실 직원들. 복사해서 다 돌리세요.

○증인 이화영 그리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저도 몰랐던 녹취록이고 저도 이 자리 와서 지금 변호인들한테 처음 듣는데, 제가 들어 보기에는 우리 변호사분들이 휴일이 있어 가지고 법원에 증거로 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벌써 주진우 위원님 손에 가 있지요?

○주진우 위원 오마이뉴스에는 어떻게 갔어요?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쳤습니까?

○증인 이화영 저는 뭐……

○위원장 정청래 이화영 증인도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권 드리지 않았고요.

(장내 소란)

민주당 위원님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발언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세요. 하세요. 계속하세요.

○주진우 위원 녹음 원본 주십시오, 전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계속하시라고.

○박준태 위원 조롱하듯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의 지켜 가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안 드렸는데 계속하니까 계속하시라고. 발언하세요.

○박준태 위원 아니,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랑 위원들 간에 이런 필요한 얘기도 못 합니까?

○유상범 위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도 좀 충격받으신 모양이네, 저거 트니까. 화부터 내셔.

○박은정 위원 별 내용도 아니구먼요, 뭘.

○송석준 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정청래 계속하세요.

○곽규택 위원 안 들려도 돼요. 국민들 못 들어도 돼요.

○위원장 정청래 계속하세요. 계속하시고 싶잖아요. 계속 떠드세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는 꺼져 있지만……

○이건태 위원 교도관님,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녹취록을 제출하니까 교도관이 가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유상범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요, 당사자가 제출하는 거니까. 그건 검열을 해야지요.

○증인 이화영 변호사가 제출한 겁니다. 제가 제출한 거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변호사가 제출했는데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기 서 보세요! 왜 가져가요? 뭔데 압수를 해 가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본인이 냈으니 그렇지요, 본인이. 변호사가 어떻게 냈는데? 본인이 받아서 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김승원 위원 변호인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왜 교도관이 검열합니까? 법원에다가 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유상범 위원 그러나 어쨌든 수감 중인 사람이잖아요. 그건 검증을 받아야지.

○장경태 위원 위원장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료를 그냥 가져가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이 그쪽 발언권 안 줬어요.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장경태 위원 마이크 꺼져 있으니까 마음껏 얘기하시라고 하잖아요. 마음껏 하세요, 그냥.

○송석준 위원 우리한테 발언권 넘겼으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만히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그리고 편파를 넘어서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발언권 정지까지 시켰어요, 오늘.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 오버를 많이 하고 한참 시간을 어겨도 발언권 정지시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편파적이고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서 더 이상 지속됐다가는 아마, 위원장님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도된 효과가 있겠지만 정반대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겁니다. 자중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증인 발언을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해야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오버해서 하고 그걸 또 허용해 주시고, 이게 너무나 불공평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예의를 벗어나는 그런 발언까지 지금 증인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제지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거 누군가는 녹취하겠지요. 정말 제대로 좀 공정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제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강력히 간곡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곽규택 위원 예전에 증인이 저렇게 나왔으면 퇴장시켰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오늘 그렇지 않잖아요.

○김승원 위원 아니, 자기 목소리 나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지금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떠드는 거 제가 어디까지 떠드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떠드는 게 아니고 발언하는 거예요, 발언. 예의를 지키셔야지.

○박준태 위원 말씀을 가려서 하세요. 뭘 떠듭니까?

○위원장 정청래 계속 발언하세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박준태 위원 아니, 우리 당 위원들처럼 이렇게 예의 지켜 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힘한 얘기 나와도 듣고 넘어가고 우리가 항의할 때도 예의 지켜서 항의하고요.

증인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는데 본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본인 필요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하려나 보다 하고 계속 참아 왔는데 어디 위원한테 그거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세우고 그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까?

○곽규택 위원 박지원 위원님, 이럴 때 한 팔 들고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러시는 게 아니고.

○박지원 위원 발언권 없어.

○**곽규택 위원** 안 들린대요, 마이크에서.

○**박지원 위원** 낄끼빠빠야.

○**박준태 위원** 헌번이 높은 국회 선배님이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셔도요. 오히려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모양새도 더 보기 좋아요.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얘기하실 분 없습니까?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정청래** 좀 이따. 지금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더 떠드시라고.

○**유상범 위원** 떠든다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떠든다는 말은 국어 표준말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유상범 위원** 그러나 표준말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송석준 위원** 표준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정청래 위원장님 떠들지 말라고 저희들이 또 말씀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계속해 보세요. 할 때까지 해 보세요.

○**조배숙 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헌법기관인데 서로 예의를 지켜 가면서 해야지요. 너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계속해 보세요.

○**조배숙 위원** 그리고 마이크를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 드리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마이크를 안 주시면서 떠들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 안 준 상태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보시라고요.

없습니까?

○**송석준 위원** 하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해 보세요,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들 앞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 본인 목소리는 들리게 하고 우리는 목 터지게 떠들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게 하고. 지금 뭐 장난 노는 겁니까, 정청래 위원장님?

발언권, 마이크 켜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계속 더 얘기하실 분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까?

앞으로 발언권 드리지 않으면 지금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없습니까?

○**송석준 위원** 지금 장난 노는 겁니까?

○**박준태 위원** 이렇게 여당 위원들 다 모욕하고 본인만 대접받으려고 하고…… 말이 돼요, 이게?

○**송석준 위원** 국민들 지켜보시는데 지금 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개그맨

콘서트장도 아니고?

○**곽규택 위원** 마이크 켜고 혼자 하세요.

○**유상범 위원** 굳이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하루이틀도 아니고.

○**조배숙 위원**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정청래** 충분하게 떠드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떠들 기회라니요? 그렇게 비꼬듯이 얘기하고, 같은 말이라도 발언이 있고 떠드는 얘기가 있는데……

○**위원장 정청래** 지금 떠드는 겁니다, 발언하시는 게 아니라.

○**송석준 위원** 본인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반성 좀 하세요, 우리 잠깐 나갔다 오는 동안에. 반성하세요.

○**이건태 위원** 반성 좀 하고 오세요.

○**박은정 위원** 들어오실 거 왜 나가세요?

.....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떠드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 이화영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이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북송금의 목적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그 근거까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대북송금 사건의 목적을 쌍방울 주가 부양에서 이재명 방북 추진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성태 회장의 주장대로 또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800만 불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정상 아닙니까?

○**증인 이화영** 그러겠지요.

○**박균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또 검찰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로 식사 한번 같이 못 했고 만남도 갖지를 못 했고 전화 통화도 직접 하지 못 했고.

지인 등이 바꿔 주는 간접 통화를 한 적이 있나 없나,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화영** 저는 참고로 이재명 지사님한테 김성태와 전화 통화를 한 번도 연결해 준 적이 없고요.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장……

○**증인 이화영** 만나게 주선한 적도 없고. 어느 날 김성태 씨가 저에게 자랑하기를 이태형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지사님하고 통화를 했다, 술자리에서, 그런 유의 자랑을 한번 하기에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재명 지사님한테 제가 부지사로서 그렇게 술자리에서 타인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화영**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증인은 혹시 그거 아십니까? 김성태 회장이 코로나 사태 때 경기도를 위해서 마스크를 기부하려고 했다가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조폭 출신이고 평판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수령을 거부해 버렸던 것,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할 이유도 없지만 쓴 관계가 아니다. 돈을 썼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이게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주었다는 그 삼류 소설, 이걸 왜 검찰이 썼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보기에는, 창작 배경이 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방북 비용을 요구했던 것은 2019년 5월입니다. 그리고 송명철에게 200만 불을 주었다는 그 첫 시점이 2019년 12월입니다. 일곱 달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인 2019년 9월 달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 몇 달 후에 당선무효가 돼서 곧 날아갈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북한에 거액의 돈을 대납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 전에 돈을 주기 시작했어야 검찰의 또 김성태의 소설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달 마닐라 송금 사건, 그 소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인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예.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기록 한 사오만 쪽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안 해도 되는데. 2019년 7월에 행사를 했을 때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한테 줬다고 하면 되는데 왜 리호남을 뜯금없이 등장시켰을까 했는데 나머지 네 번의 돈을 줬을 때 송명철 부실장은 돈을 받을 때마다 자필 영수증을 써 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줬던 70만 불은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리호남을 등장시켜야 됐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돈을 200만 달리를 주는데 그 앞단에서 돈을 안 줬다고 하면, 약속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돈을 줬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당장 방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필리핀의 리호남이라는 유령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이 가장 깔끔하게 시간 안에 정확하게 마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엄용수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계약서 가지고 쳐분문서다 이런 여러 말씀 하셨잖아요, 조 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화영 증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엄용수 예.

○장동혁 위원 그리고 법원에서 낸 보도자료에 보면 양형 이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에 대한 양형 이유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음.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성이 높음’, 결국은 1심 판결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것이 쌍방울의 사업과 관련돼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방북과 관련돼서 지급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됐고요.

판결 이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한 후에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투자설명회 자료에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라고 기재할 수 없어 쌍방울 계약금이라고 썼다는 취지로 작성 경위를 명확히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맞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나오신 김에 더 여쭤볼게요.

지금 비서실장이시니까, 쌍방울에서 검찰에서 조사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어나 술이나 이런 것을 사서 검찰청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엄용수 저희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것은 다 검찰이 지켜보고 있고 저희들의 조그마한 돈이라도 자금의 흐름은 국세청이라든가 거래소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저희가 회사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엄용수 증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청한 증인인데요. 보통은 오후에라도 나오면 대부분의 증인들이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핀잔을 들은 유일한 증인으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 내용을 보면 아마 이화영 증인에 대한 1심 재판을 축소해 놓은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회유·협박에 대한 내용도, 이것은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사업권 관련된 돈이었다는 내용도 다 법정에서 나왔었고 충분히 심리를 했고 법원은 그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왔던 내용과 달리 새롭게 나온 내용도 없고 새롭게 들어야 될 내용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나온 새로운 사실이라면 아까 녹취록에서 나타났던 정치자금 관련된 내용만이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청문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엄용수 증인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화영 증인에 대한 관계 관련해서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화영 증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에 증거인멸 교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 중에는, 그 자료 중에는 이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증인 엄용수**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상당 부분이 그 증거와 관련된 것이다?

○**증인 엄용수**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룹의 십수 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이유가 거의 다 증거인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위원** 그런데 그 증거 중의 상당 부분이 대북송금 관련된 것이다?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 청문회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요 이 청문회가 누구를 위해서 왜 열리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초를 아끼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현재 스코어 박군택·장동혁 위원님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중간중간에 좀……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주세요. 주기로 했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계속 의사진행발언하면 시끄러워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신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이렇게 안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신문하세요.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제가 질문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님!

○**증인 이화영** 예.

○**박지원 위원**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국정원에서 많은 자료를 검찰에 냈고 검찰은 재판부에 냈는데 왜 재판부에서는 국정원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증인 이화영** 아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증거로는 채택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증인 이화영 예.

○박지원 위원 그 내용이 뭐, 뭐가 안 됐는지 기억하세요?

○증인 이화영 예를 들면 아까 쭉 적시됐었던 것처럼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었더라면 안부수가 어떤 역할을 했다든가 또 제가 그와 관련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에 굉장히 많이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문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수차례 법정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안부수 씨가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가지고 자기가 북한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김성혜한테 현금 500만 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이 설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설시된 것조차도 상당히 저는 좀 의심이 들고, 그게 있어야 될 정황이 전혀 없는 것인데. 안부수라는 사람이 쌍방울하고 대북사업 관련돼서 금전적 거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국정원에 은폐하기 위해서 저를 갖다 넣은 것인지 어떤 경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지원 위원 안부수 씨에 대해서는 신뢰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국정원에서도 우리가 그분은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장 할 때도 사업 신청을 하면 다 배제를 했어요.

봉지욱 기자님, 취재 과정에서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 지금 현재 김성혜 통전부 실장이지요? 저하고도 잘 알아요, 김성혜 씨는. 500만 불 줬다고 하는 것은 인용했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일단은 국정원 블랙요원이 작년 6월과 7월 그리고 지난달 법정에 두 차례씩 나와서 총 네 차례 증언을 했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말씀하신 부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대납 그 부분은 안부수가 그냥 말한 전언을 적은 것이고, 그냥 적으면 이것은 사실 칩보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거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성혜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통일전선부가 곧 있을 북·미회담의 거마비,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안부수 협조자에게 김성혜를 만나면 물어볼 것, 김성혜가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질문과 가장 답변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임무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달도 그 블랙요원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국정원 문건의 보고서에 있는 그것은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고 판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한 말씀 좀 드리면 조금 전에, 염용수 비서실장은 제가 취재 과정에서도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약간 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보면 2019년 7월, 저분이 비서실장이 되신 게 2019년 5월이에요. 그때까지는 스마트팜이 뭔지도 몰랐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북남협력사업 제안서를 만들 때

서브 역할을 했고 그 제안서를 만든 것은 당시 미래전략실의 김형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위치였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모른다고 하다가 검사가 ‘그 50억이 혹시 스마트팜 비용 아니에요?’라고 물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또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주가 부양이 목적이라고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북한과 사업계획서를 체결할 때 동영상을 찍은 것, 전문 촬영팀을 데리고 가서 영상을 찍은 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 퍼트려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본인이 다 진술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던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이건 위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필리핀 현지에도 나타나지 않은 리호남을 해서 70만 달러를 주고 김성태한테 500만 달러 나중에 3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도망쳤다가 외국에서 잡혀 들어오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참고인 봉지욱** 예. 2022년 11월 달 언론 보도를 보시면 김성태 회장이 도피 중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는 데가 필리핀 마닐라의 오키다 호텔이라는 곳인데 실제로 거기는 카지노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여기서 환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갖고 갔다면 김성태 회장의 개인적인 비자금 저수지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돈을 마련해서 필리핀으로 보냈는지 검찰이 수사했느냐, 수사 기록에 그런 게 없습니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줬는지 단 하나도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제삼자 뇌물이든 뭐든 뇌물이라고 그런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뇌물 사건 치고는 이렇게 엉성한 수사를 해 놓고 1심 판결에서 이것을 그냥 김성태의 말만 믿고 다 판결해 버렸다.

만약에 김성태의 말이 진실이라면, 지난 대선 당시에 쌍방울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커고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아까 그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녹음 파일에 나오기도 했고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참고인 봉지욱** 그렇습니다. 김성태의 말을 취사선택해서 믿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제 말은.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지금 엄용수 증인의 이전 발언에 대해서 봉지욱 참고인이 위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용수 증인이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손을 드셨지요?

봉지욱 참고인 잠깐 마이크로 나와 주시고. 잠깐 둘이, 이게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거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엄용수 증인 일어나 주세요.

봉지욱 참고인, 짧막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위증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일단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 대북사업의 목적을 변호사가, 이화영 측 변호인이 물었을 때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지요?

○**위원장 정청래** 말씀하세요.

○**증인 엄용수** 지금 봉지욱 기자님께서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주가조작을 위해서 제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당시 7월 달에 있었던 마닐라 대회 이후로……

○**위원장 정청래** 엄용수 증인!

○**증인 엄용수** 예.

○**위원장 정청래** 짧게 짧게 끊어서 갈게요.

○**증인 엄용수** 전체적인 제 증언 자료를 보면……

○**위원장 정청래** 짧게 짧게 답변을, 발언 기회 충분히 드릴게요.

○**증인 엄용수** 예.

○**위원장 정청래**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세요. 지금 얘기한 부분에……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참고인 봉지욱**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난번 채 상병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증인과 참고인을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간에 대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둘이 상대방이 대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내 질의시간에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저한테 발언권을 신청했어요.

엄용수 증인!

○**증인 엄용수** 예.

○**위원장 정청래**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억울하니까 손을 든 거 아니에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거를 짧게 얘기하시라고.

○**증인 엄용수** 저는 저런 취지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됐습니다.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데 본인이 그러면 저 발언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박준태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참고인 봉지욱** 엄용수 비서실장은 2023년 7월 4일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측 변호인이 ‘주가 부양을 염두에 두고 안부수를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영입한 것이나?’라고 묻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N활성화’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안부수나 뒤에 계신 김형기 차관 등을 영입했을 때 댓글 작업을 하자 하는데 본인이 같이 작업을 했던 분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됐습니다.

엄용수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증인 엄용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제 증언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봉지욱 참고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요. 반박하시라고요.

○증인 엄용수 아니, 그렇게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봉지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거를 주가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정청래 본인이 그런 증언을 법정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저는 500만 불이 주가조작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참고인 봉지욱 아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주가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500만 불의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 50억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500만 불이 50 억인 것 같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도 이분이 하신 법정 증언서와 검찰 진술서를 쭉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을 했을까 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동영상 전문 촬영팀을 대동해서 돈을 주고 그걸 찍은 것은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검찰 진술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직접 묻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용수 증인,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증인 엄용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증언 내용만 발췌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봉 기자님이 저한테 6월 4일 날 오후 12시 47분, 오후 6시 42분 두 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한 통 딱 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시지요’라고 끊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제보자 김형수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면 ‘봉지욱 기자님한테 협조를 잘해라. 안하면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하고 쌍방울그룹을 초토화시킬 거다’. 그래서 자기도 겹이 나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았고요.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반박하세요.

○참고인 봉지욱 당연히 저는 반론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고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저 반대입니다. 본인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 그런 것들을 김성태 회장이 알고 굉장히

많이 고초를 겪었다고 알고 있고, 본인이 회사를 뜯기고 싶지만 지금 갈 테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오후에 나오신 걸 보니까 회사의 지시를 받았겠구나. 그렇다면 그 회사의……

○**증인 엄용수** 위원님, 제가 검찰 조사…… 전화를 받았으면……

○**위원장 정청래** 엄용수 증인, 잠깐만요.

마저 말하세요.

○**참고인 봉지욱** 회사나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한테 그러면 누가 지시를 했을까라는 추론은 당연히 드는 것인데 기자가 그 기사를 쓸 때, 이분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물론 실명 기사는 안 썼지만 반론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저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증명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화했던 분이 제 제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본인들이 지금 오고 가면서 서로 주장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증인 1분 발언하세요.

○**증인 엄용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봉지욱 기자님이 어떠한 면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협조를 안 해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앞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아는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여기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누구를 두둔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1분 발언하세요.

○**참고인 봉지욱** 어떤 부분이 위증이었는지 검찰 진술기록 그리고 법원 증언 녹취서를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상입니까?

○**참고인 봉지욱** 예.

○**위원장 정청래** 두 분 앉아 주세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봉지욱 참고인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참고인이 이 유죄 판결의 기초를 흔드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취재를 하신 것으로 그리고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판결의 기초는 뭐냐 하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아까 삼인성호 말씀드렸다시피 3인의 증언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건 유죄다, 전반적인 판결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 취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특히나 3인의 진술세 미나 부분을 취재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제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8일 그날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들, 박상웅 이사, 김형수 본

부장 그리고 박상민 비서 등, 아마 엄용수 씨도 그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날 안부수 회장과 안부수 회장의 딸이 검찰청에서 면회한 날 모두 다 같이 만난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법무부에서 재판부에 출정기록을 제출했을 때 작년 3월 18일을 뺏더군요. 작년 3월 18일에는 검찰 수사기록……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대질신문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 날짜로 작성된 대질조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 진술세미나를 했다고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이유는 3월 18일에는 조서가 없는데 3월 19일과 20일 자에 대질신문조서가 각각 하나씩 총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그런 회한한 대질신문조서는 처음 봤습니다. 대질이라는 것은 통상 공범 관계에서 서로 간의 얘기가, 주장이 다를 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비교해 보려고 검사가 하는 것인데 다섯 명이 나와요. 그날 김성태, 방용철, 채수용, 안부수 등등 해서 다섯 명이 나오는데 김성태 회장이 잘 모르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머지 멤버들이 채워 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볼 때는……

○박은정 위원 그게 진술세미나지요?

○참고인 봉지욱 예. 3월 19일과 20일에 어느 정도 1차 진술 훈련……

○박은정 위원 세미나가.

○참고인 봉지욱 결과가 끝났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5월부터는 아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런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진술세미나 관련해서 안부수 딸의 카톡 내용 좀 옮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참고인이 취재해서 기사화한 내용들이거든요. ‘아빠가 검찰과 합의했어. 쌍방울 관계자끼리는 다 합을 맞췄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이 그 후에 안부수 딸에게 쌍방울에서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부분도…… 그러니까 중인 매수지요, 매수, 진술을 바꿔 주고. 그 후로 실제로 안부수 씨가 진술을 바꾸거든요, 처음 진술과 달리.

오피스텔 매수해 줬다는 그 과정 취재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고인 봉지욱 지금 저 카카오톡 날짜가 2023년 2월 17일인데 안부수 씨의 딸이 아버지의 전 비서에게 전화해서, 8시 40분쯤 30분쯤 됐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8시 40분, 30분 전에 출정을 간 것 같지도 않은데 딸에게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찰하고 보석으로 합의 봤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딸은 걱정을 해요. ‘아버지 진술 바꾸면 안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그대로 진술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아니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하고 또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검찰에서 돌려받은 폰을 쌍방울에 주기로 했어’.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3월 19일에 쌍방울 측에서 딸을 만나서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

○박은정 위원 쌍방울 측에서요, 안부수의 휴대폰을? 왜 가져갔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카카오톡에서는 그렇게 내려와요. 자기들이 혹시나…… 거기 보면 ‘폰에서 아빠에게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서의 말로는 폰에서 혹시나 자기들이 맞춘 진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올까 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증언이 있었고요.

○박은정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쌍방울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그러니까 쌍방울 관계자들 간의 진술세미나에 이은 진술을 다 바꾸게 하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되는 이것을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명은 진술이 다 똑같으니까요, 세미나를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 판결은, 이 진술은 세미나에 기초한 진술로 보여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참고인 봉지욱** 왜냐하면 저 당시에 저 세미나에 참석했던 쌍방울 임원이 저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같이 있었고, 안부수의 딸도 있었고 안부수도 있었고 모두 다 모여 있었다, 1313호실 옆에 유리방으로 된 영상녹화실에 모여 있었고 교도관들은 밖에서 세 명이 앉아 있었다.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안부수 회장의 판결에서는 이게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했다고 분명히 적시가,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화영 1심 판결문, 판사의 논리대로 안부수 회장한테 적용을 하면 안부수 회장의 혐의 중에 대북송금,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 그런데 이화영의 1심 판사는 안부수가 북한에 쳤던 5억 원은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뺏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이 판사가 하면 안부수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같은 사건에서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왜 그렇게 기소하고 검찰이 얼마나 부당하게 잘못 재판을 했는지 이파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경태·박준태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엄용수 증인,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증인 엄용수** 예.

○**장경태 위원** 방금 발언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증인 엄용수** 예.

○**장경태 위원** 2019년 5월에 비서실장에 취임하십니까?

○**증인 엄용수**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그럼 언제 하셨지요?

○**증인 엄용수** 2월에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2월에 하셨지요?

○**증인 엄용수**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북사업의 대 자도 몰랐다. 대북사업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주가조작을 할 거였으면 500만 불 가지고 우리가 하지 왜 보내겠습니까? 오해하고 계시다, 다들’ 이렇게 쓰셨지요?

○**증인 엄용수**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2019년 2월 이전에는 쌍방울 관련 대북사업 몰랐다는 얘기신가요?

○증인 엄용수 예,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북사업에 대해서.

○장경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엄용수 잘 안 보입니다.

○장경태 위원 엄용수 PC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는 서류입니다. 엄용수, 방용철, 김형수, 장석환, 박철준, 송진아 대화 내용. 2018년 12월 26일 자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 12월 27일, 28일 이 당시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의 임원진들이 남북경제 협력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기록서고요. ‘피의자 방용철은 위 자료가 회장님, 즉 김성태에 보고할 자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인데 전혀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 N프로젝트가 대북사업의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서 대우건설 인수하려고까지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2018년 12월 27일 날 카톡이 다 있고 언제 초대돼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 기록 로그기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18년 12월에 이 단톡방에서 다 논의하여 놓고 왜 모르신다고 빨 JpaRepository?

○증인 엄용수 아니, 아까……

○장경태 위원 두 장짜리 투 폐이퍼로 다 보고하셨잖아요, 회장님한테, 2018년 12월에 그런 거 아니에요?

○증인 엄용수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왜 대북사업의 대 자도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증인 엄용수 위원님께서 아까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장경태 위원 맨날 오해라고 하지 마시고요!

○증인 엄용수 아니, 위원님……

○장경태 위원 대북사업의 대 자도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대북사업에 대한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증인 엄용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경태 위원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증인 엄용수 2018년도 12월 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대북사업의 대 자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 N프로젝트라는 걸 사업제안서를 쓸 때는……

○장경태 위원 방금 명확하게 위증하신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상범 위원 답변을 좀 들어 봐요.

○조배숙 위원 좀 들어나 봐요.

○장경태 위원 아셨는데 몰랐다고, 대 자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아요.

○증인 엄용수 그러니까 시기가요, 위원님……

○장경태 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다른 분한테, 김광민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이따가 발언권 신청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 엄용수 아니,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장경태 위원 제 질의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지금 거짓말하시니까.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아니, 장경태 위원님 질의하는데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듣고 계세요. 불만이 있으면 다음 발언, 자기 발언 시간에 하시고요. 왜 자꾸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감탄사를 냅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장경태 위원 본인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박한 거예요,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본인은 지금 자꾸 오해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유상범 위원 답변을 듣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증인 엄용수 아니 위원님, 2018년도 12월 이전에는 대북사업의 대 자도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발언권……

○위원장 정청래 잠깐 조용히 있으라고요!

엄용수 증인!

○증인 엄용수 예.

○장경태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증인 엄용수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 위원 아니, 제가 답변……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증인 엄용수 아니 위원님, 제가 뭐 잘못해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에?

○장경태 위원 기회를 받으셔서 하라고요.

○증인 엄용수 저는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왔는데……

○위원장 정청래 엄용수 증인!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하라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장경태 위원 위증하셔 놓고 뭐가 떳떳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도 조용히 하시고요.

○증인 엄용수 아니, 제가 뭘 위증했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자, 조용히 하시고요.

엄용수 증인, 지금은 회의 진행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셔도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님들은 비웃듯이 감탄사 내지 마세요.

○증인 엄용수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제 발언이 시작되면 답변하시고 끝나고 나서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저한테 발언권 신청하세요.

○증인 엄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엄용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저 시간 좀 더 주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고 제가 답변 들을 만큼 답변 받고 나서 다른 분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꾸 발언을 중단시키시잖아요. 그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쌍방울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방북 비용과 여러 가지 대납을 했다 이런 식으로 800만 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으로 기소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이나 특가법상 국외 재산 유출로 기소돼야 될 사안입니까?

○증인 김광민 국가보안법이나 국외 재산 도피가.....

○장경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국가보안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국외 재산 유출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증인 김광민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은 3년 이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 한 것 아닙니까, 봐주기 기소?

○증인 김광민 명확한 봐주기 수사.....

○장경태 위원 기소독점권을 악용해서.

○증인 김광민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결국 수사를 조작하고 회유해서 봐주기 기소 한 거네요?

○증인 김광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1심 판결문 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3명의 수사 조작과 회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방금 제가 옥상 파티까지 보여 드렸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까지 합석해서 조작하고 있는, 조작에 합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국정원 문서와 검찰의 수사기록 등이 분명히 증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수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김태균 회의록을 전적으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김광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김태균에 대해서는 해외 헤지펀드 전문가라고 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김성태와 한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신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김태균 발언의 신뢰성을 사법부에서 인정한 것은 IR 자료를 김태균이 직접 만들었고 이 자료를 가지고 해외 헤지펀드들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오늘 엄용수 비서실장은 그 자료를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경태 위원 그러면 위증이지요?

○증인 김광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경태 위원 확인해 봐야겠지만.

○증인 김광민 예. 틀리다면 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심에서 저희 변호인단이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매우 제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출정기록들, 출정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이 진술세미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에 대해서 1심에서도 저희 변호인단이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원구치소와 검찰이 모두 협조하지 않았고, 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심 재판부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판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올라와서, 항소심에 올라와서야 해당 자료를 얻게 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정말 범죄의 핵심적 자료 없이, 핵심적 자료조차 없이 그걸, 그리고 국가기관의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증인 김광민 심지어……

○장경태 위원 구치소 출정기록도 없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증인 김광민 심지어 재판부가 제출명령을 내렸고요. 제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판결이 났습니다.

○장경태 위원 무슨 판사가 존심도 없이……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을 내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답변까지만 듣게 해 주십시오, 연속된 질문이기 때문에. 1심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그것 짧게 하세요.

○증인 김광민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소송지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 마지막으로 박준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화영 증인한테 감정 이입이 돼서 그런 건지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야속합니다. 36년 동안 당인으로 살아온 동지를 사지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지사였던 증인이 모든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징역 일이 년도 아니고 9년 6개월이나 받은 분한테 더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얼마나 가혹한 겁니까?

저도 증인께 묻고 싶은 말이 많고 지금 당시 속기록도 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더 책임이 커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하나 다 쏟아 내면 잠시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 뒷감당 누가 합니까? 증인 본인의 위증, 법적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차 본질의에서 이화영 증인의 말을 재정리해 보면 먼저 본인은 검사 측과 모종의 교감을 통해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러 민주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을 바꿀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거짓 진술, 위증했다는 자백입니다. 법원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시도인 거지요. 반대로 이 말씀도 거짓말이라면 국회에서의 위증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증인의 법적 책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증인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해서 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재판받다가 이 대표가 위기에 빠지자 반성하고 말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본인 빠져나가려고 이재명 대표한테 다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증인한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거짓말하고 시쳇말로 뒤통수쳤으면 비판하고 압박해야 되는데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잘해 주고 있잖아요?

대북송금 사건 이것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외화 밀반출 다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한 사건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수십억을 북측에 대납하도록 하는 중대사안을 어떻게 도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시행이 실제로 되게 했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엄용수 증인, 추가조작 하려면 저희가 하지 왜 그 큰 돈을 보내겠냐, 추가조작 하려고 돈 보낸 것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결국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돈을 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은 이해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화영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지사가 몰랐으면 이화영 증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생각이 잘 정리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화영 증인께서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본인 뜻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의리를

지쳤다 이런 것은 선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본인이 혼자 책임을 지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실익도 없고 모두에게 다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증인 이화영 예.

○이성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 군사정권은 윤석열 검찰정권과 너무나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은 과거의 일제강점기 사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군사정권 때는 총과 탱크로 국민들을 위협했다면 또 고문과 폭행으로, 가혹행위로, 잠 안 재우기로 진술을 받아 냈다면 윤석열 사단이 중심이 된 윤석열 검찰정권은 각종 희유와 협박, 피의사실 공표, 영장, 범기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내고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정말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무너졌듯이 윤석열 검찰정권도 결국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수사 방식의 무도함, 망나니 칼춤 추듯이 하는 수사의 무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지적하던 중에 검찰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2019년 울산지검에서의 음주 추태 행위를 제가 고발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범인이 바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거기에서 술 파티를, 연어 파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제보가 온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특활비로 구입한 술 파티가 있었고 음주 추태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 내에서 이런 소문이 퍼져 나가자 박상용 검사가 범인이라고 지목이 됐고 그러자 그 검사는 자기가, 박상용은 카카오톡에 ‘제가 아니에요’라고 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범인이라는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소문이 검찰 내부에서 도는 거라면 대검 감찰이든 고검 감찰이든 감찰 시스템에 의해서 감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는 징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감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명백히 조사해서 진상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고, 아니면 공수처장이 수사를 해서 저희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감찰 자료는 감찰 자료이기 때문에 못 준다, 특활비 사용 내역은 기밀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자 대검에서 박상용 검사의 입장이 올라왔습니

다. 그러자 검사들이 다음과 같이 글을 올립니다. 어떤 검사는 제가 이렇게 법사위에 문제 제기하는 것 가지고 악행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법의 수호자인 검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무와 관련된 일이니까 대검과 법무부에서 직접 그 사실을 천명해 달라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어찌하여 김건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는 검사들이 떼를 지어서 덤빕니다.

윤석열 검찰정권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은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사유화되고 자기 편은 수사하지 않고 주야장천 상대방만 수사하는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디 무서워서 문제 제기 하나 못 하는데 법사위원인 저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고, 검찰의 감찰시스템 마비라든가 제 식구 감싸기, 검찰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서 영장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상용 검사가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에 그 수사관의 신체, 사무실, 집을 압수수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관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타 부서로 옮겨지고 또 하필이면 그날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대검 홈페이지에 이를 진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박상용 검사는 수사관을 불러 오히려 ‘이런 일로 진정 까지 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압수수색을 잘못해 놓고도 그것을 항의하는 검사에 대해서, 글을 올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난처하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 도저히 검찰공무원으로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해당 수사관은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 부서에서 좌천되어 사실상 인사상 큰 불이익을 받았고 또 주거지가 압수수색 되어 유방암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정말 검찰이 무고한 국민을 기소해 놓고, 범죄자로 찍어 놓고, 몇 년이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일반 국민은 소송할 생각조차 못 하는데 검사들은 자기들을 법사위에서 문제 삼았다고 떼를 지어 집단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권한을 갖고 문제 제기하고 탄핵을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검찰을 탄핵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는 검찰이 왜 필요한지, 오만하고 무도한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답이고 특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장입니다. 이성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검사가 진술을 조작하고 그리고 피의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러면 검사입니까? 헌법 위반이고 검찰청법 위반이고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이런 검사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낱낱이 보고해서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성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프로필은 내가 만든 프로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상용 검사 자기가 카톡 프로필에 올린 프로필이에요. 이것 세상에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성윤 위원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울산지검에서 특활비로 회식하면서 있었던 일, 왜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하지 않는 거지요? 그 검사들은 다 공범인 겁니다. 저는 검사가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측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고인처럼 불려 갔고 조사를 일곱 차례, 여덟 차례 받았는데 그곳에 가 보니 쌍방울 관련한 임원들이 거의 다 있었다’, 이렇게 하는 증언이 봉지속 기자의 보도로 나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증인 이화영 이 보도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쌍방울 직원들이 거의 수원지검에 출근하듯이 와 있었던 건 저도 매번 확인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국민 앞에 떳떳이, 낱낱이 다 밝혀내신 겁니다. 어떻게 쌍방울 직원들이 검사실에 와서 상주하고 있고 연어 가지고 오고 술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잘 보이는 작업 하고.

그리고 공범들끼리 나간 횟수만 제가 세 봤더니—1월부터 7월까지만이에요—여든여섯 번입니다, 여든여섯 번. 그리고 검사가 제대로 수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까?

○증인 이화영 그 술자리 사건 날도 만약에 수원지검에서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 출입한 검찰 출입기록, 수원지검에 민간인들이 방문한 기록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날짜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안부수가 입장을 바꿨어요. 진술을 바꿨어요. 그렇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안부수가 진술을 바꿨는데 진술 바꾸는 과정에 안부수의 딸에게 김성태가 집을 구해 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집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집을 구해 줬고 바로 저게 그 집입니다. ‘집 옮기니까 아빠 짐 거의 다 가져오는 걸로 해야겠어요’라고 하고, 저 집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화현관광개발이라고 쌍방울이 설립한 회사예요. 23년 3월부터 24년 9월까지 매달 165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거 범죄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박상용 주임검사 오늘 이거 보고 낱낱이 국민 앞에 고백하러 오세요.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안부수가 말 바꾼 걸 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모두 누명을 씌웁니까? 이 범죄행위 우리가 오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검사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호남, 필리핀에 가서 리호남에게 돈을 70만 달러 주었다고 합니다. 리호남은 필리핀 그 아시아 회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이화영 없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동영상 나옵니까? 김성태가 가서 북한 관계자들과……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저 영상은요 쌍방울이 다 갖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가 어제 다 봤어요. 거기에 리호남이 없어요. 그런데 리호남에게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박상용 주임검사는 리호남에게 어떻게 돈을 주었는지 이거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은 다 탄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이화영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제가 저희 변호인들을 통해서라도 김성태 씨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리호남의 존재 여부 또 그와 관련되어진 금전을 제공했다는 시점, 액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낙 반복된 거짓말을 했었던 걸 검찰의 조서와 또 법정에서의 진술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 드릴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만 특정해서 일단 리호남이 부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김성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북에서 필리핀으로 가니까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이 있어야 되고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리호남은 필리핀을 갈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70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소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박상용 검사 등 그 검사들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엄용수 증인, 증인석에 와 주세요.

이화영 증인이 검찰에서 대북송금을 김성태와 상의해서 진행했고 이재명과 통화해서, 통화까지 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본인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번복하면서 번복하는 사유를 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검사의 회유, 김성태의 협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갖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화영 증인의 증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술자리에 술을 쌍방울 직원들이 사 왔다’ 그다음에 ‘연어회 그다음에 갈비탕 이런 거를 다 사 가지고 와서 수십 회 먹었다’ 이렇게 증언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용수 증인 아까 분명히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그와 같이 술을 가지고 가거나 연어회를 사거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증인 엄용수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게 맞다라고는 제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가 봤을 때는 굉장히 출입 통제라는 게 분명히 엄격하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을 때는

항상 혼자 검사님이나 수사관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교도관님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변호인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상범 위원** 박상민, 박상웅 두 분이 아마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신 모양이지요?

○**증인 엄용수**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박상민 씨는 그러면 엄용수 증인 밑의 직원 아닙니까?

○**증인 엄용수** 밑의 직원은 아니고 박상민 그분은 회장님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수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엄용수 증인은 김성태 회장과의 관계에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알고 있지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리호남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준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 500만 불을 교부한 거, 이 과정에 대해서 스마트팜을 위한 경기도의 대북송금이 아니다, 추가조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엄용수 위원은 ‘그건 분명히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대북사업의 자금으로 준 거다’라고 하고 ‘그 500만 불도 본인이 회사에서 돈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한테 빌려서 마련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김성태 회장이 지금까지 진행한 그것이 분명히 엄용수 증인이 보기에는 명백하게 맞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제가 알기로 그 500만 불은 2018년도 11월 이후부터 이화영 부지사님을 통해서 대북사업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준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유상범 위원** 엄용수 증인도 그 점에 관여했습니까?

○**증인 엄용수** 그 점에는 저는 관여 안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엄용수 증인, 오늘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증인한테 여러 가지 협박을 했다고 하는 얘기 중에, 변호인 증거 의견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변호인이, 아마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과 상의하고 나서 의견서를 냈는데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에 대해서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용수 증인은 혹시 이런 광장에 김성태 회장이 필요한 비용을 지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증인 엄용수** 제가 직접적으로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알고 계셨던 부지사님하고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리고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화영 부지사님하고 신 국장님하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올해?

○**증인 엄용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9년도 1월에 선양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기내식도 같이 먹고 공항에 내려서, 우리 훈춘 법인에 모부장이 있습니다. 그 부장님이 직접 괴업을 해서 호텔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날 밤에 또 술도 같이 드시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이걸 부덕의 소치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개탄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회장님께서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진술한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증인 엄용수** 제가 아는 대북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허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봉지욱 기자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PPT도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면)

봉 기자님께서는 이 건을 많이 취재를 하셨는데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김성태 회장에 대한 공소장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문인데 죄명을 보시면 일단 공소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아주 센 거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니까 그냥 단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이 빠져 있는데 이 경위를 좀 아시나요?

○**참고인 봉지욱** 일단 제가 전체 검찰 수사기록을 봤을 때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회사 자금이 되면 유엔 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게 돼서, 쌍방울이 해외 공장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수출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 이거는 나의 개인 자금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본시장법에서 주가조작 관련은 굉장히 형량이 훨씬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소할 때는 했으나 나중에 빠진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기 전에 쌍방울 임직원들, 특히 오늘 오신 엄용수 증인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이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통해서 나노스의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나노스 주가조작 혹은 주가 부양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 측이 최소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실제로 아까 전환사채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불법 수익이 50억 이상만 돼도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쭉 뒤로 밀려지고 빠지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참고인 봉지욱** 그래서 검찰이 수사기록 중 일부를 법원에 증거 기록으로 낼 때, 최근에 나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시세조종 분석 데 이터가 있잖아요.

○**김승원 위원** 예, 해야지요.

○**참고인 봉지욱**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검찰이 의뢰를 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그런데 그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성태 회장은 주식을 특이하게 갖고 있거든요. 나노스는 92%가 김성태 회장 본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사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엄용수 비서실장이 진술한 걸 제가 보니까 2019년 7월 국제대회 이후에 나노스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 김성태 회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담보대출, 주가가 오르면 담보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 돈으로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저기 엄용수 증인이 얘기를 했더군요.

○**김승원 위원**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엄용수의 검찰 신문조서를 보면 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합의서 체결 후 IR 자료를 만들었는가요’, 엄용수 월 ‘주가 부양을 위한 IR 자료를 만들었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IR 자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검찰에서 답변을 했고요.

다음번이요.

또 그렇습니다. ‘진술인은 북한에 왜 50억 원을 주어야 하는지 들은 것이 있나요’ 했더니 빨간색 밑줄 그은, ‘그때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합의한 것을 가지고 IR을 하면서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보여 드린 대로 한 달도 안 되어서 5000원짜리가 9000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엄용수 씨가 또 법정에서 검사의 물음에 대해서 주가조작, ‘나노스 자료를 토대로 주가 부양을 하려 했다’ 법정에서도 똑같은 증언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봉지욱 증인께서 이거는 위증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참고인 봉지욱** 그러니까 나노스의 IR 리포트라는 것은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김태균 씨가,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증언을 했고 판결이 그대로 그냥 그 증언이 인용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노스의 IR 리포트라는 것은 쌍방울 내부에서 만들어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당연히 엄용수 비서실장은 그걸 만들지도 않았고요. 검사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엄용수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밖에다가 투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 하나의 거짓이라도 들어가면 회사가 망한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계약금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 합의 체결의 대가다라고 본인들이, 엄용수 증인뿐만이 아니라……

○**김승원 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엄용수 씨 PC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사 내부망 카카오톡을 했는데 아까 장경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는 방용철, 엄용수, 김형수, 장석환 이런 쌍방울 사람들이 ‘우리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러이런 거 하자,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카카오톡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봉지욱**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취재를 하다가 요즘 관련해서 좀 안 보다가 오늘 와서 기록을 죽 봤는데요. 한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은.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을 북한에 줬는데 그렇다면 경기도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경기도가 100억 원을 줬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하나라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사건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2019년 1월 17일에 쌍방울과 북한이 MOU를 처음 맺을 때 들어갔더니 북한 측에서 ‘당신이 여기 왜 오냐’,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이상하다.

그렇다면 쌍방울은 만약에 대납을 하려고 했다면 돈만 주면 되지 왜 북한과 대북 합의서를 맺느냐는 겁니다, 내의 만드는 그룹이. 나노스라는 회사는 휴대폰 광학 카메라의 모듈 만드는 곳인데 희토류 광물자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것을 만약에 북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쌍방울그룹이 할 능력이 됩니까?

쌍방울그룹의 사업계획서 자체가 만들 때 인터넷을 보고 만들었어요. 애초에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오늘 언급이 안 되던데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공범인데 지금 해외 도주해 있습니다. 배상윤 회장과 김성태 회장은 2016년에 이미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주가조작을 한 것 때문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공범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똑같이 그 두 사람이 들어와 있고 현재 배상윤 회장은 또 자기 회사 계열사의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승원 위원** 엄용수 증인, 이렇게 본인 진술도 있고 또 카카오톡, 회사 사람들……

○**위원장 정청래** 질문을 이어 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마무리해 주세요. 끝났습니다.

○**김승원 위원** 대화방 자료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실과 다른 진술 하실 겁니까?

○**증인 엄용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일단 추가질문하시고요, 계속 이어 가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저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국 사건 때 그것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시작했습니다. 코링크PE, 웰스씨앤티 점멸기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소조차 못 했어요. 결국은 동양대 표창장으로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을 살렸습니다.

이 쌍방울 사건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이재명 변호사비 20억을 대납해 줬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의 친구 변호사, 그러니까 M&A 자금으로 넣었다 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 20억을 제공받은 것으로 엮으려고 그랬지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엄용수 증인은 주가 부양을 하려면 직접 하지 왜 북한에 주겠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대북사업을 하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게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스리 쿠션으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 사태 때는 동양대 표창장이 나왔듯이 지금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통해서 연어 파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건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심 재판부에서…… 사업하고 관계하고 연락하는 것을 이화영 경기부지사께서 국정원과 다 공유했다고 그랬지요?

○증인 이화영 예.

○위원장 정청래 안부수도 혹시 국정원을 통해서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화영 국정원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일은 국정원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을 했었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 등도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있지요?

○증인 이화영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요, 그런 내용들이?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내용은 취사되지 않았지만……

○위원장 정청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로 채택됐는데 증거로 채택된 문서 안의 내용이 채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그것을 통상 우리는 증거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화영 예.

○위원장 정청래 국정원의 보고서가 증거로 인용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화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하게도 국정원에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배제됐어요. 인정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되고 결

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형량 거래예요.

아까 제가 이화영 옥중노트도 읽어 드렸습니다만 쌍방울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골프장 무슨 의혹까지 해서 결국은 수사 대상인데 그것이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것은 거래지요, 구형량 거래. 그리고 진술 회유 거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 유리한 증거만 채택이 돼서 9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저는 이것은 2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무슨 이익이 있었느냐는 봉지욱 기자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는데 경기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북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지어서 이화영 증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상용 검사는 의무에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과 관계있는 변호사를 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법 제36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데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도 어겼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만 행형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어 파티를 했고 진술 조작 세미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위반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시 81조(분리수용)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봉지욱 기자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금 김성태 회장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그들이 진술하는 것이 맞다면 회합·통신? 외환관리법 위반……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봉지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 부분은, 지금 김성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참고인 봉지욱**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뉴탐사에서 공개된 쌍방울 옥상 파티 영상 거기서 김태균 씨가 등장하는데 김태균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1심 판결에서 김태균 씨가 낸 자료들이 증거로써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회장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두 사람이 새로운 코인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범들끼리 수시로 연락하고 심지어는 영상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안부수 회장은 키르기스스탄 어디 대학 가서 명예박사 학위까지 받았다는게 맞습니까?

○**참고인 봉지욱** 키르기스스탄에 가서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 그것도 모르겠는데 의사도 아닌데 의대 명예박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또한……

○위원장 정청래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출국금지도 해제되고 해외를 제 집 드나들 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봉지욱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안부수 회장이 아태평화교류협회 말고 다른 회사 하나를 더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8억 정도의 코인, 대북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북 코인 홍보 영상을 틀면서 경기도와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부수 회장이 계속해서 코인 사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인데 심지어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또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고요,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엄용수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엄용수 증인, 앞에서 김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발언이 위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좀 해 주시지요.

○증인 엄용수 저는 여기서 어느 편을 들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여기서 선서를 할 때도, 제가 아는 팩트 그대로 말씀드려서 정말 대북송금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 봉지욱 기자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본인이, 아까도 제가 2019년도 5월부터 비서실장을 했다는 등 아니면 나노스 IR 자료도 김태균 씨가 했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제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장경태 위원님 같은 경우 제가 평상시 되게 존경을 하는 위원님이었는데 지금 본인의 어떤 의사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서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다 알고 있지만 가졌던 생각하고 팩트는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자꾸 저보고 위증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뭘 위증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제가 검찰에 진술한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이 맨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님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께,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해서 500만 불은 저희가 보내려고 약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12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김성혜 라든가 박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 갖고 사진 찍어서 직접 이화영 부지사님한테도 보내 드렸고, 그러면서……

○증인 이화영 허허, 참……

○유상범 위원 그냥 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증인 엄용수 아니, 제가 말씀드ري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뭐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1월 달에 200만 불을 송금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300만 불을 송금하면……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그동안에 김성태 회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들을 도와주시려고 했습니다, 이 대북송금뿐

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나머지 어떤 사업들도 저희들한테 제안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도 다 법원에서, 법정에서 저희들이 중언을 했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다가 4월 달까지 500만 불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민경련이라는 북한 단체하고 우리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자. 다만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보자분하고 저하고 이 초안을 만든 겁니다, 나노스 IR 자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었다가 5월 12일 날 단등에서 저희가 민경련하고 협약식을 하고 나서 또 7월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마닐라 2차 대회 때 저희가 비용도 지불하고 그렇게 가 갖고 ‘북한 경제인하고도 같이 만나게 해 달라, 북한 사람들’ 그래서 그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 그 자리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기업 홍보라든가 IR을 해야지 기업의 평판이라든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 영상 촬영……

○위원장 정청래 좀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증인 엄용수 예. 그런 분들도 같이 가서 정상적으로 찍었고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IR 자료를 김태균이라는 분이 보강을 해서 외부적으로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의 맨 처음 시발점은 경기도 스마트팜을 약속했기 때문에 대신 납부해 준 거다, 이 점이 제가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증인 이화영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짧게 한 말씀 할 게 아니지요!

○증인 이화영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잘라진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나중에 그쪽 편에서 발언 주실 때 답변하시고요. 이것은 정말 사실이 너무 다릅니다.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고 일방적인 주장이……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이건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하동혁 증인한테 해야 되는데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아요. 순번을 조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전현희 위원이 먼저 하세요.

○전현희 위원 이화영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공개한 대화 녹취록 그 내용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관해서, 일단 PPT 봐 주시지요. 그다음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증인의 변호인에게 합법적으로 입수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당시의 앞 녹취가 ‘김성태가 폭로하겠다’, ‘광장 조직 등을 관리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나오는 녹취가 ‘경기도를 위해서 쳤다고 거짓말한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알아,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십인성호처럼 다 만들어 놨다’, ‘이 사건도 만들어 놓은 거다’, ‘또 하나 만들겠다고 겁주는 거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이 또 만드는 거라고 겁주는 거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꾸 압박해서 이거라도 건지는 거야’, ‘끝에 가서 혀당이 야’, ‘터뜨리라 그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것이 또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습니다.

다 증인이 하신 발언 맞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전체 녹취록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겠습니다. 7월 12일 당시에 했던 앞부분의 녹취록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재명을 불어라라고 검찰이 김성태를 압박했다. 그래서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 수사 가이드까지 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래서 정치검찰이 또 이화영 증인에게 압박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잡아넣겠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전현희 위원님.

기계 좀 손보세요.

발언은 중지해 주시고요.

잠깐 틀어 보세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안 나옵니까?

○전현희 위원 시간을 다시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중지돼 있으니까요.

주진우 위원님이 할 때는 소리가 너무 잘 나오던데 전현희 위원님이 하니까 소리가 안 나와 가지고.

○전현희 위원 저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하세요.

○전현희 위원 그래서 정치검찰이 김성태에 대한 압박을 해서, 이재명을 불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고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다 잡아넣고 심지어 딸들도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정치검찰이 압박했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세미나에 관한 진술도 있는데요 ‘김성태와 주변의 진술을 다 맞춰서 다 만들어 놨다. 스마트팜 비용도 제가 부탁을 해서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고 그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렸고 이재명 지사도 잘 알고 네다섯 명을 검찰에서 훈련을 시켜서 진술을 맞춰 놨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른바 진술세미나를 했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회유로 김성태 진술에 맞춰서 증인이 결국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화영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서 진술을 맞추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증인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거나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보내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탁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녹취록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김성태 진술에 맞출 수밖에 없었을 증인의 심경을 이렇게 당시의 변호인에게 토로를 한 건데, 이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이화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고요. 그 당시 변호사님이 그렇게 검찰이 회유하는 것에 당해서는 안 된다, 바른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주셨고.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변호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황이 좀 어렵다, 여러 가지로 압박의 강도가 심하고 김성태 씨가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 특히 이재명 대표님한테 굉장히 없는 사실을 많이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검찰 측에서 김성태를 압박해 가지고 혹은 김성태가 자발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가서 압수수색 하고 또 관련자들 소환해 가지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사건을 계속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 과정을 거듭 보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그런 상황에서 주변인들을 구속시키기 시작했고 기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케이스가 옆에 계신 신명섭 국장이 구속된 케이스고, 그러면서 정말 실제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 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김성태가 우리 주변을 엮으려고 검찰과 협조해서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죽 사례별로 나열을 한 거지요. 그 나열을 하면서 김성태 케이스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전체를 위해서 좀 모면하는 게 나은 대응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증인 이화영** 제가 변호사님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였었지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께 다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문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3분 안에 질문하신 내용은 다소 시간이 지나더라도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데 3분이 지난 다음에 계속 질문을 이어 가시다가 그때 질문한 것은 제가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은 일단 3분 안에 하시는 걸로 그리고 답변시간이 짧으면 그건 좀 연장해서 듣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이건태 위원** 이화영 부지사님, 아까 엄용수 증인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한 게 있는데 한 1분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화영**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엄용수 증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학습효과 같아요, 어디서 죽 이렇게 이렇게 얘기 하라고 얘기를 듣고 온 것 같고. 그전에 엄용수 씨는 제 학교 후배기도 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당히 다정하게 대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구속돼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오랫동안 구속돼 있어 가지고 내용을 몰라요. 그쪽 회사 사정도 모르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초기 진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의 초기 진술이 훨씬 자기 진실을 얘기한 건데 지금 와 갖고 저렇게 하는 이유를…… 상당히 어딘가에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거나, 뭔가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동혁 증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하동혁** 예, 말씀하세요.

○**이건태 위원** 민족통일……

○**증인 하동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건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증인 하동혁** 죄송하지만 제가 청각장애가 아주 심해 가지고 지금 회의하는 동안에도 번역기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제가 보청기를 켤어도 40%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제 청각장애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 왜곡되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평양에서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싶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변호사님이나 누구 한 분이 옆에서 질문 요지를 여기다 써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옆에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가서. 그러면 되잖아요, 옆에서 얘기하면.

○**위원장 정청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옆자리에 앉으셔 가지고요 주로 필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증인 거기 계시고요, 그 옆자리가 있네요.

○**이건태 위원** 여기 앉아 보세요. 여기서는 들리지요? 여기서 안 들립니까?

○**증인 하동혁** 옆에서는 들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옆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건태 위원 이렇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옆자리에 앉아 주세요, 마이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문해 주세요.

○이건태 위원 증인은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북한을 여섯 번 정도 방문하셨는데 2019년 1월 26일~30일까지 방문했을 때 송명철에게 ‘김성태가 준 돈이 무슨 돈이냐’라고 했더니 송명철이 ‘광물 개발 등 북남협력사업 협의에 의한 자금이다’ 이렇게 대답했고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말은 일절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대회 참석했을 때 송명철한테 ‘리호남 왔느냐’ 그랬더니 송명철이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하동혁 조금 전에 이건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제가 평양 양묘장 사업을, 동양 최대의 스마트팜입니다. 6400평짜리를 단일 건물로 아태하고 최초로, 남쪽에서 남북화해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민족통일촉진회하고 아태 그리고 민경련하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부수가 사업 계약을 하고, 세 번째는 분당에 우리 경제기업연합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안부수 소개로 쌍방울에서 북남사업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섯 번 갔다 오는 동안에 다섯 번째 평양을 갔을 때 송명철 실장이 조금 전처럼 제가 청각이 안 좋으니까 바로 옆에 앉아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헐난을 했냐면 ‘평양을 다섯 번 오는 동안에 공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울에서는 책 뭉치 해 가지고 직원들을 수십 명 동원해 가지고 달려를 가지고 왔는데 왜 민족통일촉진회 너희는 200억짜리 사업을 협약해 놓고 돈을 조달을 못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 삼아서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별 소지하는 금액 1만 불 외에는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방북에, 산림녹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회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을 모시고 1인당 정부에서 허가한 호텔비, 숙박비 등등 비용 해 가지고 1만 불씩 해 가지고 조달을 하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간이 안 찬 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쌍방울에서, 2019년 1월 26일 날 방문했을 때 송명철 실장의 헐난성 있는 질문에 쌍방울이 협약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 뭉치에 숨겨 가지고 직원들이 중국으로 다 조달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 외화 반출인데, 실정법에 어긋나는데 그걸 우리는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쌍방울에서는 그 돈을 조달한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송명철 씨 왈—그때 부실장이었습니다—‘북남사업협약을 했는데 그 사업 계약금하고 사업자금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쌍방울에서 송명철 실장한테 전달된 돈이 방북 대가나 스마트팜 비용이 아니고 북남사업협약에 의해서 돈이 전달된 결로 송명철 부실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발언이 한정 없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혹시 민주당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더 이어 가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김용민 위원 다른 걸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어 가지요?

-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면 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 박균택 위원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순서 좀 바꿔서.
-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3분을 더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아니, 이런 식의 진행이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정청래 지금 끊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유상범 위원 아니, 끊고 질문하면 그때 이어서 하면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김용민 위원 마지막에 답변할 시간을 주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해야지요, 적당히.
- 서영교 위원 아니, 이 정도는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 유상범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언제 이렇게 했어요?
-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 조배숙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박균택 위원 아니, 제 시간을 쓰겠다는데 왜 그리십니까?
- 유상범 위원 아니, 순서대로 쓰라고.
- 조배숙 위원 아니, 순서요, 순서.
- 박균택 위원 아니, 제 순서 바꿔 쓰면 되지요.
- 유상범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편하게.
- 조배숙 위원 아니지요. 지금 순서가 제 순서입니다, 이제.
- 유상범 위원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 위원장 정청래 자, 보세요.
- 이건태 위원 아니, 이 정도는 위원장님 재량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유상범 위원 재량? 아이고.
- 위원장 정청래 들어 보세요. 유상범 간사님 홍분하지 말고 들어 보세요.
- 유상범 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 위원장 정청래 (질의 순서표를 들어 보이며)

오늘 질문지 순서입니다. 저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위원님들 순서를 몇 번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것 제가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 순서 바꾸자고 하는 것 제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요. 보세요. 너덜너덜하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런데 제가 무한정 발언시간을 드리지 않고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 측에서 어떤 위원님의 질의 3분을 쓰겠다 한다면 그렇게 허용하겠다 한 것을,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 조배숙 위원 아니, 이어서 한다고 하니까.
- 유상범 위원 바로 이어서…… 순서가 있잖아요, 다음 순서가.
- 박균택 위원 이건 저의 시간 포기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제 시간의 포기.
- 위원장 정청래 왜냐하면 저 중인께서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걸 배려하는 인권 차원에서 발언은 계속하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무한정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민주당 위원 질의시간 3분을 할애해서 3분 안에 듣겠다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유상범 위원** 바로 이어서 한다고 하시니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박균택 위원** 이건 제 시간의 포기니까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 질의 3분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더 발언하세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순서가 있는데?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정청래** 3분간 더 발언하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기다리고 계시고 하려고 하는데.

○**조배숙 위원** 제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제 순서인데.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양해를 구하잖아요. 이렇게 위원님들도 질의 순서를 다 바꿔요.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광규택 위원은 발언도 못하게 만들고.

○**위원장 정청래** 그건 발언권을 중지한 거고요, 국회법에 의해서.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리고 저 증인의 청각장애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이라도 양해를 구하세요, 양해를.

○**박균택 위원** 그러면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포기할 테니까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질의 순서를 3분간 더 증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분간 더 발언하세요.

○**증인 하동혁** 지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증인 하동혁** 방북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안부수 회장의 초청장 없이 북에서 온 송명철 부실장을 만나고 자금조달 목적으로 리호남이라는—리철이라고 합니다—친구가 평양에 양묘장 건설을 해 주면 예성강 하구의 모래 채취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착수를 했는데 저희가 기부금을 못 받아 가지고 리호남을 만나 가지고 예성강 하구의 모래 채취권 확인서만 하나 받으려고 했습니다. 받아 가지고 모래 채취업자들에게 보여 주고 평양 양묘장 건설을 지속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 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뭐 물어봤냐하면 ‘리호남, 리철 씨 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아니, 그냥 따로 양묘장 건설 건 때문에 좀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조금 전에 증언했던 엄용수 비서실장도 만났고 많은 분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송명철 부실장이 할 얘기를 다 못 했으니까 북경으로 가자 해 가지고 제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표 티캐팅을 해약하고 콘래드호텔에서 하룻밤 더 자고 북한에서 온 6명, 리종혁 부위원장 외 박명철 부위원장과 함께 비행기로 새벽에 북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어요, 리호남이가 혹시 위원장해서 왔는가. 왜냐하면 리호남이를 꼭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리호남이도 저를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북경까지 따라갔는데 리호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명철 부실장에게 소개받은 게 경기도청에 들어가서 신명섭 국장을 만나 봐라. 그 전에 제가 뭔 얘기를 했냐 하면 경기도하고 합작으로 평양 양묘장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방북 대가를 줬다고 하면 송명철 실장이나,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야, 이미 따로 방북 대가 받고 쌍방울하고 이야기 끝났으니까 너 그러면 경기도 소개 안 해 줘. 너 따로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더러 신명섭 국장을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정청래 증인!

○증인 하동혁 필리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수원의 경기도청 들어가서 신명섭 국장님을 만나 가지고, 송명철 부실장이 도움을 요청한다 해 가지고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도, 조감도, 내역서, 시방서 이런 것을 다 보내 달라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 줬어요.

○위원장 정청래 증인,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증인 하동혁 그랬더니 나중에 지사님께서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까…… 문제는 송명철 실장을 선양에 가서 만나 봐라 그래 가지고 선양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하노이회담 결렬로 2019년 9월 말 일자로 남북접촉 금지령이 내려 가지고 10월 초에 송명철, 신명섭, 저하고 만나려고 했던 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다음에 70만 불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장 정청래 저기요, 증인!

○증인 하동혁 예, 알았습니다.

필리핀에서 70만 불을 줬다,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글맞은 사람인데요. 필리핀 까지 가서, 수교국도 아닌 데 가서 70만 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조달해 갑니까? 차라리 북경 오라고 하면 올 건데, 김성태도 오고 안부수도 오고 부르면 다 와요. 우리 한국 기업가들도 리호남이가 부르면 북경, 선양, 단동, 연길 다 갑니다. 군소리 않고 갑니다.

○위원장 정청래 증인!

○증인 하동혁 그런데 그 70만 불을 위험한 필리핀에서 리호남이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리호남이 그걸 받는다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장, 도지사 했던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저는 별로 모릅니다. 나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북쪽 사람들이 브로커 소리 듣는 게 싫어요. 제가 겪어 본 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무조건 대가 없이 안 받습니다. 팁도 안 받습니다. 팁 줘도 안 받

아요. 선물을 줘도 안 받아요, 북한 사람들. 그게 뭐냐 하면 이 돈이, 불법적으로 막대한 돈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국정원, 정보 하는 첩보원들이 다 조선족들로 위장하고 있고 중국 쪽에 북쪽 정보 수집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명 지사님이 쌍방울한테 불법 외화 반출이 뻔한데 방북 대가로 그리고 스마트팜 건설비로 800만 불을 줬다고요? 제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여섯 번을 갔다 왔고 북한의 고위층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듣고 뉴스를 보고,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을 갖다, 탈북 공무원을 갖다가 간첩으로 몰아 가지고, 검찰의 행태가 너무 지나칩니다.

제가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지고 6시 반에 출근시간이 겹치는데도 와 가지고 아침에 10시부터 지금까지, 밤 9시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원장 정청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하동혁 그런데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민의힘 위원들도 제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하고 법질서를 위하고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더불어 살자고 하는 것,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상충되지만 서로 조정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나는 절대 어느 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이심을 믿고 지금까지 발언한 모든 것 얼마든지 법정에 가서도 증언할 수 있고 아니면 중국에 가서 리호남이를 만나서 녹화진술을 받아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것은, 송명철이가 아태실장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송명철이를 찾아 가지고 내가 증언서를 받아다가 여러분 앞에 진실이 뭔가를 확인시켜 주려고 작년 10월 달에 갔다 왔는데 못 만났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증인 하동혁 이상 증언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참 위원장으로서도 힘드네요. 이렇게 발언은 계속하셔야 되겠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말씀의 요지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이게 요지 아닙니까?  
맞지요, 증인?

○증인 하동혁 리호남이는 필리핀에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 엄용수 증인, 한 번 더 나와 주시지요.

금방 통일운동가이신 하동혁 씨가 말씀을 하셨는데 쌍방울에서 돈이 갔다. 갔는데, 북한에서 그것을 방북 대가로 받은 거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방북 대가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증인 엄용수 여기 대부분 아시듯이 리호남이라는 분은 공작원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그 행사 때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북한의 리종혁이라든가 송명철, 조정철 이런 분들 다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회장님하고 저희가 별도로, 행사 끝나고 나서 리호남이라는

분을 만나러 간다고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회장님의 만나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비밀로 만나야 되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증인이 장경태 위원님이 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증인 엄용수** 예, 제가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질문하셔 갖고……

○**전현희 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증인 엄용수** 예?

○**전현희 위원** 위증 안 됩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제 질문 중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전현희 위원** 위증하지 마시라고요.

○**증인 엄용수** 어떤 거 하지 말라고요?

○**조배숙 위원** 아니, 제 질의시간이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증인 엄용수**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2018년 11월 전에는 대북의 대 자도 잘 몰랐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시점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그것을 어떻게 잘못 아셨는지, 잘못 이해하셨는지 아까 저한테 이렇게 막 큰소리로 하시는 것은 정말 그건 아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억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위원님……

○**장경태 위원** 제 질의시간이었는데 발언 기회를 얻고 하셨어야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질의시간입니다.

○**증인 엄용수** 아니, 지금 왜 화를 내시냐고요.

○**장경태 위원**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조배숙 위원**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증인 엄용수** 위원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시간 얻고 하셨어야지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말을 가로막냐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 발언 중지하세요.

○**증인 엄용수** 아니, 왜 화를 내시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증인 엄용수**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조배숙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장경태 위원** 위증하시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 중지하시고.

○**증인 엄용수**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조배숙 위원** 제지해 주세요, 위원장님!

○**장경태 위원** 뻔뻔하게 위증하시니까 그렇지요.

○**증인 엄용수** 뭐가 뻔뻔해요?

○장경태 위원 이따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도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엄용수 증인도 그런 태도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조배숙 위원 아니, 잠깐 제 시간을 한 1분 더 주세요. 지금 이거 중간에……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1분 정도 더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상대방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 끼어들면 발언이 끊기고 또 불쌍사  
나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 다 위원님들 자제하시고, 장경태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고, 엄용수 증인도 그런 태도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  
서 자제해 주시고.

조배숙 위원님 질의 이어 가도록 하세요.

○조배숙 위원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게 한 1분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1분 정도만  
좀 더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청래 1분 정도 소요 안 됐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 정청래 질의시간을 봐서 좀 더 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요.

1분만 더 드릴까요, 그러면? 그리고 딱 끊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질문을 이어 가시고, 제가 적당히 하겠다고요.

질의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장경태 위원님 질의에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못 한 것 같아서 그걸 좀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12  
월 달에 무슨, 장경태 위원님이 자료를 내면서 그때 뭘 관여하지 않았느냐……

○증인 엄용수 단톡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예, 그것을……

○증인 엄용수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대북 프로젝트 사업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사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단  
톡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박 모라는 저희들 홍보하는 임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업들 네이버  
에 보면 악성 댓글도 달려 오고 막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  
어를 좀 해 달라 그 점 때문에 저희들한테 표시한 게 N활성화예요 이 얘기였습니다. 그  
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오해가 되고 확대 생산되기 때문에, 이게 주가조작하고 연계가  
됐다는데 제가 법정에서도 질문에 ‘아니, 네이버에 댓글 오는 것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  
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그게 주가조작이면 대한민국에 주가조작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  
니까?’ 그런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조배숙 위원님 질의 도중에 질의가 끊기지 않습니까, 끼어들면? 그래서 장경태 위원은 민주당 위원으로서 영예롭게 경고 1호를 기록하셨는데 이것은 서로 간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발언 중에 꾹꾹 웃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듯한 이런 태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서로 발언시간 안에, 그 위원은 전적으로 그 시간 안에 준비한 질의자료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질의에 방해되는 그런 언행들은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뭐 하나 체크 좀 하게 교도관님 잠깐 와 보세요. 잠깐만요, 뭐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교도관님, 잠깐만요.

시간 좀 다시 넣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교도관한테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예, 짧게 하나만……

○위원장 정청래 교도관은 참고인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괜찮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잠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김용민 위원 아니, 그것은……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아니,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정청래 왜냐하면 오늘은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그래도 청문회 도중에 공무원이 와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 정청래 아니아니요,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그냥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는데……

○김용민 위원 제 의원실에……

○조배숙 위원 경고하세요.

○김용민 위원 아니, 그냥 물어볼게요. 답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위원장 정청래 질문은 하시는데 답을 하건 안 하건 본인 자유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시간 다시 넣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제 의원실에 연어랑 소주를 준비할 건데 이화영 증인과 신명섭 증인 오늘 끝나고 제 의원실에 가서 같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안양교도소 김재용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안 되지요?

○법무부안양교도소 김재용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가면 안 되겠지요?

○법무부안양교도소 김재용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 됐어요.

답변하지 않는다는 걸로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검사실에도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검사가 조사하려 불렀으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와서 회 먹고 술 먹고 진술 조작하자고 부르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보냈겠냐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교도관님들도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했는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김영일 검사가 보니까 2022년 7월 달에 평택지청장으로 있다가 2개월 만에 수원 2차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들이 급속도로 진전이 돼요.

그런데 김영일 검사가 뭐 했던 사람인가? 보니까 1월 달에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은 이유가 이래요, ‘검사실에서 수용자한테 외부인에게 사적 통화를 하게 했다’ 이걸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애인을 불러서 만나게 해 줬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줬습니다. 이것 굉장히 부적절하지요?

○증인 김광민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용민 위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화영 증인과 김성태 회장 등에 대한 사건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증인 김광민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증인 김광민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용민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안부수 씨 딸이 3월 18일 날 검사실로 면회 갔는데 이때 보면 ‘전부 와 있었다. 쌍방울 회사 임원분들도 와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보니까 그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 세 분이 박상용 검사실로 소환이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김광민 변호사님 다시 한번, 이것 시행령 위반 아닙니까? 보면 미결수용자는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부수 씨와 안부수 씨 딸을 검사실에서 만나게 했어요. 이것 시행령 위반 아닙니까?

○증인 김광민 명확하게 위반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도관들의 감시하에 있기 때문에 해당 검사실도 넓은 의미에서 교정시설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화영 증인, 7월 12일 날 녹취록이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7월 12일 날이면 증인께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게 방북 관련 도움을 요청했고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한 그 직후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왜 변호사님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을 잠깐만 좀 설명해 보십시오.

○증인 이화영 조금 전에 전현희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를 설득했고 저는 변호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황이 지금 이렇다,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회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와 같은 얘기를 일부, 그러니까 저는 정황론으로만 동의가 됐었다고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정황론으로 가다가 이렇게 약간 늦에 빠져 갖고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렸냐고요. 변호사님한테 굳이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해 보는데 그때 변호사님한테 제가 상황을 좀 절박하게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 민주당에서도 좀 단단히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더 물려날 곳이 없는데 변호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주진우 위원 저는 민주당 의도와 달리 오늘 청문회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사법 리스크가 더 증폭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화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 검찰에서 42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과 쌍방울 대납에 대해서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자백을 하면서 이의 제기도 안 했었고요. 조서도 작성했었고, 조서에 변호인도 참여했고 변호인도 서명날인을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자백을 했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 그 자백했던 시기에 아까 지적했다시피 설주완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회유·협박이 없었다라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증인으로 신청해도,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관련성을 술술 털어 놓는 자백 진술을 할 때 입회했던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그 변호사에 대해서, 이분만 딱 증인 신청에서 빼 버렸어요. 거리끼는 게 없으면 왜 그 중요한 변호사들을 빼느냐 하는 점이 있고요.

진술을 회유·협박해서 자백할 때 그 당시의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 증인에 대해서 지금 신문할 기회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연어 술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증인의 진술을 언론에 나온 것과 해서 제가 죽 보니까 정확한 시기와 장소, 내용들을 다 특정 못 하고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38명의 교도관 전원을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연어 술 파티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교도관들도 몰아세우고 있는데 교도관들이 지금 이 사건에서 본인들과 직접 이해관계도 없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인원도 장장 38명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화영 증인은 이것에 대한 진술도 바뀌고 제대로 특정조차 못 하고 있는데 38명의 교도관 전원은 다 이 부분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김형태 변호사와 대화한 녹취록도 지금 이화영 증인은 거짓 폭로를 하겠다고 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협박을 받았길래 징역 10년 이상 나올 범죄를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씌운다는 말입니까?

또 민주당 위원들은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원수 대하듯이 추궁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은인처럼 잘해 줘요. 이런 점들로 저는 증인의 신빙성이 매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동혁 위원 오늘 이화영 증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제가 꼼꼼히 다 읽어 봤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읽어 보면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증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끝까지 잘 이해를 못 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화영 증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리적 압박이 됐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김성태 회장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나도 이제 좀 압박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 자체가 이화영 증인에게 부담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허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이 압박이 됐는지 이화영 증인이 저희들한테 주신 녹취록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나한테 김성태가 날 만나서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가 지금 몰려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 변호사비 대납부터 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내가 모르게, 뭐 내가 모르게 도와준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김용 뭐 측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김성태 증인이 꾸며 냈거나 없는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압박이 된다 이런 취지고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예. 더, 더 그 휘발성이 크고’, 김형태

변호사가 ‘그게 뭐예요?’ 이화영 증인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김형태 변호사가 ‘변호사 대납?’ 이화영 증인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 뭐 대법관과 어찌고?’ ‘그것도 있고, 2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가 나올 때’, ‘로비했다?’ ‘예, 변호사비 대납했고’,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예, 예, 예.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녹취록 어디를 읽어 봐도 지금 내용이 허위거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압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물론 압박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날조됐거나 없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인 이화영 그것 제가 말씀드려요?

○장동혁 위원 질문하시는 않았지만 위원장님께 받으시면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한 1분 이내에 해 주세요.

○증인 이화영 1분 이내요?

○위원장 정청래 예.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굉장히 많은 이를테면 협박 아이템을 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 줬겠지요. 이런 것이나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서, 제가 회유되지 않으니까 압박의 소재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성태 씨가 알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듣거나 언론에서 본 것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그냥 단독으로 만나자 그래서 마구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김성태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검찰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니 이 상황을 단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얘기였고요.

제가 좀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하동혁 증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 재판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소위 부재한 북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북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를 법정에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최초로 지금 하동혁 증인님이 ‘송명철을 만났다, 그 이후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여 가지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필리핀에서 있었던 영상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게 비밀 만찬이라고 하는 필리핀에 가서 있었던 만찬입니다. 김성태가 북측 인사들과 만나네요. 저렇게 다 만나고, 술 많이 마셨나 봐요.

엄용수 증인, 거기 갔었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갔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거기에 리호남 있었어요?

○증인 엄용수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못 봤지요?

○증인 엄용수 예.

○서영교 위원 리호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서영교 위원 리호남이 거기……

○증인 엄용수 저 자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리호남은 거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측 인사를 초청합니다. 6명을 초청하고, 북에서부터 초청을 받아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있어요. 저기에는 리호남이 없어요.

저 자리에 갔었지요, 증인은?

○증인 엄용수 예, 갔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리호남 저기서 못 봤지요?

○증인 엄용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리호남 저기서 봤어요, 못 봤어요?

○증인 엄용수 저는 못 봤는데, 저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 행사에 관련된 비용을 대 가지고 사전에 경기도하고 북한에……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시고요.

우선 리호남은 저 자리에 없었고. 저기 가서 70만 불을 쳤다고 그러는데 그 70만 불을 아까 하동혁 증인 말씀처럼 받아 가지고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필리핀에서 우리가 준 70만 불을 들고 어떻게 밖으로 나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 자리에 간 비서실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을 텐데 못 봤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엄용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됐습니다.

○증인 엄용수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서영교 위원 아니, 이보세요. 내가 지금 증인에게 물어봤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위원장께 손 들고 말을 하세요. 증인이 여기 와서 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눈빛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증인 엄용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서영교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정청래 들어가세요.

○증인 엄용수 이따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지금 억울하게……

○증인 엄용수 저도 억울합니다.

○서영교 위원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접을 했다 이렇게 역울한 누명을 씌우고 거짓 말을 한 당사자들이 바로 당신들이에요. 아니, 보세요. 내가 북에 가려고 해요. 내가 북에 가는데 쌍방울에서 돈 대 줄 일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북에 가면, 북은…… 남북 정상회담 때 내가 실무 대표자였어요. 13박 14일을 평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북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쌍방울에서 돈 대 준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증인의 증언이 다소 마음에 안 들지만 증인에게 거짓말을 한다, 누명을 씌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상범 위원 맞잖아요.

○서영교 위원 내가 물었잖아요, ‘필리핀에 갔었나’.

○유상범 위원 그러면 답변을 들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이 끝났으니까요.

○서영교 위원 엄용수는 갔는데 ‘리호남 봤냐’, ‘못 봤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끝났지. 내가 그걸 질문했는데 무슨 답변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서영교 위원 왜 그 편을 드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하하면 되겠어요, 누명을 씌운다?

○위원장 정청래 됐습니다. 됐어요.

○서영교 위원 아니, 필리핀에서 70만 불을 줬다고 했는데……

○위원장 정청래 자, 보세요.

○서영교 위원 리호남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만약에 유상범 간사님이 질의를 죽 했는데 서영교 위원이 똑같이 유상범 위원이 말한 부분을 얘기했어도 유상범 위원이 기분 나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이 부분은 역자사지하시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데 상대 위원께서 질의하고 있는 중에는 제발 끼어들지 마시고 또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있었……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어요.

○서영교 위원 잠깐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아니, 잠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정청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증인의 자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은 다 위원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못 하게 말을 끊고 자기가 계속 발언한다 그러니까,

내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제가요 증인……

○서영교 위원 증인이 안 나오겠다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놓고 갑자기 나와 가지고 저런 자세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제가 증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언제 지적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제발, 이렇게 되니까요 이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위원장석에 와서 사회를 한번 봐 보세요. 제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 리피트 어게인(repeat again)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장경태 위원, 민주당 위원한테까지 경고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을 좀 믿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김광민 변호사님께 물겠습니다.

이 사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건하고 안부수에 대한 사건 2개 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광민 예.

○박은정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두 사건은 김영남 부장검사가 기소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수사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광민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같은 사람들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범죄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뇌물사건이거든요. 뇌물사건은 범죄 일시·장소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구멍이 있으면 아주 가차 없이 무죄가 나는 사건이에요. 뇌물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범죄사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범죄 장소가 없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민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범죄 장소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의 선양에서, 중국의 산둥에서요. 세상에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디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장소 없는 범죄사실이 있습니까? 김성태 씨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진술한다면서요? 왜 사람이 돈 준 것을 기억을 못 합니까, 어디서? 그 사람 맨날 뇌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계속 뇌물 줘 가지고 기억을 못 합니까, 저 사람한테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이화영이라는 공직자에게 뇌물을 줬다면…… 이화영이 아니라 북한에다가 뇌물을 줬다면 그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사실이 없는 공소장입니다.

그것을 수사한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요, 이 두 판결은—다음 것 보여 주세요—완전히다른 결론이 났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증인 김광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것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광민 안부수 판결문에서는 나노스에 대한 쌍방울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주가

부양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반대로 이화영 판결문에서는 주가 부양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어떻게 같은 사람들이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이게 똑같은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같은 돈을 준 성격을 한 곳은 주가 부양이고 한 곳은 방북 비용 대납이에요.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이런 기소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윤석열 검찰이 실력이 없어지고 마구잡이로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범죄 장소도 없이 기소하고 완전히 다른, 이것도 별로 차이도 나지 않거든요, 이 시차가. 그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은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의 검찰, 윤석열 검찰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사건 이 결론에 대해서. 이런 허술한 판결을 가지고 지금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한 거예요, 기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 재판이 있을 텐데요 이것 수사한 검사들, 기소한 검사를 반드시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김광민** 항소심, 상고심 열심히 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이렇게 흥분되고 열기가 뜨거울 때는 한 파트 쉬어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자가 또 장경태 위원이기 때문에 이때 제가 타이밍을 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경태 위원님, 염용수 증인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할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말고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염용수 증인, 지금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봐도 본인이 굉장히 긴장이 높아서 증인으로서 답변하는데도 그냥 답변할 것 있으면 하면 되는데 계속 ‘답변해도 됩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질문을 안 하지?’ 이렇게 불만 같은 것 갖지 마시고 ‘왜 이런 것만 질문하지?’ 이렇게 불만 갖지 마시고 원래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좋은 태도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염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신문하시지요.

○**장경태 위원** 염용수 증인 증인석으로 서 주시고요. 답변을 하고 싶으시면, 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께 답변 발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증인 염용수** 예.

○**장경태 위원** 방금 조배숙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여 드린 수사보고서 잘 아실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임원이 네이버에 악성 댓글이 달린다. 소위 대북 프로젝트 사업체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개설되었고 네이버 악성 댓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단톡방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세 가지 논리로 이야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증인 엄용수 오류가 좀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녹취록, 속기록 다 확인하고 한 거거든요.

보면 이 수사보고서에 주임검사…… 수원지검 문서입니다, 제 문서도 아니고요. ‘쌍방울그룹의 임원진들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의자 방용철은 김성태에게 보고할 자료임을 확인했다. 쌍방울그룹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N프로젝트와 쌍방울그룹 북남사업이 주요 사업 아이템이었다. 그리고 피의자 방용철을 비롯한 고위 임원진들의 수차례에 걸친 프로젝트 자료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남북협력사업과 함께 N프로젝트와 누군가의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발표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라고 수원지검 수사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주임검사가 작성한 거겠지요, 확인한 거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북사업의 대 자도 몰랐고, 지금 조배숙 위원님 질의에 네이버 악성 댓글을 위해서 이 단톡방 만드신 건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지욱 기자의 말씀과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방금 ‘주가조작을 하려면 500만 불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하지 그랬겠습니까’라고 하셨지요?

○증인 엄용수 예.

○장경태 위원 그런데 7월 4일 법정 증언 발언입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 쪽 민경련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합의한 것을 가지고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요. 그때 북한 측과 50억 원 금액에 합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증언하셨잖아요.

이 법정 증언, 즉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과 50억, 500만 달러, 50억 정도에 합의를 보고 나노스 주가를 움직인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조작이라고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500만 불, 본인이 50억 그런 것 있으면 쌍방울이 그 돈으로 주가조작 했지…… 50억으로 주가조작 못 해요, 쌍방울은. 이것을 가지고 북한 측과 합의를 하고 나노스 주가를 움직인 거라고 법정 증언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셨는데 법정 증언을 모르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엄용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하세요.

○장경태 위원 하세요. 30초 남았어요.

○증인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북 N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제안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12월 초경에 방용철 부회장 중심으로 해서 단톡방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요 사람들,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안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첨삭하고 이런 내용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박 모라는 홍보 담당 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네이버 같은 데 나노스나 우리 계열사 보면 악의적인 댓글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 대응을 좀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N활성화라는 표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법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조작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그런 표현이라면 주가조작을 못 할 데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일련의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설명을 제가 아까 드렸었는데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저희가 7월 달에 2차 마닐라 대회를 하고 전문 영상 하는 분까지 가서 촬영을 해 가지고 아까 틀어 주신 그 자료를 만들면서 처음에 우리가 작성했던 나노스 IR 자료를 보완해서 그 뒤로, 김태균 그분이 전문적인 투자 유치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최종 컨트롤해 가지고 저희들 투자받고 이런 활동을 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제가 그 질문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단톡방에서……

○위원장 정청래 발언을 정리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예.

그 질문 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청래 마무리하세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 단톡방에서 대북사업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고 법정 증언에서 나노스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 북한과 합의했다는 것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증인 엄용수 아니, 위원님……

○장경태 위원 법정에서 나노스 주가조작 해 움직였고 북한 측과 합의했고 그 합의를 김성태 회장이 알고 PR하고 다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발언을 하는 걸 듣고 자른 다음에 마무리시켜 줘야지 그냥 정리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서영교 위원 유상범 위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유상범 위원 가만히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하는 중간에 잘랐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둘 다 가만히 계세요.

○서영교 위원 아까부터 자꾸 끼어들고 그래.

○유상범 위원 내가 뭘 끼어들어, 지금 발언 중에?

○증인 엄용수 아니, 저는……

○위원장 정청래 증인, 좌석으로 들어가세요.

끌나 가는 시점에 위원님들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질문은 아니고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조작은 김건희 여사처럼 직접 계좌를 이용해서 통정매매 하고 이런 것만 주가조작이 아니에요. 실제로 분식회계 해서 재무제표를 상당히 건전한 상태로 위조해서 발표하는 것도 주가를 위해서 한다면 사실상 광의의, 넓은 의미의 주가조작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다,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일종의 주가조작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얘기한 '500만 불이면 우리가 직접 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이치에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오늘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봉의해 가지고 그 탄핵 조사 성격의 청문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 검사에 대한 내용은 많이 언급이 안 나오고 있고요. 이화영 증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죄가 없다 또 이화영 증인이 처벌을 피해 보려고 이재명 대표가 관여돼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 대표 구속될까봐 걱정돼서 번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화영 증인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보겠습니다. 본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사유가 박 검사가 청사 민원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아무 곳에나 묻혔다입니다. 이것 회의장에서 입에 올리기도 민망합니다. 탄핵소추안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박 검사는 만취한 사실 자체가 없고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이 일관되게 박 검사의 무고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 엄중한 탄핵 절차에 이런 사유를 올린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할 일이 있으면 제가 찬성 표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이것 주장하신 분들 크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범죄 수사하는 공직자한테 이게 얼마나 큰 불명예고 모욕입니까?

탄핵 사유 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박상용 검사가 가로막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2022년 9월 28일 구속된 이후 한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변호사 접견 횟수를 보니까 대략 340회가 좀 넘는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일반 수감자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변호사 접견을 했는데 변호인 조력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또 다른 내용에 보면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방용철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약간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증인에게도 같은 범리를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3조에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타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직무를 유기했다 이런 주장은 저는 억지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님 깔끔한 마무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윤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오전에 제가 검찰의 회유·협박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김성태를 회유·협박해서 무너뜨리고, 김성태·방용철을 통해서 이화영 증인을 협박하거나 연어 파티를 하거나 이렇게 해 왔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여쭤보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송민경 검사가 있습니다. 부부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회유·협박 메커니즘 관련해서 송민경 검사와 박상용 검사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이화영** 송민경 검사가 더 직위가 높은 것 같아 보였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도는 박상용 검사보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주로 회유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송민경 검사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송민경 검사가 한강일 검사인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의 여러 별건 같은 것들도 수사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압박을 더 하고, 그래서 송민경 검사실에서 일종의 좀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죽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박상용 검사실에 갔다가 다시 송민경 검사실에 갔다가 이런 것들이……

○**이성윤 위원** 송민경 검사는 혼을 내고?

○**증인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는 별건을 수사하겠다고 겁을 주고?

○**증인 이화영** 그랬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박상용 검사는 달래는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까?

○**증인 이화영** 주로 그런 기조였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신명섭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을 많이 안 했는데, 저희가 6월 달에 기자회견을 한 적 있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 면담 직후부터 검찰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바뀐 진술을 보충할 수 있는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습니까?

○**증인 신명섭**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처음 이화영 부지사랑 면담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으니 바뀐 진술에 맞춰서 당신의 진술도 바뀌어야 될 것 같으니 가서 이화영을 한번 만나 봐라라는 말을 듣고 박상용 검사실로 가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한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바뀐 진술에 맞춰서 내 진술도 바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때 이화영 부지사 주변 인물인 신 국장님을 구속하고 또 회유·협박을 통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신명섭** 저와 관련된 거요, 아니면……

○**이성윤 위원** 검사가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둘을 만나게 했잖아요. 나중에는 검사도 증인께 어떤 요구를 했잖아요. 회유했잖아요. 그 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증인 신명섭** 회유한 내용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것에 따라 제가 진술을 바꾸면, 저한테도 압박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속해 있었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여기에 대한 수사를 줄이고 그다음에 보석 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석을 암시하는 식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란 취지로 말을 했지요?

○**증인 신명섭**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엄용수 증인 자리에 좀 와 주세요.

엄용수 증인, 필리핀에서 회의장에서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증인 엄용수** 예.

○**유상범 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성태 회장이 따로 리호남을 만나러 간다고 말을 했다, 그 자리는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리호남이라는 사람의 본명이 리호남이 아닌 것은 알지요?

○**증인 엄용수**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본명이 뭔지는 압니까?

○**증인 엄용수**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모르지요?

○**증인 엄용수** 예.

○**유상범 위원** 당연히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본명이 아니니 필리핀에 입국한 게 없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리호남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하나 더 추가로, 500만 불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추가로 300만 불을 낸 것 아시지요, 2019년 7월부터?

○**증인 엄용수** 그때는 몰랐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유상범 위원** 준비하고 돈을 마련한 내용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돈을 전달한 이런 부분에……

○**증인 엄용수** 그 뒤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한 3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유상범 위원** 230만 불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돈을 얼마를 마련했는지는 몰랐지만 돈을 마련한 것은 알고 있다?

○**증인 엄용수** 예, 그래서 저도 직접……

○**유상범 위원** 그러면 돈 줄 때 건너가서 전달했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11월, 12월 그때 말이지요?

○증인 엄용수 예.

○유상범 위원 그때 얼마 들고 나가셨어요?

○증인 엄용수 액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봉인을 해서 줬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영 증인, 묻겠습니다.

검찰에서의 자백이 허위 진술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검사의 회유 또 김성태의 협박 이것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본인의 진술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허위 진술이라고 다 주장을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 보이시지요?

○증인 이화영 잘 안 보입니다.

○유상범 위원 2023년 8월 8일 날이 ‘덕수에서 낸 판사 기피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이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니까 철회하겠다. 나는 해광이랑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한 날입니다.

○증인 이화영 8월 8일입니까?

○유상범 위원 예.

○증인 이화영 법정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 적 있지요?

그런데 그날 말이지요 법원에 ‘배우자 및 일부 인사들의 변호인 성토와 검찰과 관련된 언급은 오해에 기반한 잘못된 것이며 죄선을 다한 제 기존 변호사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는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적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필진술서 제출한 것 맞지요?

○증인 이화영 그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제가 썼다면 아마 박상용 검사의 강요가 커졌을 겁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증인 이화영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박상용 검사의 강요로 자필진술서 썼다는 거예요?

○증인 이화영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중의 하나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상용 검사하고 딜을 한 이후에 조금 애매모호한 편지를 외부에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굉장히 발끈하면서 다시 바로 저를 소환해 가지고 검찰청에 거의 2~3일 내내 불려 가 가지고 혼나면서 그것에 대해……

○유상범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으니까 됐고요.

중요한 건 말이지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화영 증인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 모습, 나중에 본인이 예상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이화영 증인의 이 희생이 그만한 보답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증인 이화영** 유 위원님 전제가 좀 잘못돼 있는데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유상범 위원** 예, 그렇게 주장해 오셨으니까 됐어요.

○**증인 이화영** 굉장히 아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집단들의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악랄한 정치 보복이지요.

.....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이화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쌍방울이 방북 협력사업을 빌미로 해서 나노스를 통한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한 1000 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이화영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사실 저는 김성태 씨가 해외 도피 중에 돌아올 때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전혀 몰랐었습니다. 본인도……

○**김승원 위원** 그러면 쌍방울이 예컨대 북한과 희토류 사업이라든가 자원 한 200조에 이르는 것……

○**증인 이화영** 전혀 몰랐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눈치를 전혀 못 챘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이화영**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전의 사건에서 2018년 4월에 나노스 주가가 대북 이슈로 고양됐고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알지를 못했던 사안이여 가지고요 저도 저희 변호사님들이 쌍방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얘기 할 때 굉장히 어리둥절했었지요. ‘무슨 얘기지? 그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승원 위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아마 2023년 1월경쯤 체포 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지검에서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증인 이화영**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고 있었고, 김성태 회장 변호인 측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더니 마치 태국에서 체포돼서 송환된 것으로 그리고 그 뒤에 점점 진술을, 원래 나노스 주가조작, 주가 부양을 마치 방북 대납으로 이렇게 진술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김성태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그다음에 아주 엄한 특경법 횡령·배임으로 처음에 기소됐다가 아까 판결문 봤듯이 일반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바뀌고 주가조작은 쪽 빠진 상태에서 판결문 선고되고, 왜 그런지는 혹시 들은 바가 있나요?

○**증인 이화영** 제가 김성태 씨한테 단독 면담을 할 때 김성태 씨가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은, 아까 우리 변호인님이 말씀하신 건데 2016년인가에 주가조작으로 구속되었을 때 어떻게 자기가 그 국면을 벗어났는지, 1년 만에 구속기간 만기로 나와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집행유예를 받고 또 어떻게 추징금도 한 푼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랑삼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지금부터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자기가 그때 빠져나오듯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한 별을 자기가 안 받아낼 테니까 내 말을 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마지막, 그러면 김성태 씨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검찰로부터 입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이화영 증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이화영**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성태가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깃했었던 것들도 사실인데 집요하게 검찰이 원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김성태 씨 체포 이후에, 김성태 씨가 체포될 당시에 제 조사가 이미 거의 끝났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 가지고 재판에 들어갔었을 때인데 갑자기 검찰에서 불러대기 시작을 하면서 아까 자료에서 봤듯이 수십 회, 100회에 가까운 검찰 소환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계속 얘기한 것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였고, 심지어 법원에서의 재판도 일반 방청객들의 평가가 ‘이것은 이화영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 재판이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쳐별하기 위해서 상당히 모든 역량이 경주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희생양이 돼 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까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지요. 또 그 고통 속에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도 많았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를 위해서 일했던 신명섭 국장 같은 경우는 구속까지 돼 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 게요 김성태나 방용철이나 안부수나 몇 월 며칠 일시, 장소가 특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11월에서 12월 사이, 그 두 달 사이 어느 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제가 제발 부탁했습니다, 날짜 일시 장소만 특정해라. 그러면 내 다이어리에 전부 일정이 있어 가지고 내가 다 반박을 해 줄 테니까 일시, 장소만 특정해라 했는데…… 그렇게 했던 하나의 사례가 있었던 게 김성태 씨가 리호남을 마카오에서 만나 가지고 자기가 돈을 줄 때 제가 동행해서 그 옆에 있었다고 최초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냥 영상녹화를 일부러 시켜 가지고…… 처음 대질이었습니다. 처음 김성태와 대질할 때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증인 이화영** 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김성태가 계속 ‘그날 같이 갔잖아요’ 이렇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 변호인님한테 ‘제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다음 답변할 때 검사가 ‘그때 첫 대질에서 김성태 씨는 나랑 같이 마카오

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좀 잘못 생각한 거지요?’ 이렇게 유도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아,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검사님. 이화영 씨는 그때 전화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서 진술을 자꾸 바꿔 주고 학습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마카오에 가서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리하시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질문 마쳤고 위원장도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59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22시00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이게 TV조선, 다른 데도 아니고 TV조선에서 2021년 보도한 내용입니다.

리호남은 사실 정보원으로, 첨보원으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반 대중에게도 영화로써도 널리 알려져 있고 이효리·조명애 휴대폰 광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필리핀에 상주하고 있을 텐데 필리핀에 입국하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몰랐다? 전혀 상상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리호남이 몰래 잠입해서 필리핀에 들어와서 쌍방울의 자금을 받아 갔다? 그것을 국정원이 몰랐다? 국정원장부터 다 옷 벗어야 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화영 1심 재판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없듯이 북한 사람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김성태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왜? 북한 공작원이, 북한 리호남이 어떤 것을 했는지, ‘아니다’라고 반박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그렇게 또 믿고 재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리호남의 부재를 검찰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재판부에서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저는 축구로 치면 대단한 오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광민 1심 재판부에서 리호남 부분이 핵심적인 이슈로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1심의 결과를 가지고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1심 판결에서 저희 사법부하고, 피고인이 재판부에서 상당히 위축받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심에서 들어왔던 변호인들이 압수수색 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그중에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사건 때문에, 변론했던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인들이 바뀌었고 뒤늦게 투입된 저희 김현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나 피고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계속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시간적 압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다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는 2심에서 1심 재판 결과는 반드시 뒤바뀌게 돼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을 다 마쳤고요.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추가질문 3분까지 해서 오늘 청문회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태 위원 3분만 주십시오. 한 번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쪽도 해야 돼요.

○박은정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손은 누가 드셨습니까? 잠깐 나오세요.

누구시지요? 증인 누구십니까?

○증인 김현철 저는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현철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김현철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 정청래 짧게 한 말씀하세요, 그러면.

○증인 김현철 이 자리는 검사 박상용의 탄핵심판을 위한 자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의 가장 중대한 사유는 증인 이화영을 압박해서 그리고 회유하여 허위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료에서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 이화영을 압박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였습니다. 증인 이화영은 범인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범인 카드를 받은 사람은 문 모 씨였고 당시 방용철은 범인카드 5장 모두를 문 모 씨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모든 관계자들이 범인카드를 이화영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인 이화영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받지도 않은 뇌물을 뒤집어쓰게 생겼구나’.

이화영에게 기소된 사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특가법 뇌물죄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카드를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와 증거인멸 교사죄가 사라집니다. 검사는 카드를 이화영이 안 받은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이화영이 제19회 조서까지 쓰고 나서 검사가 약속을 지킵니다.

7월 2일에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갑자기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헛갈린다고 말합니다. 절대 헛갈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헛갈린다고만 말하고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증인 이화영이 아직 19회 조서까지 증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 동의를 하면 검사의 마지막 약속, 즉 카드를 받은 사람이 이화영이 아니다라는 김성태의 진술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러면 뇌물죄와 증거인멸 교사죄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증인 이화영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증인 이화영은 이 자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면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증인 이화영은 두 가지의 함정을 파 놨습니다.

첫 번째는 19회 조서 제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에 대

해서 ‘2019년 7월 29일 10시 경기도청에서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작에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방북 비용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19회 조서 5페이지에 보면 ‘북한이 의전 비용으로서 방북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인 이화영이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전 비용은 따로 처리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전 비용은 대통령인 경우에 회담 주최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신의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후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의전 비용, 방북 비용은 은밀한 비용이 아니라 공식 비용이다. 둘째, 의전 비용은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다. 대부분 관계를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전 비용으로서 방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조서에 남기게 요구했고 증인 이화영은 이것이 틀린 문장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다음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태가 법정에 나서서 카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린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건이고 이러한 사실이 1심 법정에서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이 모든 문제를 판단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셔서 탄핵 절차에서 반드시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간사님들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마무리하는데 만에 하나 또 질문할 위원이 계시면 그건 또 동등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 한 분 하시고 국민의힘에서 한 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시고, 3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박상용 검사의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물을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화영 증인, 대답해 주세요.

○증인 이화영 예.

○이건태 위원 본인의 진술서에 ‘검찰 고위직 출신 A 변호사는 과거에 알던 변호사.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접견 요청하여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함. 선임을 거부하여 만나지 못함.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심해진 2023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검찰 측의 주선으로 수원지검 1313호실 검사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4~5차례 면담함. 검찰 최고위층의 약속이라며 검찰 측의 회유 내용을 확인해 줌’,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를 검찰이 직접 소개하여 수원지검 1313

호실에서 2~3차례 면담함. 검찰과 김성태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회유와 압박을 함’,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 이외에 김성태의 변호인으로 생각되는 변호사 2인 정도를 한 차례씩 검찰의 주선으로 만남’,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피의자 이화영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배석이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지자 회유를 위한 조서에 변호인 배석이 안 되면 모양이 좋지 않다면서 김성태의 주선으로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 배석함’, 맞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봉지욱 기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2019년 4월 초에 지급했다는 300만 불입니다.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검찰은 2월 15일 19억, 4월 8일 25억을 출처라고 하는데 3월 말에서 4월 초에 환치기 방법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15일 날 출금했으면 이것 너무 시간적 거리가 있고, 4월 8일 날 출금한 것은 이미 환치기가 일어난 이후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정말 이상하다, 이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환치기가 일어났으면 그 돈이 환치기업자 누구한테 지급됐는지, 수표 추적이 됐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기록을 보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봉지욱 일단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기록에는 예를 들면 삼성동의 세븐럭카지노라고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수사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기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회장이 수표를 환전하거나 명동 환전상을 통했을 때 검찰이 전부 다 압수 수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자금의 출처 정도를 김태현이란 재무이사 정도 한테만 확인을 하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계좌까지 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증거 기록 없습니다.

○이건태 위원 300만 불 이게 조작이라면 결국 앞의 200만 불과 뒤의 200만 불이 실재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재명의 방북이 설명이 안 되니까 300만 불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려서 조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신가요?

○참고인 봉지욱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최근에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특수부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지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제 사건 기록도 한 5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제가 이 3개의 수사기록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저분합니다. 기록이 지저분해요.

왜 그러냐면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결론을 내려 놓고 그 결론에 맞춰 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집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보석 석방이 되고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수사기록이 굉장히 지저분해졌고, 이 사건 또한 앞에서 말했던 수원지검이나 이런 진술세미나를 통해서 김성태 체포 전후로 진술 기록이 지저분해집니다. 심지어는, 아까 리호남 70만 불 계속 나오는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 70만 불도 아니었어요. 리호남한테 준 것은 삼사십만 불이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금액이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김성태가 작년 7월 11일에 법정에서 증언한 그 하나의 증인신문만 가지고 판결을 했더라고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 뉴스타파에 대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폐간해야 한다’, 김기현 당대표가 ‘1급 살인죄다. 국기문란죄, 중대범죄자’,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셨었지요. 그런데 십여 명의 검사,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특별수사팀이 지난 11개월간 밝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사건 기록을 봤더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재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에 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위원장 정청래 마무리해 주시지요.

○참고인 봉지욱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는 데 이 사건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제가 보도한 모든 것은 검찰 수사기록, 자기들이 수사한 것, 저는 그것을 가지고 검증해서 보도한 것이지, 본인들의 수사기록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승자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사건은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과거에 봤었어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모두 수용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화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한명숙 전 의원 사건 증언 연습 보도가 있었지요. 이 사건으로 대북송금 사건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엄희준 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연루된 한명숙 전 의원 사건 증언 연습 보도입니다.

이화영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갑자기 김성태 입국 후에, 이화영 증인은 전부 다 조사 받고 기소돼 재판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갑자기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말해라, 그것만 말해 주면 뭐도 빼 주고 뭐도 해 주겠다 압박도 하고 희유도 하고 그랬다는 거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2명 그다음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다음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제가 왜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검찰 출신 변호사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조재연 변호사, 수원지검장 출신입니다. 지금 이화영 증인이 내신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 고위층에 다 얘기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검찰 고위층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변호사 혼자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검찰 고위층하고 약속을 해서 진술 회유·압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에게 이재명에 대해서 말하라고 할 때 물적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전혀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은 그냥 이화영의 진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화영 증인의 진술 그것에만 전방위적으로 매달렸던 겁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사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사냥입니다.

그것은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하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수사가 아닙니다. 범죄사실도, 일시·장소도 제대로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기소해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 회유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화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 달라고 경찰에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통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사 요청한 지가 한 6개월은 된 것 같은데 경찰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심정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마지막으로 주진우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아까 확인 못 했던 것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화영 증인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됐다라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허위 자백한 이유가 검사와 김성태 회장이 압박하고 회유했기 때문

에 그렇게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 이런 게 주장의 요지이지요?

○증인 이화영 허위 자백? 자백은 아닌 것 같고요.

○주진우 위원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

○증인 이화영 그냥 정황을 알게 됐다, 그런 정황. 처음에……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아까도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본인이 진실과 다르게 조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지요.

○주진우 위원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승인도 했다라는 진술이 써 있긴 하지만 그게 회유, 협박받았다는 게 증인의 주장 아니에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진우 위원 아니, 말 돌릴 것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았을 때 제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장치로 마련했지요. 그러니까 보고 일시와……

○주진우 위원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조서에? 그러니까 그게 허위라고 치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보고받았다라고 그 당시에는 조서에다가 서명날인을 본인이 했잖아요. 그게 회유·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대로 조서를 다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이 청문회를 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화영 무슨 취지인지 질문을 잘 못 이해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회유, 압박을 통해서 검사로부터 조서를 한번 작성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증인 이화영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회유·압박된 그 조서의 내용에 보면 당연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허위 증언,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당시 이재명 지사께서 아예 부재한 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조서에 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진우 위원 부재한 날이든 어쨌든 간에 본인이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증인 이화영 그렇게 진술을 했지요.

○주진우 위원 왜 말을 돌리세요?

그리고 허위 자백하는 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나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변호사들한테 ‘내가 허위 자백한다. 이게 회유, 압박에 따라서 허위로 자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공유하셨습니까? 상의하셨나요?

○증인 이화영 설주완 변호사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변호사 사임하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다음 변호사는요? 당시 조서에 서명 날인한 변호사가 있잖아요.

○**증인 이화영** 이한이 변호사신데 이한이 변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박상용 검사의……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호사한테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이화영** 박상용 검사의 주선으로 인해서 오신 검사였지요.

○**주진우 위원**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이화영** 제가 뭐…… 상의? 어떤 상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변호사한테, 허위 자백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랑 상의하고 허위 자백을 한 거예요?

○**증인 이화영** 그러니까 저는 이한이 변호사한테 ‘이것 허위 자백인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한이 변호사께서 휴대전화기로 날짜를 검색해 갖고 이날…… 그러니까 저희가 필리핀 대회가 토요일 날 끝나서 토요일 날 귀국을 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다그치기를 ‘이것 중요한 사안이니까 월요일 날 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기에 제가 월요일 날 그러면 이재명 지사 스케줄이 뭐가 있는지, 행사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봐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한이 변호사가 했더니 그날 마침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사진과 기사가 있기에 ‘내가 그날 아침 9시 반, 10시 사이에 도지사실에 가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잘 됐다’ 그리고 그냥 검증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제가 명백한 허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됐다고 막 좋아 가지고 파티 해야겠다 이런 분위기였지요.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검색을 이한이 변호사가 해 준 거네요?

○**증인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날짜를 이한이 변호사가 정해 줬네요.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증인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신문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증인·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분들은 국회 입장에서는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진실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배숙 위원** 엄용수 증인이 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청래** 엄용수 증인 손 들었습니까?

○**증인 엄용수** 예.

○**위원장 정청래** 제발 잠자코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소란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을 든 분들에 한해서는 1분간 오늘 마무리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마무리발언 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엄용수 증인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1분간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있는 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지 않은 것들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듣고 겪은 것만 말씀드렸고, 다만 이 와중에서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화영 부지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사업들이고 그리고 시작됐고 그런 와중에서도 2019년도 5월 달에 전형수 비서실장님의 상갓집에 직접 오셨었고 그리고 그해에 김용이라는 분이 우리 회장님하고 직접 자리를 했고 그다음에 법률단장으로 계시는 이태형 변호사님하고 직접 저희들이 같이, 회장님하고 친분을 같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들이 후원금도 많이 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 악마화를 하고 저희가 너무 잘못했다 이런 점보다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직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누가 하신다고 그랬지요?

김광민 증인 발언해 주시지요.

○증인 김광민 이 사건 관련해서 말을 가장 많이 바꾼 사람은 검찰입니다. 최초에 진술 세미나 의혹이 나왔을 때 검찰은 절대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본인들이 변명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자료 중에 몇몇 흔적이 나오자 그 3일만 진술세미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출정기록을 마지못해 항소심에서 공개하고 나서는 대질신문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대질신문조서도 면담조서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항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장 많이 말을 바꿨고요.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쌍방울 직원들의 출입기록하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공개하면 이렇게 청문회 해서 여러 위원님들 힘들 필요도 없이 모든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말을 계속 바꾸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소추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피소추자 박상용 검사의 여섯 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화영 증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오늘 진실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 리호남은 필리핀에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웠다라는 하동혁 증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이화영 증인은 이재명 방탄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반대되는 주장도 오늘 많이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엄용수 증인의 반대되는 증언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여 중언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안양교도소 김재용

### ○출석 증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권기현(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명섭(전 경기도 평화국장)  
엄용수(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김광민(변호사)  
김현철(변호사)  
하동혁(통일운동가)  
김형기(나노스 이사, 전 통일부차관)

### ○출석 참고인

봉지욱(뉴스타파 기자)